

2017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결산분석시리즈 II

# 2017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 국회운영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2018. 8.

---

이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에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의 심의 (2018. 8. 8.)를 거쳐 발간되었습니다.

---

# 발 간 사

정부가 제출한 2017회계연도 결산에 따르면, 총수입 430.6조원, 총지출 406.6조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24.0조원 흑자, 관리재정수지는 18.5조원 적자를 기록하여 2017년 추정 전망보다 각각 11.0조원, 10.4조원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의무지출 확대에 따른 재정 경직성이 심화되고 당면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의 결산 심사 과정을 지원하고자 「2017회계연도 결산 분석」 시리즈를 발간하였습니다. 이번 시리즈는 「총괄 분석」, 「위원회별 분석」, 「공공기관 결산 분석」, 「2016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 「성인지 결산서 분석」, 「결산 분석 종합」 등 총 22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괄 분석」에서는 12대 분야, 재정건전성 등 14건의 재정 전반에 걸친 주제에 대해 거시적인 분석을 하는 한편, 일자리정책, 미래성장동력 확충 등 47건의 주요 재정 정책 사업을 선별하여 심층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위원회별 분석」에서는 부처 소관 개별 사업별로 집행 상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루었고, 「공공기관 결산 분석」에서는 공공기관의 집행결과를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국회 결산 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2016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을 수록하였으며, 「성인지 결산서 분석」을 통해 성인지 결산서를 양성평등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분석함으로써 양성평등 제고효과를 점검하였습니다.

이번 결산 분석 보고서가 국회의 결산 심사 과정에서 유익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하며, 국회예산정책처는 앞으로도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으로 국회의 예·결산 심사에 도움이 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8년 8월

국회예산정책처장 김 춘 순



# 차 례

# CONTENTS

## 국회운영위원회

###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 I. 결산 개요 / 3

- 1. 현 황 ..... 3
- 2. 2017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 8
- 3. 2017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 9

#### II. 개별 사업 분석 / 10

- 1. 국정평가관리 사업 연례적 집행 부진 개선 필요 ..... 10

### [ 대통령경호처 ]

#### I. 결산 개요 / 15

- 1. 현 황 ..... 15
- 2. 2017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 20
- 3. 2017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 21

#### II. 개별 사업 분석 / 22

- 1. 올림픽경호 사업 집행 부진 및 이월 과다 ..... 22
- 2. 경호안전교육원 운영 사업의 과다한 불용 개선 필요 ..... 25



## **[ 국회 ]**

### **I. 결산 개요 / 31**

- 1. 현 황 ..... 31
- 2. 2017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 36
- 3. 2017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 37

### **II. 개별 사업 분석 / 38**

- 1. 고성연수원 자체교육 활성화 필요 ..... 38

## **[ 국가인권위원회 ]**

### **I. 결산 개요 / 43**

- 1. 현 황 ..... 43
- 2. 2017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 48
- 3. 2017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 49

### **II. 개별 사업 분석 / 50**

- 1. 인권영화 제작·보급의 내실화 필요 ..... 50
- 2. 당초 계획에 부합하지 않은 북한인권 개선 사업 추진 부적절 ..... 52





## 법제사법위원회

### [ 법무부 ]

#### I. 결산 개요 / 59

- 1. 현 황 ..... 59
- 2.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 66
- 3. 2017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 68

#### II. 주요 현안 분석 / 69

- 1. 부적절한 예비비 편성 및 적정 예산 편성 필요 ..... 69
  - 1-1. 국가배상금의 적정 예산 편성 및 미지급금 최소화 노력 필요 ..... 69
  - 1-2. 형사보상금의 적정 예산 편성 필요 ..... 73
  - 1-3. 교정기관 공공요금 및 구료비의 연례적 부족 ..... 75
- 2. 보상금 및 포상금의 법적근거 마련 필요 등 ..... 79
  - 2-1. 범죄신고자 보상금의 명확한 법적근거 마련 및 집행실적 제고 필요 ..... 79
  - 2-2. 형집행 우수기관·유공자 표창 포상금의 법적근거 마련 및 적정 예산 편성 필요 ... 81
  - 2-3. 교정본부 각종 포상금의 명확한 법적근거 마련 필요 ..... 84

#### III. 개별 사업 분석 / 86

- 1. 토지대여료 수납률 제고 노력 필요 ..... 86
- 2. 징계부과금 수납률 제고 대책 마련 필요 ..... 90
- 3. 외부 회의장 임차료 절감 필요 ..... 94



# CONTENTS

|                                            |     |
|--------------------------------------------|-----|
| 4. 민·상사 법률연구 지원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 필요 .....      | 97  |
| 5. 취약계층 법률서비스 지원체계 정비 필요 .....             | 103 |
| 6. 범죄피해자 치료비 등 직접지원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 필요 등 ..... | 111 |
| 7. 청사관리용역 근로자 노임단가 적정 편성 필요 .....          | 115 |
| 8. 검사실 사무보조원 예산의 단일 사업 통합 편성 필요 .....      | 118 |
| 9. 서울동부구치소 시설장비유지비 집행 시 법령 준수 필요 .....     | 120 |
| 10.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활동 사업 예산 부적정 집행 .....   | 124 |
| 10-1. 급여성 갱생보호수당 경상비 내 집행 .....            | 124 |
| 10-2. 경북기술교육원 건립비 부적정 집행 .....             | 126 |

## [ 법제처 ]

### I. 결산 개요 / 131

|                                |     |
|--------------------------------|-----|
| 1. 현 황 .....                   | 131 |
| 2. 2017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 | 135 |
| 3. 2017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     | 136 |

### II. 개별 사업 분석 / 137

|                                           |     |
|-------------------------------------------|-----|
| 1. 인건비(총액인건비 대상) 사업의 집행 및 운영상 문제점 .....   | 137 |
| 2. 세계법제정보센터 위탁사업의 성과평가 기준 적정성 검토 필요 ..... | 143 |
| 3. 사이버 법제교육의 실적 제고 필요 .....               | 147 |



## **[ 감사원 ]**

### **I. 결산 개요 / 153**

- 1. 현 황 ..... 153
- 2. 2017년도 예산 관련 국회 논의사항 ..... 157
- 3. 2017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 158

### **II. 개별 사업 분석 / 159**

- 1. 국가재무제표 결산검사 강화 필요 ..... 159
- 2. 정보화사업 통합발주 지양 필요 ..... 162

## **[ 대법원 ]**

### **I. 결산 개요 / 167**

- 1. 현 황 ..... 167
- 2.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 174
- 3. 2017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 175

### **II. 주요 현안 분석 / 176**

- 1. 일반회계 적정 세입예산 편성 필요 ..... 176

### **III. 개별 사업 분석 / 180**

- 1. 온라인 출생신고 제도 활성화 노력 필요 ..... 180
- 2. 법원도서관 이전 사업 과다이월 ..... 183



|                                     |     |
|-------------------------------------|-----|
| 3. 소송구조 지원대상 기준 마련 및 예산 확대 필요 ..... | 185 |
| 4. 등기소 신증축 사업 사업관리 강화 필요 .....      | 188 |

## **[ 헌법재판소 ]**

### **I. 결산 개요 / 193**

|                                |     |
|--------------------------------|-----|
| 1. 현 황 .....                   | 193 |
| 2. 2017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 | 197 |
| 3. 2017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     | 198 |

### **II. 개별 사업 분석 / 199**

|                                |     |
|--------------------------------|-----|
| 1. 헌법재판연구원 운영지원 사업 개선 필요 ..... | 199 |
|--------------------------------|-----|

# 국회운영위원회







##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 1 현 황

## 가. 총수입·총지출 결산

2017회계연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결산은 일반회계만으로 구성된다. 2017회계연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총 수입액은 예산 대비 4,427만원(58.3%)이 증가한 1억 2,027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4,944만원(69.8%)이 증가하였다.

[2017회계연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 2016<br>결산(A) | 2017 |       |           |                | 전년 대비<br>(C-A) |
|-----|---------------|------|-------|-----------|----------------|----------------|
|     |               | 예산   |       | 결산<br>(C) | 예산 대비<br>(C-B) |                |
|     |               | 본예산  | 추경(B) |           |                |                |
| 총수입 | 71            | 76   | 76    | 120       | 44             | 49             |

자료: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2017회계연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총지출은 예산 대비 129억 3,722만원(14.7%)이 감소한 751억 2,608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92억 4,082만원(11.0%)이 감소하였다.

[2017회계연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 2016<br>결산(A) | 2017   |        |           |                | 전년 대비<br>(C-A) |
|-----|---------------|--------|--------|-----------|----------------|----------------|
|     |               | 예산     |        | 결산<br>(C) | 예산 대비<br>(C-B) |                |
|     |               | 본예산    | 추경(B)  |           |                |                |
| 총지출 | 84,367        | 88,063 | 88,063 | 75,126    | △12,937        | △9,240         |

자료: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 나. 세입·세출 결산

2017회계연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7,600만원이며, 4억 5,54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26.4%인 1억 2,027만원을 수납하고 3억 3,513만원을 미수납하였다.

[2017회계연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 구분   | 예산  |    | 예산현액 | 징수<br>결정액(A) | 수납액<br>(B) | 미수납액 | 불납<br>결손액 | 수납률<br>(B/A) |
|------|-----|----|------|--------------|------------|------|-----------|--------------|
|      | 본예산 | 추경 |      |              |            |      |           |              |
| 일반회계 | 76  | 76 | 76   | 455          | 120        | 335  | 0         | 26.4         |

자료: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2017회계연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880억 6,330만원이며, 이 중 85.3%인 751억 2,608만원을 지출하고 129억 3,722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2017회계연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 구분   | 예산     |        | 예산<br>현액(A) | 지출액<br>(B) | 다음연도<br>이월액 | 불용액    | 집행률<br>(B/A) |
|------|--------|--------|-------------|------------|-------------|--------|--------------|
|      | 본예산    | 추경     |             |            |             |        |              |
| 일반회계 | 88,063 | 88,063 | 88,063      | 75,126     | 0           | 12,937 | 85.3         |

자료: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 다. 재무 결산

2017회계연도 말 현재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자산은 4,109억 4,307만원, 부채는 8억 1,114만원으로 순자산은 4,101억 3,193만원이다.

자산은 전기 대비 25억 8,994만원(0.6%) 감소한 것으로 국가배상액 구상권 청구 관련 미수채권 발생 등으로 유동자산 3억 439만원 증가, 감가상각 등으로 일반유형자산 23억 9,575만원 감소, 감가상각 등으로 무형자산 5억 5,859만원 감소, 장기임차보증금 등 기타비유동자산 6,000만원 증가 등에 기인한다.

부채는 전기 대비 9,666만원(13.6%) 증가한 것으로 일용직 등에 대한 퇴직급여충당부채 등 장기충당부채 9,666만원 증가에 기인한다.

[2017회계연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17<br>회계연도 | 2016<br>회계연도 | 전년도 대비 증감 |       |
|--------------|--------------|--------------|-----------|-------|
|              |              |              | 금 액       | 비 율   |
| 자 산          | 410,943      | 413,533      | △2,590    | △0.6  |
| Ⅰ. 유동자산      | 600          | 295          | 305       | 103.4 |
| Ⅱ. 일반유형자산    | 408,852      | 411,247      | △2,395    | △0.6  |
| Ⅲ. 무형자산      | 806          | 1,364        | △558      | △40.9 |
| Ⅳ. 기타비유동자산   | 686          | 626          | 60        | 9.6   |
| 부 채          | 811          | 714          | 97        | 13.6  |
| Ⅰ. 유동부채      | 8            | 8            | 0         | 0     |
| Ⅱ. 장기충당부채    | 803          | 707          | 96        | 13.6  |
| 순 자 산        | 410,132      | 412,819      | △2,687    | △0.7  |
| Ⅰ. 기본순자산     | 323,523      | 323,523      | 0         | 0     |
| Ⅱ. 적립금 및 양여금 | △37,186      | △34,510      | △2,676    | △7.8  |
| Ⅲ. 순자산 조정    | 123,794      | 123,805      | △11       | △0.01 |

자료: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2017회계연도 재정운영결과 재정지출(비용)이 재정수입(수익)을 초과하여 순비용이 828억 3,177만원 발생하였다. 비용은 프로그램 총원가 832억 7,721만원, 비배분비용 966만원으로 구성되며, 수익은 비배분수익 4억 5,510만원으로 구성된다.

재정운영순원가(프로그램순원가 + 관리운영비 + 비배분비용 - 비배분수익)는 전기 대비 78억 7,047만원(8.7%) 감소한 828억 3,177만원이며, 이는 프로그램순원가 74억 3,491만원 증가, 비배분비용 5,058만원 감소, 비배분수익 3억 8,498만원 증가 등에 기인한다.

프로그램은 기관운영프로그램과 국정지원프로그램 2개로 구성되는데, 기관운영 프로그램의 순원가(549억 194만원)는 전기 대비 3억 101만원이 감소하였고, 국정지원 프로그램의 순원가(283억 7,527만원)는 전기 대비 71억 3,390만원이 감소하였다.

비배분비용(966만원)은 자산재평가손실 등 전기에 발생했던 비용이 당기에는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전기 대비 5,058만원 감소하였고, 비배분수익(4억 5,510만원)은 구상권 청구 관련 미수채권 등 당기에 발생한 잡이익 등으로 전기 대비 3억 8,498만원 증가하였다.

[2017회계연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17<br>회계연도 | 2016<br>회계연도 | 전년도 대비 증감 |       |
|--------------------------------|--------------|--------------|-----------|-------|
|                                |              |              | 금액        | 비율    |
| I. 프로그램순원가                     | 83,277       | 90,712       | △7,435    | △8.2  |
| II. 관리운영비                      | 0            | 0            | 0         | 0     |
| III. 비배분비용                     | 10           | 60           | △50       | △83.3 |
| IV. 비배분수익                      | 455          | 70           | 385       | 550.0 |
| V. 재정운영순원가( I + II + III - IV) | 82,832       | 90,702       | △7,870    | △8.7  |
| VI. 비교환수익 등                    | 0            | 0            | 0         | 0     |
| VII. 재정운영결과(V - VI)            | 82,832       | 82,832       | △7,870    | △8.7  |

자료: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2017년도 기초순자산은 4,128억 1,853만원이고 기말순자산은 4,101억 3,193만원으로 기초 대비 26억 8,660만원(0.7%) 감소하였는데, 재정운영결과로 인해 828억 3,177만원이 감소하고, 재원의 조달 및 이전으로 인해 801억 5,58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조정항목에서 1,063만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2017회계연도 재원의 조달 및 이전(801억 5,580만원) 중 재원의 조달(802억 7,607만원)은 국고수입(세출 결산액) 751억 2,608만원과 기타재원조달액(공무원 연금 및 건강보험부담금) 51억 4,999만원으로 구성되고, 재원의 이전(1억 2,027만원)은 국고이전지출(세입 결산액)로 구성된다.

[2017회계연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순자산변동표 요약]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17<br>회계연도 | 2016<br>회계연도 | 전년도 대비 증감 |        |
|------------------------------|--------------|--------------|-----------|--------|
|                              |              |              | 금액        | 비율     |
| I. 기초순자산                     | 412,819      | 349,685      | 63,134    | 18.1   |
| II. 재정부운영결과                  | 82,832       | 90,702       | △7,870    | △8.7   |
| III. 재원의 조달 및 이전             | 80,156       | 89,122       | △8,966    | △10.1  |
| IV. 조정항목                     | △ 11         | 64,714       | △64,725   | △100.0 |
| V. 기말순자산( I - II + III + IV) | 410,132      | 412,819      | △2,687    | △0.7   |

자료: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된 사업으로 ① 인건비, ② 기본경비, ③ 업무지원비, ④ 국정평가관리, ⑤ 시설관리 및 개선 등이 있다.<sup>1)</sup>

인건비는 전 부처 공통 처우개선율(3.5%)을 적용하여 11억 1,000만원이 감액(358억 100만원→346억 9,100만원)되었고, 기본경비는 무기계약직 등 상용직 인원 감축(6명→3명)으로 인한 상용임금 1억원 감액, 도서구입비 1,000만원 감액 등 총 1억 1,000만원이 감액(196억 4,200만원→195억 3,200만원)되었다.

업무지원비는 특수활동비 7억 3,500만원 감액, 업무추진비 4억 6,000만원 감액 등 총 11억 9,500만원이 감액(210억 5,100만원→198억 5,600만원)되었고, 국정평가관리 사업은 대통령 친서발송 1,000만원 감액, 정책연구용역 3,000만원 감액 등 계 4,000만원이 감액(39억 800만원→38억 6,800만원)되었으며, 시설관리 및 개선 사업은 실시설계비 등 총 3,600만원이 감액(48억 1,800만원→47억 8,200만원)되었다.

1) 국회운영위원회, 「2017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16. 11.  
국회,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16. 12.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대통령의 원활한 국정운영 보좌 업무 수행을 목표로 5대 국정목표 달성을 위한 분야별 국정과제가 원활하게 추진되고 그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효율적으로 보좌하는 한편, 국가안보에 관한 대통령 보좌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것을 2017년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예산을 집행하였다.

그러나 2017회계연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결산에 대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세부사업은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업무 중단으로 대부분 집행률이 높지 않았으며, 그 중에서도 국정평가관리 사업의 집행률이 60.7%로 가장 낮았다.

## II

## 개별 사업 분석

### 1

### 국정평가관리 사업 연례적 집행 부진 개선 필요

#### 가. 현 황

국정평가관리 사업<sup>1)</sup>은 올바른 정책방향을 정립하기 위하여 국민과의 소통, 여론조사, 정책연구용역 등을 수행하는 사업이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국정평가관리 사업의 2017년도 예산액 38억 6,800만원 중 60.7%에 해당하는 23억 4,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5억 2,200만원을 불용하였다. 특히 연구용역비 불용액이 10억 3,6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2017회계 연도 국정평가관리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예산액   |       | 전년도<br>이월액 | 이·전용<br>등 | 예산현액  | 집행액   | 다음연도<br>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    |            |           |       |       |             |       |
| 국정평가관리             | 3,868 | 3,868 | 0          | 0         | 3,868 | 2,346 | 0           | 1,522 |
| 인건비                | 104   | 104   | 0          | 0         | 104   | 78    | 0           | 26    |
| 운영비                | 934   | 934   | 0          | 0         | 934   | 605   | 0           | 329   |
| 업무추진비              | 502   | 502   | 0          | 0         | 502   | 376   | 0           | 126   |
| 연구용역비              | 2,317 | 2,317 | 0          | 0         | 2,317 | 1,281 | 0           | 1,036 |
| 민간이전 <sup>1)</sup> | 10    | 10    | 0          | 0         | 10    | 7     | 0           | 3     |

주: 1) 고용부담금

자료: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정주완 예산분석관(jjw1026@assembly.go.kr, 788-4644)

1) 코드명: 일반회계 1131-301



## 나. 분석의견

대통령 비서실은 국정평가관리 사업의 연례적 집행부진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2017년 동 사업의 집행률은 60.7%로 저조하였으며, 특히 동 사업의 연구용역비는 예산액 23억 1,700만원 중 12억 8,1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이 55.2%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대통령비서실은 탄핵으로 인하여 5월까지의 예산집행이 곤란하였고, 새정부가 인수위 없이 출범하면서 비서실 조직·인력 등 동 사업의 추진체계가 정비된 7월 이후가 되어서야 동 사업의 정상 추진이 가능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2017년도의 경우 탄핵 등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 발생하였다고는 하나 최근 4년간 동 사업의 평균 집행률은 75.4%에 불과하며, 평균 불용액은 약 10억원 규모에 달하고 있다.

[최근 4년간 국정평가관리 사업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 연도   | 예산액              | 집행액              | 집행률            | 불용액              |
|------|------------------|------------------|----------------|------------------|
| 2014 | 4,089<br>(2,140) | 3,134<br>(1,718) | 76.6<br>(80.3) | 955<br>(422)     |
| 2015 | 4,013<br>(2,084) | 3,234<br>(1,899) | 80.6<br>(91.1) | 779<br>(185)     |
| 2016 | 3,935<br>(2,447) | 3,273<br>(2,121) | 83.2<br>(86.6) | 662<br>(326)     |
| 2017 | 3,868<br>(2,317) | 2,346<br>(1,281) | 60.7<br>(55.3) | 1,522<br>(1,036) |
| 평균   | 3,976<br>(2,247) | 2,997<br>(1,755) | 75.4<br>(78.1) | 979<br>(492)     |

주: ( )안은 연구용역비

자료: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대통령비서실은 동 사업의 집행 부진이 반복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향후 동 사업 예산 편성 시 과거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적정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경호처



## 1

## 현 황

## 가. 총수입·총지출 결산

2017회계연도 대통령경호처 소관 결산은 일반회계만으로 구성된다.

2017회계연도 대통령경호처 소관 총수입은 예산액 대비 1억 9,700만원(359.2%) 이 증가한 2억 7,3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12억 2,700만원(81.8%)이 감소하였다.

[2017회계연도 대통령경호처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     | 2016<br>결산액(A) | 2017 |       |            |                | 전년 대비<br>(C-A) |
|-----|----------------|------|-------|------------|----------------|----------------|
|     |                | 예산액  |       | 결산액<br>(C) | 추경 대비<br>(C-B) |                |
|     |                | 본예산  | 추경(B) |            |                |                |
| 예 산 | 1,500          | 76   | 76    | 273        | 197            | △1,227         |

자료: 대통령경호처

2017회계연도 대통령경호처 소관 총지출은 예산 대비 106억 2,900만원(7.0%) 이 감소한 807억 4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21억 4,800만원(2.7%)이 증가하였다.

[2017회계연도 대통령경호처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     | 2016<br>결산(A) | 2017   |        |            |                | 전년 대비<br>(C-A) |
|-----|---------------|--------|--------|------------|----------------|----------------|
|     |               | 예산액    |        | 결산액<br>(C) | 추경 대비<br>(C-B) |                |
|     |               | 본예산    | 추경(B)  |            |                |                |
| 예 산 | 78,556        | 91,333 | 91,333 | 80,704     | △10,629        | 2,148          |

자료: 대통령경호처

## 나. 세입·세출 결산

2017회계연도 대통령경호처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7,600만원이며, 2억 7,3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다.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증가한 사유는 기타경상이전수입 발생으로 신규채용된 직원의 명예전역수당 1억 5,915만원을 수납하였기 때문이다.

[2017회계연도 대통령경호처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      | 예산액 |    | 세입<br>예산현액<br>(A) | 징수<br>결정액 | 수납액<br>(B) | 미수납액 | 불납<br>결손액 | 수납률<br>(B/A) |
|------|-----|----|-------------------|-----------|------------|------|-----------|--------------|
|      | 본예산 | 추경 |                   |           |            |      |           |              |
| 일반회계 | 76  | 76 | 76                | 273       | 273        | 0    | 0         | 359.2        |

자료: 대통령경호처

2017회계연도 대통령경호실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913억 3,300만원이며, 이 중 88.4%인 807억 400만원을 지출하고 14억 4,1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91억 8,8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2017회계연도 대통령경호실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      | 예산액    |        | 예산현액<br>(A) | 지출액<br>(B) | 다음연도<br>이월액 | 불용액   | 집행률<br>(B/A) |
|------|--------|--------|-------------|------------|-------------|-------|--------------|
|      | 본예산    | 추경     |             |            |             |       |              |
| 일반회계 | 91,333 | 91,333 | 91,333      | 80,704     | 1,441       | 9,188 | 88.4         |

자료: 대통령경호처

## 라. 재무 결산

2017회계연도 말 현재 대통령경호처의 자산은 4,802억 4,100만원, 부채는 1,300만원으로 순자산은 4,802억 2,800만원이다.

자산은 전기 대비 75억 2,600원(1.59%) 증가한 것으로 유동자산 1억 6,800만원, 투자자산 4억 3,300만원, 일반유형자산 4,768억 3,300만원, 무형자산 27억 6,400만원, 기타비유동자산 4,300만원으로 구성된다. 이는 선급비용 발생으로 인하여 유동자산 1억 4,300만원 증가, 건설중인일반유형자산 취득에 따른 일반유형자산 62억 4,900만원 증가, 소프트웨어 취득에 따른 무형자산 11억 3,400만원 증가에 기인한다.

부채는 전기 대비 300만원(18.75%) 감소한 것으로 유동부채 1,3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선수수익 발생으로 인하여 유동부채 300만원 감소에 기인한다.

[2017회계연도 대통령경호처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17<br>회계연도 | 2016<br>회계연도 | 전년도 대비 증감 |        |
|--------------|--------------|--------------|-----------|--------|
|              |              |              | 금 액       | 비 율    |
| 자 산          | 480,241      | 472,715      | 7,526     | 1.59   |
| Ⅰ. 유동자산      | 168          | 25           | 143       | 572.00 |
| Ⅱ. 투자자산      | 433          | 433          | 0         | 0      |
| Ⅲ. 일반유형자산    | 476,833      | 470,584      | 6,249     | 1.33   |
| Ⅳ. 사회기반시설    | 0            | 0            | 0         | 0      |
| Ⅴ. 무형자산      | 2,764        | 1,630        | 1,134     | 69.57  |
| Ⅵ. 기타비유동자산   | 43           | 43           | 0         | 0      |
| 부 채          | 13           | 16           | △3        | △18.75 |
| Ⅰ. 유동부채      | 13           | 16           | △3        | △18.75 |
| Ⅱ. 장기차입부채    | 0            | 0            | 0         | 0      |
| Ⅲ. 장기충당부채    | 0            | 0            | 0         | 0      |
| Ⅳ. 기타비유동부채   | 0            | 0            | 0         | 0      |
| 순 자 산        | 480,228      | 472,699      | 7,529     | 1.59   |
| Ⅰ. 기본순자산     | 311,683      | 311,683      | 0         | 0      |
| Ⅱ. 적립금 및 양여금 | △13,708      | △21,950      | 8,242     | 37.55  |
| Ⅲ. 순자산 조정    | 182,252      | 182,965      | △713      | △0.39  |

자료: 대통령경호처

대통령경호처는 2017년도 재정운영결과 재정지출(비용)이 재정수입(수익)을 초과하여 순비용이 861억 7,400만원 발생하였다. 비용은 프로그램충원가 891억 3,100만원, 비배분비용 12억 4,700만원으로 구성되며, 수익은 비배분수익 42억 400만원으로 구성된다.

재정운영순원가(프로그램순원가 + 관리운영비 + 비배분비용 - 비배분수익)는 전년도 대비 87억 4,100만원(11.29%) 증가한 861억 7,400만원이며, 이는 대통령경호처 운영비 증가에 따라 프로그램순원가가 전년도 대비 38억 6,000만원 증가 및 유형자산 교환거래로 인해 비배분수익이 전년도 대비 42억 6,300만원 감소한 것에 기인한다.

총 2개의 프로그램 중 프로그램순원가가 큰 프로그램은 대통령경호실 운영프로그램(594억 9,500만원)과 대통령 및 국가요인 경호프로그램(296억 3,600만원)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비배분비용은 평가손실 9억 9,900만원과 기타비용 2억 4,8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7회계연도 대통령경호처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17<br>회계연도 | 2016<br>회계연도 | 전년도 대비 증감 |        |
|-------------------------------|--------------|--------------|-----------|--------|
|                               |              |              | 금액        | 비율     |
| I. 프로그램순원가(가-나)               | 89,131       | 85,271       | 3,860     | 4.53   |
| 가. 프로그램 총원가                   | 89,131       | 85,271       | 3,860     | 4.53   |
| 나. 프로그램 수익                    | 0            | 0            | 0         | 0      |
| II. 관리운영비                     | 0            | 0            | 0         | 0      |
| III. 비배분비용                    | 1,247        | 629          | 618       | 98.25  |
| IV. 비배분수익                     | 4,204        | 8,467        | △4,263    | △50.35 |
| V. 재정운영순원가(I + II + III - IV) | 86,174       | 77,433       | 8,741     | 11.29  |
| VI. 비교환수익 등                   | 0            | 0            | 0         | 0      |
| VII. 재정운영결과(V - VI)           | 86,174       | 77,433       | 8,741     | 11.29  |

자료: 대통령경호처

대통령경호처의 2017년도 기초순자산은 4,726억 9,900만원이고, 기말순자산은 4,802억 2,800만원으로 기초 대비 75억 2,900만원(1.59%) 증가하였는데, 이는 회계연도 중에 순자산 차감항목인 재정운영결과는 861억 7,400만원 증가한 반면, 순자산 가산항목인 조정항목은 7억 1,300만원으로 작게 감소하였고, 채원의 조달 및 이전은 944억 1,700만원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2017회계연도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재원의 조달 946억 9,000만원과 재원의 이전 △2억 7,300만원으로 구성되며, 조정항목은 자산재평가이익 7억 1,300만원 등으로 구성된다.

[2017회계연도 대통령경호처 순자산변동표 요약]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17<br>회계연도 | 2016<br>회계연도 | 전년도 대비 증감 |         |
|------------------------------|--------------|--------------|-----------|---------|
|                              |              |              | 금액        | 비율      |
| I. 기초순자산                     | 472,699      | 424,189      | 48,510    | 11.44   |
| II. 재정운영결과                   | 86,174       | 77,433       | 8,741     | 11.29   |
| III. 재원의 조달 및 이전             | 94,417       | 84,892       | 9,525     | 11.22   |
| IV. 조정항목                     | △713         | 41,050       | △41,763   | △101.74 |
| V. 기말순자산( I - II + III + IV) | 480,228      | 472,699      | 7,529     | 1.59    |

자료: 대통령경호처

대통령경호처의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 또는 감액된 사업이나 부대의견으로 채택된 사항은 없다.

대통령경호처는 ① 대통령 등 요인 및 국민경호 강화, ② 평창 동계올림픽 경호안전 ③ 경호장비시설개선과 경호안전교육원운영을 2017년도 주요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예산을 집행하였다.

2017회계연도 대통령경호처 소관 결산에 대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일부 사업에서 집행 부진 사례가 발견되었다. 우선 올림픽 경호 사업은 예산액 37억 9,600만원 중 14억 8,6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이 39.2%에 불과하였으며, 경호안전 교육원 운영 사업은 전년 집행률 68.1%보다는 개선되었으나 2017년에도 집행률 역시 69.9%에 머물렀다.

## II

## 개별 사업 분석

### 1

### 올림픽경호 사업 집행 부진 및 이월 과다

#### 가. 현 황

올림픽경호 사업<sup>1)</sup>은 평창동계올림픽 경호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통령경호처는 동 사업의 2017년도 예산액 37억 9,600만원 중 39.2%에 해당하는 14억 8,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4억 1,500만원을 이월, 8억 9,500만원을 불용하였다.

대통령경호처는 평창올림픽 경호에 대한 제반 준비를 2017년 9월부터 시작하였으며, 투입되는 경호인력에 대한 훈련은 2018년 1월부터 시작하였다. 평창올림픽 관련 경호투입인력 규모는 대통령경호처, 군·경 등을 포함하여 약 9,000여명이며, 방한 국민경호와 주요 행사장 및 기동로 등 에 대한 경호임무를 수행하였다.

[2017회계연도 올림픽경호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예산액   |       | 전년도<br>이월액 | 이·전용<br>등 | 예산현액  | 집행액   | 다음연도<br>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    |            |           |       |       |             |     |
| 올림픽경호 | 3,796 | 3,796 | 0          | 0         | 3,796 | 1,486 | 1,415       | 895 |
| 운영비   | 1,741 | 1,741 | 0          | 0         | 1,741 | 427   | 685         | 629 |
| 여비    | 100   | 100   | 0          | 0         | 100   | 5     | 0           | 95  |
| 업무추진비 | 200   | 200   | 0          | 0         | 200   | 180   | 0           | 20  |
| 건설비   | 290   | 290   | 0          | 0         | 290   | 168   | 30          | 92  |
| 유형자산  | 1,465 | 1,465 | 0          | 0         | 1,465 | 706   | 700         | 53  |

자료: 대통령경호처

정주완 예산분석관(jjw1026@assembly.go.kr, 788-4644)

1) 코드명: 일반회계 1131-307

## 나. 분석의견

첫째, 철저한 집행관리를 통해 사고이월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의 이월 내역을 살펴보면, 모두 12월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는데, 특히 경호 인력 피복비 구매계약은 12월 27일, 28일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올림픽경호 사업의 이월 세부내역]

(단위: 천원)

| 사업내용                    | 사업기간(계약기간)             | 계약금액      | 이월금액      |
|-------------------------|------------------------|-----------|-----------|
| 평창 동계올림픽 경호근무자 방한복 제작구매 | 2017.12.28 ~ 2018.1.26 | 246,000   | 246,000   |
| 경호안전요원 훈련복 세트 제작 구매     | 2017.12.27 ~ 2018.1.19 | 74,000    | 74,000    |
| OOOO 확인 시스템 임차          | 2017.12.18 ~ 2018.3.18 | 58,880    | 58,880    |
| OOOO실 구축 및 장비 임차        | 2017.12.18 ~ 2018.3.18 | 336,056   | 336,056   |
| OOO시스템 확보 사업            | 2017.12.4 ~ 2018.1.26  | 699,900   | 699,900   |
| 합계                      |                        | 1,414,836 | 1,414,836 |

자료: 대통령경호처

이에 대해 대통령경호처는 경호대상자의 규모의 확정이 지연됨에 따라 경호인력 및 관련 시설·장비 등에 대한 확정 역시 지연되어, 연말계약이 불가피하였으며, 관련 시설 및 장비의 경우, 계약 후 약 한달 이상의 설치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이월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경호근무자 방한복 제작 구매의 경우에는 2017년 11월 7일에 최초로 계약의뢰 한 후, 1회 유찰로 인하여 연말 계약을 실시하였다. 여타 계약의 경우에도 경호근무자 방한복 제작 구매와 같이 경호대상자 규모 확정 후 신속하게 계약 절차를 개시하였다면 총 이월 규모는 다소 축소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적정예산을 편성하여 과도한 불용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 예산액 중 집행액과 이월액을 제외한 불용액은 8억 9,500만원으로 예산액의 23.5%에 달한다. 동 사업과 관련하여 주요한 계획변경 등 특별한 사정이 없었으므로, 이는 당초 예산이 과다 편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 경호처는 올림픽경호 사업이 신규 사업이면서 국내에서 개최한 최초의 동계올림픽으로서, 집행규모 예측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 최근 선례가 없어 정확한 재정소요를 예측하기 곤란하였다는 입장이다.

대통령경호처가 향후 유사한 경호사업을 예산에 편성할 때에는, 보다 정확한 예측을 통해 적정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 가. 현 황

경호안전교육원은 대통령경호처 직원 및 경호안전 관련 종사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다. 경호안전교육원 운영 사업<sup>1)</sup>은 경호안전교육원 운영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통령경호처는 동 사업의 2017년도 예산액 23억 9,000만원 중 75.8%에 해당하는 18억 1,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5억 7,7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7회계연도 경호안전교육원 운영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예산액   |       | 전년도<br>이월액 | 이·전용<br>등 | 예산현액  | 집행액   | 다음연도<br>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    |            |           |       |       |             |     |
| 경호안전<br>교육원 운영 | 2,390 | 2,390 | 0          | 0         | 2,390 | 1,813 | 0           | 577 |

자료: 대통령경호처

### 나. 분석의견

경호안전교육원 운영 예산의 집행 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의 2017년 집행률은 전년도 집행률 68.1%보다는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불용률이 높다. 상세 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 집행률이 69.9%로 가장 낮았고, 연구용역비 75.7%, 운영비는 79.4%를 집행하였다.

정주완 예산분석관(jjw1026@assembly.go.kr, 788-4644)

1) 코드명: 일반회계 1231-304

[경호안전교육원 운영 사업의 집행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예산액(예산현액) | 집행액   | 불용액 | 집행률  |
|-----------|-----------|-------|-----|------|
| 경호안전교육원운영 | 2,390     | 1,813 | 577 | 75.8 |
| 인건비       | 856       | 599   | 257 | 69.9 |
| 운영비       | 1,394     | 1,108 | 286 | 79.4 |
| 연구용역비     | 140       | 106   | 34  | 75.7 |

자료: 대통령경호처

이에 대해 대통령경호처는 경호안전교육원이 2016년 7월 개원되었고, 2017년 특수한 정국상황에 따라 1년간의 정확한 예산소요 판단에 애로사항이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동 사업 인건비의 불용은 경호안전교육원 소속 기간제 근로자의 빈번한 채용·퇴직으로 인하여 예산편성 시 계획한 정원(26명)을 연중 유지하지 못하여 발생하였다.

[경호안전교육원 기간제 근로자 월별 결원 현황]

(단위: 명)

| 월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결원 | 4  | 4  | 4  | 4  | 4  | 4  | 3  | 4  | 4  | 4   | 5   | 0   |

주: 기간제 근로자의 직무는 경비, 위생, 시설관리 등

자료: 대통령경호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바탕으로 재작성

한편, 동 사업 운영비의 불용은 대부분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발생하였다. 운영비 불용액 2억 8,600만원 중 공공요금 및 제세의 불용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47.2%에 해당하는 1억 3,500만원이다.

[경호안전교육원 운영 사업의 공공요금 및 제세 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예산액(예산현액) | 집행액   | 불용액 |
|-----------|-----------|-------|-----|
| 운영비       | 1,394     | 1,108 | 286 |
| 공공요금 및 제세 | 312       | 177   | 135 |

자료: 대통령경호처



2018년 동 사업 운영비 예산은 2017년과 동일한 13억 9,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18년에도 운영비 집행률이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sup>2)</sup> 다만, 2018년부터는 경호안전교육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대통령 경호처는 2018년 동 사업의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향후 적정 예산 편성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

2) 동 사업 인건비는 2018년부터 인건비 세부사업(1101-101)에 편성되었다.





국회



## 1

## 현 황

## 가. 총수입·총지출 결산

2017회계연도 국회 소관 결산은 일반회계만으로 구성된다.

2017회계연도 국회 소관 총수입은 예산액 대비 4억 1,500만원(20.5%)이 증가한 24억 3,6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2억 8,100만원(10.3%)이 감소하였다.

[2017회계연도 국회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 2016<br>결산(A) | 2017  |       |           |                | 전년 대비<br>(C-A) |
|-----|---------------|-------|-------|-----------|----------------|----------------|
|     |               | 예산    |       | 결산<br>(C) | 예산 대비<br>(C-B) |                |
|     |               | 본예산   | 추경(B) |           |                |                |
| 총수입 | 2,717         | 2,021 | 2,021 | 2,436     | 415            | △281           |

자료: 국회

2017회계연도 국회 소관 총지출은 예산액 대비 354억 6,800만원(6.2%)이 감소한 5,500억 7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255억 700만원(4.9%)이 증가하였다.

[2017회계연도 국회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 2016<br>결산(A) | 2017    |         |           |                | 전년 대비<br>(C-A) |
|-----|---------------|---------|---------|-----------|----------------|----------------|
|     |               | 예산      |         | 결산<br>(C) | 예산 대비<br>(C-B) |                |
|     |               | 본예산     | 추경(B)   |           |                |                |
| 총지출 | 524,500       | 574,269 | 574,269 | 550,007   | △35,468        | 25,507         |

자료: 국회

## 나. 세입·세출 결산

2017회계연도 국회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20억 2,100만원이며, 27억 1,3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89.8%인 24억 3,600만원을 수납하고 2억 7,800만원을 미수납하였으며 불납결손액은 없다.

[2017회계연도 국회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 구분   | 예산    |       | 예산현액  | 징수<br>결정액(A) | 수납액<br>(B) | 미수납액 | 불납<br>결손액 | 수납률<br>(B/A) |
|------|-------|-------|-------|--------------|------------|------|-----------|--------------|
|      | 본예산   | 추경    |       |              |            |      |           |              |
| 일반회계 | 2,021 | 2,021 | 2,021 | 2,713        | 2,436      | 278  | 0         | 89.8         |

자료: 국회

2017회계연도 국회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5,854억 7,500만원이며, 이 중 93.9%인 5,500억 700만원을 지출하고 68억 5,1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86억 1,6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2017회계연도 국회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 구분   | 예산      |         | 예산<br>현액(A) | 지출액<br>(B) | 다음연도<br>이월액 | 불용액    | 집행률<br>(B/A) |
|------|---------|---------|-------------|------------|-------------|--------|--------------|
|      | 본예산     | 추경      |             |            |             |        |              |
| 일반회계 | 574,269 | 574,269 | 585,475     | 550,007    | 6,851       | 28,616 | 93.9         |

자료: 국회

## 다. 재무 결산

2017회계연도 말 현재 국회의 자산은 3조 4,399억 6,100만원, 부채는 224억 5,400만원으로 순자산은 3조 4,175억 800만원이다.

자산은 전기 대비 1,617억 5,500만원(4.9%) 증가한 것으로 유동자산 25억 8,000만원, 일반유형자산 3조 4,190억 700만원, 무형자산 181억 2,400만원, 기타비유동자산

2억 4,900만원으로 구성된다. 이는 자산재평가 등에 따른 토지 1,681억 700만원 증가, 스마트워크센터 건립에 따른 건설중인자산 84억 2,300만원 증가 등에 기인한다.

부채는 전기 대비 65억 1,800만원(22.5%) 감소한 것으로 유동부채 91억 700만원, 장기차입부채 106억 1,700만원, 장기충당부채 1,200만원, 기타비유동부채 27억 1,8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리스부채 상환에 따른 유동성장기차입부채 19억 3,300만원 감소, 장기차입부채 40억 7,900만원 감소 등에 기인한다.

[2017회계연도 국회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17<br>회계연도 | 2016<br>회계연도 | 전년도 대비 증감 |       |
|--------------|--------------|--------------|-----------|-------|
|              |              |              | 금 액       | 비 율   |
| 자 산          | 3,439,961    | 3,278,206    | 161,755   | 4.9   |
| Ⅰ. 유동자산      | 2,580        | 1,862        | 718       | 38.6  |
| Ⅱ. 투자자산      | 0            | 0            | 0         | 0     |
| Ⅲ. 일반유형자산    | 3,419,009    | 3,259,748    | 159,259   | 4.9   |
| Ⅳ. 사회기반시설    | 0            | 0            | 0         | 0     |
| Ⅴ. 무형자산      | 18,124       | 16,481       | 1,643     | 10.0  |
| Ⅵ. 기타비유동자산   | 249          | 115          | 134       | 116.5 |
| 부 채          | 22,454       | 28,972       | △6,518    | △22.5 |
| Ⅰ. 유동부채      | 9,107        | 10,888       | △1,781    | △16.4 |
| Ⅱ. 장기차입부채    | 10,617       | 14,696       | △4,079    | △27.8 |
| Ⅲ. 장기충당부채    | 12           | 0            | 12        | 0     |
| Ⅳ. 기타비유동부채   | 2,718        | 3,388        | △670      | △19.8 |
| 순 자 산        | 3,417,508    | 3,249,235    | 168,273   | 5.2   |
| Ⅰ. 기본순자산     | 1,507,896    | 1,507,896    | 0         | 0     |
| Ⅱ. 적립금 및 양여금 | 165,468      | 165,025      | 443       | 0.3   |
| Ⅲ. 순자산 조정    | 1,744,143    | 1,576,313    | 167,830   | 10.6  |

자료: 국회

국회는 2017년도 재정운영결과 재정지출(비용)이 재정수입(수익)을 초과하여 순비용이 6,017억 100만원 발생하였다. 비용은 프로그램총원가 2,086억 5,300만원, 관리운영비 3,949억 7,700만원, 비배분비용 9억 9,900만원으로 구성되며, 수익은 비배분수익 29억 2,700만원으로 구성된다.

재정운영순원가(프로그램순원가 + 관리운영비 + 비배분비용 - 비배분수익)는 전년도 대비 171억 2,100만원(2.9%) 증가한 6,017억 100만원이며, 이는 인건비 등의 증가에 따라 관리운영비가 전년도 대비 169억 200만원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

총 5개의 프로그램 중 프로그램순원가가 큰 프로그램은 의정지원활동프로그램(954억 3,900만원)과 국회사무처운영프로그램(905억 6,8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관리운영비는 인건비 3,307억 7,800만원과 기본경비 641억 9,9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배분비용은 기타비용 9억 1,600만원과 대손상각비 8,2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배분수익은 재화및용역제공수익 14억 9,500만원과 기타수익 13억 9,1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7회계연도 국회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17<br>회계연도 | 2016<br>회계연도 | 전년도 대비 증감 |       |
|--------------------------------|--------------|--------------|-----------|-------|
|                                |              |              | 금액        | 비율    |
| I. 프로그램순원가(가-나)                | 208,653      | 207,024      | 1,629     | 0.8   |
| 가. 프로그램 총원가                    | 208,653      | 207,024      | 1,629     | 0.8   |
| 나. 프로그램 수익                     | 0            | 0            | 0         | 0     |
| II. 관리운영비                      | 394,977      | 378,075      | 16,902    | 4.5   |
| III. 비배분비용                     | 999          | 2,306        | △1,307    | △56.7 |
| IV. 비배분수익                      | 2,927        | 2,825        | 102       | 3.6   |
| V. 재정운영순원가( I + II + III - IV) | 601,701      | 584,580      | 17,121    | 2.9   |
| VI. 비교환수익 등                    | 0            | 0            | 0         | 0     |
| VII. 재정운영결과(V - VI)            | 601,701      | 584,580      | 17,121    | 2.9   |

자료: 국회

국회의 2017년도 기초순자산은 3조 2,492억 3,500만원이고, 기말순자산은 3조 4,715억 800만원으로 기초 대비 1,682억 7,300만원(5.2%) 증가하였는데, 이는 순자산 차감항목인 재정운영결과는 전기 대비 171억 2,100만원 증가한 반면, 순자산 가산항목인 조정항목은 전기 대비 782억 3,400만원 증가하였고,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전기 대비 151억 3,800만원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2017회계연도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국고수입 등 재원의 조달 6,048억 7,100만원과 국고이전지출 등 재원의 이전 △27억 2,700만원으로 구성되며, 조정항목은 자산재평가이익 1,678억 3,0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7회계연도 국회 순자산변동표 요약]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17<br>회계연도 | 2016<br>회계연도 | 전년도 대비 증감 |      |
|------------------------------|--------------|--------------|-----------|------|
|                              |              |              | 금액        | 비율   |
| I. 기초순자산                     | 3,249,235    | 3,157,213    | 92,022    | 2.9  |
| II. 재정운영결과                   | 601,701      | 584,580      | 17,121    | 2.9  |
| III. 재원의 조달 및 이전             | 602,144      | 587,006      | 15,138    | 2.6  |
| IV. 조정항목                     | 167,830      | 89,596       | 78,234    | 87.3 |
| V. 기말순자산( I - II + III + IV) | 3,417,508    | 3,249,235    | 168,273   | 5.2  |

자료: 국회

국회의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된 사업으로 ① 국회의원 수당, ② 헌정회지원 ③ 의사국운영 등이 있다.

국회의원 수당은 전년 수준으로 동결하여 10억원이 감액(319억원→309억원)되었고, 헌정회지원 사업은 연로회원지원금 집행실적 추이에 따라 3억원(77억→74억)이 감액되었다.<sup>1)</sup> 의사국운영 사업은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불용액을 감안하여 1억원(25억→24억)이 감액되었다.

국회 심사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된 사업으로는 ① 의정활동지원 인턴, ② 도서관 의정자료공유통합시스템 등이 있다.

의정활동지원 인턴 사업은 인턴의 처우개선을 위한 초과근무수당이 확대되어 6억원(118억→124억)이 증액되었고, 도서관 의정자료공유통합시스템은 시스템 개선·확장 소요 관련 2억원(2억→4억)이 증액되었다.<sup>2)</sup>

또한 국회심사 과정에서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가 부대의견으로 채택되었다.<sup>3)</sup>

1) 국회운영위원회, 「2017년도 국회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6.11.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16.11.

3) 국회,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16.12.

국회는 ① 정책국회 구현을 위한 **의정활동 지원 강화**, ② 민간근로자 처우개선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배려**, ③ 시설물 안전 확보 등 **안전하고 효율적인 의정환경 조성**, ④ 입법활동 및 예·결산 심의 지원 등을 위한 **입법지원조직 역량 강화**를 2017년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예산을 집행하였다.

2017회계연도 국회 소관 결산에 대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2017년 국회 고성연수원의 사업 실적이 다소 미흡하므로 수요자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고성연수원의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가. 현 황

국회사무처는 연수활동지원 사업<sup>1)</sup>에서 ‘고성연수원 운영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국회 고성연수원은 국회의원 및 보좌관, 국회직원 및 관련 공공기관의 교육·연수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수행을 위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에 교육시설, 숙소,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다.

연수활동 지원 사업의 2017년 예산현액은 45억 9,000만원이며, 이 중 75.1%에 해당하는 34억 4,500만원을 집행하고 11억 4,500만원을 불용하였다.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고성연수원 운영지원 사업은 예산현액 32억 3,600만원 중 24억 5,900만원을 집행하고 7억 7,700만원을 불용하였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동 내역사업의 집행이 부진한 것은 고성연수원이 예상보다 지연된 2017년 3월말에 개원하여 1/4분기 운영비 등을 집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2017회계연도 연수활동지원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예산액   |       | 전년도<br>이월액 | 이·전용<br>등 | 예산<br>현액 | 집행액   | 다음연도<br>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    |            |           |          |       |             |       |
| 연수활동 지원    | 4,459 | 4,459 | 107        | 24        | 4,590    | 3,445 | 0           | 1,145 |
| 고성연수원 운영지원 | 3,129 | 3,129 | 107        | 0         | 3,236    | 2,459 | 0           | 777   |

자료: 국회사무처

정주완 예산분석관(jjw1026@assembly.go.kr, 788-4644)

1) 코드명: 일반회계 2031-306

## 나. 분석의견

국회사무처는 국회 고성연수원의 적극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국회 고성연수원은 2017년 3월에 개원하여 국회의원 및 국회직원, 정당,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교육·연수 그에 준하는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국회사무처에서 국회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중견관리자 과정 등 기본교육 과정, 지방의회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의회 전문위원 과정 등 지방의회 연수과정에 고성연수원을 활용하고 있다.

[2017년도 기본교육 및 지방의회연수 과정의 고성연수원 활용 내역]

(단위: 명, %)

| 과정명         | 대상        | 목표<br>(연인원) | 실적<br>(연인원) | 달성률 |
|-------------|-----------|-------------|-------------|-----|
| 중견관리자과정     | 복수직 4급    | 100         | 120         | 120 |
|             |           | 80          | 84          | 105 |
| 신임관리자과정     | 일반승진자(5급) | 60          | 120         | 200 |
|             | 입법고시 합격자  | 45          | 54          | 120 |
|             |           | 75          | 90          | 120 |
| 신임실무자과정     | 8급 합격자    | 75          | 120         | 160 |
| 지방의회 전문위원과정 | 지방의회 전문위원 | 480         | 476         | 99  |
|             |           | 480         | 448         | 93  |
| 지방의회 실무직원과정 | 지방의회 실무직원 | 480         | 232         | 48  |
|             |           | 480         | 124         | 26  |

자료: 국회사무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이와는 별도로 국회 고성연수원은 자체교육연수 과정을 개발하여 2017년에 총 10개 과정을 실시하였는데, 교육 실시 인원을 기준으로 볼 때 전체적으로 당초 목표에 미치지 못하였다.

[2017년도 고성연수원 자체교육연수 실시 현황]

(단위: 명, %)

| 과정명                           | 대상                  | 목표<br>(연인원) | 실적<br>(연인원) | 달성률  |
|-------------------------------|---------------------|-------------|-------------|------|
| 정부부처 국회담당 공무원 연수              | 공무원                 | 1,350       | 48          | 19.0 |
|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연수              | 군산시의회               |             | 30          |      |
| 22사단 인권교육 연수                  | 22사단                |             | 37          |      |
| 지방자치 인재개발원 평화통일<br>기반조성과 안보과정 | 지방자치<br>인재개발원       |             | 54          |      |
| 강원도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br>워크숍       | 강원도 동해안권<br>경제자유구역청 |             | 90          |      |
| 고성군 초등학교 어린이 연수               | 초등학생                | 375         | 86          | 136  |
| 전남교육청 울곡 통일 리더 스쿨             | 전남교육청               |             | 240         |      |
| 청소년 의회 연수                     | 중·고등 학생             |             | 184         |      |
| 미래 정치지도자 의회 연수                | 대학생                 | 225         | 128         | 56.9 |
| 예비 사회인 의회 연수                  | 시민<br>(전역예정 군인)     | 900         | 173         | 19.2 |

자료: 국회사무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바탕으로 재작성

의정연수원의 기본교육 및 지방의회연수 과정 중 일부를 고성연수원에서 실시하는 것만으로 시설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고성연수원에서 자체교육 연수 및 지역사회와의 다양한 교류협력을 지속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2017년 교육 실시 인원을 기준으로 사업 실적이 목표에 미달된 상황이므로, 향후에는 이용 대상자들의 수요에 부합하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고성연수원의 활용제고를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 1 현 황

## 가. 총수입·총지출 결산

2017회계연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총수입은 1,8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1억 3,470만원(88.2%)이 감소하였다.

[2017회계연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 2016<br>결산(A) | 2017 |       |           |                | 전년 대비<br>(C-A) |
|-----|---------------|------|-------|-----------|----------------|----------------|
|     |               | 예산   |       | 결산<br>(C) | 예산 대비<br>(C-B) |                |
|     |               | 본예산  | 추경(B) |           |                |                |
| 총수입 | 153           | 21   | 21    | 18        | △3             | △135           |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2017회계연도 국가인권위원회 총지출은 285억 3,129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15억 9,549만원(5.9%)이 증가하였다.

[2017회계연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 2016<br>결산(A) | 2017   |        |           |                | 전년 대비<br>(C-A) |
|-----|---------------|--------|--------|-----------|----------------|----------------|
|     |               | 예산     |        | 결산<br>(C) | 예산 대비<br>(C-B) |                |
|     |               | 본예산    | 추경(B)  |           |                |                |
| 총지출 | 26,936        | 29,289 | 29,289 | 28,531    | △758           | 1,595          |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 나. 세입·세출 결산

2017회계연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2,100만원이며, 1,8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미수납, 불납결손 없이 1,800만원 전액을 수납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세입 총계는 총수입과 동일하다.

[2017회계연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 구분   | 예산  |    | 예산현액 | 징수<br>결정액(A) | 수납액<br>(B) | 미수납액 | 불납<br>결손액 | 수납률<br>(B/A) |
|------|-----|----|------|--------------|------------|------|-----------|--------------|
|      | 본예산 | 추경 |      |              |            |      |           |              |
| 일반회계 | 21  | 21 | 21   | 18           | 18         | 0    | 0         | 100.0        |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2017회계연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294억 2,880만원이며, 이 중 97.0%인 285억 3,129만원을 지출하고 3억 5,5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5억 4,251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세출 총계는 총지출과 동일하다.

[2017회계연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 구분   | 예산     |        | 예산<br>현액(A) | 지출액<br>(B) | 다음연도<br>이월액 | 불용액 | 집행률<br>(B/A) |
|------|--------|--------|-------------|------------|-------------|-----|--------------|
|      | 본예산    | 추경     |             |            |             |     |              |
| 일반회계 | 29,289 | 29,289 | 29,429      | 28,531     | 355         | 543 | 97.0         |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 다. 재무 결산

2017회계연도 말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의 자산은 55억 4천 8백만원, 부채는 0원으로 순자산은 55억 4,700만원이다.

자산은 전기 대비 4억 8,500만원(9.6%) 증가한 것으로 유동자산 600만원, 일반유형자산 16억 4,800만원, 무형자산 15억 6,000만원, 기타비유동자산 23억 3,400만원으로 구성된다. 이는 강원인권사무소 관사 취득 등에 따른 일반유형자산 4억 5,700만원 증가와, 광주인권사무소 청사 임차보증금 유동성대체 및 강원인권사무소 청사 임차보증금 발생에 따른 기타비유동자산 1억 9,600만원 증가 등에 기인한다.

부채는 전기 대비 2억 9,400만원(100%) 감소한 것으로 이는 본청 미지급 임차보증금 당기 상환 및 기타의미지급비용 감소에 따른 유동부채 2억 9,400만원 감소에 기인한다.

[2017회계연도 국가인권위원회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17<br>회계연도 | 2016<br>회계연도 | 전년도 대비 증감 |        |
|--------------|--------------|--------------|-----------|--------|
|              |              |              | 금 액       | 비 율    |
| 자 산          | 5,548        | 5,063        | 485       | 9.6    |
| Ⅰ. 유동자산      | 6            | 117          | △111      | △94.9  |
| Ⅱ. 투자자산      | 0            | 0            | 0         | 0      |
| Ⅲ. 일반유형자산    | 1,648        | 1,191        | 457       | 38.4   |
| Ⅳ. 사회기반시설    | 0            | 0            | 0         | 0      |
| Ⅴ. 무형자산      | 1,560        | 1,617        | △57       | △3.5   |
| Ⅵ. 기타비유동자산   | 2,334        | 2,138        | 196       | 9.2    |
| 부 채          | 0            | 294          | △294      | △100.0 |
| Ⅰ. 유동부채      | 0            | 294          | △294      | △100.0 |
| Ⅱ. 장기차입부채    | 0            | 0            | 0         | 0      |
| Ⅲ. 장기충당부채    | 0            | 0            | 0         | 0      |
| Ⅳ. 기타비유동부채   | 0            | 0            | 0         | 0      |
| 순 자 산        | 5,547        | 4,769        | 778       | 16.3   |
| Ⅰ. 기본순자산     | 5,748        | 5,748        | 0         | 0      |
| Ⅱ. 적립금 및 양여금 | △593         | △1,371       | 778       | 56.7   |
| Ⅲ. 순자산 조정    | 392          | 392          | 0         | 0      |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년도 재정운영결과 재정지출(비용)이 재정수입(수익)을 초과하여 순비용이 297억 1,400만원 발생하였다. 비용은 프로그램총원가 297억 1,400만원으로 구성되며, 수익은 비배분수익 900만원으로 구성된다.

재정운영순원가(프로그램순원가 + 관리운영비 + 비배분비용 - 비배분수익)는 전년도 대비 14억 8천만원(5.2%) 증가한 297억 500만원이며, 이는 프로그램순원가 13억 4,100만원 증가 및 비배분수익 1억 3,900만원 감소한 것에 기인한다.

[2017회계연도 국가인권위원회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17<br>회계연도 | 2016<br>회계연도 | 전년도 대비 증감 |       |
|--------------------------------|--------------|--------------|-----------|-------|
|                                |              |              | 금액        | 비율    |
| I. 프로그램순원가(가-나)                | 29,714       | 28,373       | 1,341     | 4.7   |
| 가. 프로그램 총원가                    | 29,714       | 28,373       | 1,341     | 4.7   |
| 나. 프로그램 수익                     | 0            | 0            | 0         | 0     |
| II. 관리운영비                      | 0            | 0            | 0         | 0     |
| III. 비배분비용                     | 0            | 0            | 0         | 0     |
| IV. 비배분수익                      | 9            | 148          | △139      | △93.9 |
| V. 재정운영순원가( I + II + III - IV) | 29,705       | 28,225       | 1,480     | 5.2   |
| VI. 비교환수익 등                    | 0            | 0            | 0         | 0     |
| VII. 재정운영결과(V - VI)            | 29,705       | 28,225       | 1,480     | 5.2   |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의 2017년도 기초순자산은 47억 6,900만원이고, 기말순자산은 55억 4,700만원으로 기초 대비 7억 7,800만원(16.3%) 증가하였는데, 이는 회계연도 중에 순자산 차감항목인 재정운영결과는 기초 대비 14억 8,000만원 증가한 반면, 순자산 가산항목인 조정항목은 기초 대비 900만원 감소하였고,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기초 대비 17억 9,300만원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2017회계연도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국고수입 등 재원의 조달 305억 3,900만원과 국고이전지출 등 재원의 이전 5,600만원으로 구성된다.

[2017회계연도 국가인권위원회 순자산변동표 요약]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17<br>회계연도 | 2016<br>회계연도 | 전년도 대비 증감 |        |
|------------------------------|--------------|--------------|-----------|--------|
|                              |              |              | 금액        | 비율     |
| I. 기초순자산                     | 4,769        | 4,295        | 474       | 11.0   |
| II. 재정운영결과                   | 29,705       | 28,225       | 1,480     | 5.2    |
| III. 재원의 조달 및 이전             | 30,483       | 28,690       | 1,793     | 6.2    |
| IV. 조정항목                     | 0            | 9            | △9        | △100.0 |
| V. 기말순자산( I - II + III + IV) | 5,547        | 4,769        | 778       | 16.3   |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의 2017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증액, 감액 및 부대의견은 없다.

국가인권위원회는 ① 다양한 인권교육 운영 및 콘텐츠 개발, ② 인권문화 콘텐츠 보급 등을 통한 인권에 대한 이해 증진, ③ 인권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에 대한 실태조사와 연구를 통한 인권 기초자료 확보 및 문제개선을 주요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예산을 집행하였다.

2017회계연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첫째, 인권영화 제작 및 보급 사업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북한인권 개선 사업에서 당초 계획과 다르게 집행한 사례가 발견되었다.

## II

## 개별 사업 분석

### 1

### 인권영화 제작·보급의 내실화 필요

#### 가. 현 황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예방 및 인권문화조성 사업<sup>1)</sup>의 일환으로 인권문화 콘텐츠(인권영화)를 개발·보급하고 있다. 2017년 동 사업에서 인권영화 1편에 대한 제작비로 2억원, 인권영화 보급비용으로 1,600만원을 집행하였다.

[2017회계연도 차별예방 및 인권문화조성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예산액 |     | 이·전용<br>등 | 예산현액 | 집행액 | 다음연도<br>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  |           |      |     |             |     |
| 차별예방 및 인권문화조성 | 295 | 295 | 0         | 295  | 294 | 0           | 1   |
| 인권문화콘텐츠 개발·보급 | 223 | 223 | 0         | 223  | 216 | 0           | 1   |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 나. 분석의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주관의 인권영화제와 연계성을 확보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의제를 형성하고 인권감수성 확산을 위한 인권교육교재로 활용할 목적으로 인권영화를 제작·보급하고 있다. 동 사업을 통해 제작된 인권

정주완 예산분석관(jjw1026@assembly.go.kr, 788-4644)

1) 코드명: 일반회계 1031-302



영화는 우선 영화관에서 개봉되고, 이후 국내외 영화제 초청 상영, 각급 학교·기관 및 단체 등에 무료 보급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7년에 인권영화를 상영하거나 보급한 건수는 3,964건이다.

[최근 5년간 인권 영화 제작 및 보급 현황]

(단위: 건)

| 연도   | 제작 영화명   | 영화 상영 및 보급 건수 <sup>1)</sup> | 상영 및 보급 경로                            |
|------|----------|-----------------------------|---------------------------------------|
| 2013 | 어떤 시선    | 2,973                       | 각 지역인권사무소, 초·중·고 대학교, 지역 공공도서관, 교도소 등 |
| 2014 | 하늘의 황금마차 | 3,894                       |                                       |
| 2015 | 4등       | 4,750                       |                                       |
| 2016 | 시선사이     | 2,206                       |                                       |
| 2017 | 메기       | 3,964                       |                                       |

주: 1) 당해 연도 뿐만 아니라 과거에 제작된 인권영화의 상영·보급 건수를 포함한 숫자임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가 2017년 1,600만원을 투입하여 3,964건의 인권영화를 상영·배포한 것을 고려할 때, 영화 보급 사업은 예산 투입 대비 효율성이 높은 사업으로 보인다. 현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단체가 주관하는 인권영화제가 활발히 운영 중이며, 매년 다수의 영화가 출품되고 있다.<sup>2)</sup> 따라서 다양한 인권의제 형성과 효과적인 인권교육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각종 인권영화제의 상영작들을 활용한 보급사업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다양한 인권영화제를 통해 다수의 인권영화가 상영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매년 2억원을 투입하여 연간 인권영화 1편을 제작하는 현재의 사업 방식이 효과적인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

2) 2018년 ‘서울장애인 인권영화제’에서 22편을 상영하였고, ‘서울 인권영화제’에서는 25편을 상영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여성인권영화제’, 각 지방자치단체 주관의 인권영화제에서 매년 다수의 인권영화가 출품·상영되고 있다.

### 가. 현 황

국가인권위원회는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실태조사·연구, 국내외 북한인권 관련 단체·기구·전문가와의 협력관계 구축을 통한 북한인권의 실질적 증진 방안 모색을 위해 북한인권개선 사업<sup>1)</sup>을 수행하고 있다.

동 사업의 2017년 예산액 1억 7,100만원 중 1억 5,700만원을 집행하였고, 1,4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7회계연도 북한인권 개선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예산액 |     | 이·전용<br>등 <sup>1)</sup> | 예산현액 | 집행액 | 다음연도<br>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  |                         |      |     |             |     |
| 북한인권 개선             | 171 | 171 | 0                       | 171  | 157 | 0           | 14  |
| 북한인권 정책개발           | 58  | 58  | 0                       | 58   | 53  | 0           | 5   |
| 북한인권 국제네트워크<br>기반조성 | 113 | 113 | 0                       | 113  | 104 | 0           | 9   |

주: 1) 번역비 부족이 발생하여 임차료(210-07)에서 일반수용비(210-01)로 세목조정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 나. 분석의견

국가인권위원회는 당초 사업 계획과 취지에 부합하는 예산 집행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정주완 예산분석관(jjw1026@assembly.go.kr, 788-4644)

1) 코드명: 일반회계 1034-303

국가인권위원회는 당초 동 사업의 내역 사업인 ‘북한인권 국제네트워크 기반조성’에서 국제심포지엄 개최, UN 북한인권 현장 기구 협력, 해외체류탈북자 실태 등 현지조사 실시를 계획하였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는 국제심포지엄 개최, UN 북한인권 현장 기구 협력을 계획보다 확대 실시하는 대신, 당초 계획되었던 ‘해외체류탈북자 실태 등 현지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북한인권 국제네트워크 기반조성 내역사업 예산편성·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예산 편성내역           | 예산액 | 집행내역                      | 집행액 |
|-------------------|-----|---------------------------|-----|
| 국제심포지엄 개최         | 83  | 북한국제인권심포지엄 개최 및 사전협력      | 100 |
| UN 북한인권 현장 기구 협력  | 14  |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심의 참가 및 사전준비 | 13  |
| 해외체류탈북자 실태 등 현지조사 | 16  | -                         | 0   |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국제심포지엄 개최에 따른 국외여비 지출규모가 예상보다 크게 증가하여 불가피하게 ‘해외체류탈북자 실태 등 현지조사’ 예산으로 충당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년뿐만 아니라 2016년에도 예산에 편성된 ‘해외체류탈북자 실태 등 현지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한국이 아닌 제3국에 임시체류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보장과 관련된 실태조사업무는 통일부 소관의 북한인권 업무와 구별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고유의 업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관련 사업을 2년이나 시행하지 않은 것은 이와 같은 설명에 부합하지 않는다.

한편, 2017년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17년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사업<sup>2)</sup>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인권과 관련된 실태조사<sup>3)</sup>를 수행하였다.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사업은 인권관련 실태조사와 연구를 통한 인권 기초 자료 확보를 목적으로 하므로, 동 사업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인권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시행하는 것이 「국가재

2) 코드명: 일반회계 1034-301

3) ‘2017년 인권 상황 실태조사\_북한이탈주민 인권피해 트라우마 실태조사 연구용역’

정법」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북한인권 개선 사업에 ‘해외체류탈북자 실태 등 현지조사’를 편성하고도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집행하지 않고, 타 사업에서 유사사업을 추진한 것은 적절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해외체류탈북자 실태 등 현지조사’는 2018년에도 동 사업 예산에 편성되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사업의 계획과 취지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 법제사법위원회





부부





## 1

## 현 황

## 가. 총수입·총지출 결산

2017회계연도 법무부 소관 총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2,564억 4,400만원(13.1%)이 감소한 1조 7,043억 2,0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490억 1,300만원(2.8%)이 감소하였다.

[2017회계연도 법무부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 2016<br>결산(A) | 2017      |           |           |                | 전년 대비<br>(C-A) |
|----|---------------|-----------|-----------|-----------|----------------|----------------|
|    |               | 예산        |           | 결산(C)     | 예산 대비<br>(C-B) |                |
|    |               | 본예산       | 추경(B)     |           |                |                |
| 예산 | 1,645,784     | 1,858,895 | 1,858,895 | 1,603,113 | △255,782       | △42,671        |
| 기금 | 107,549       | 101,869   | 101,869   | 101,207   | △662           | △6,342         |
| 합계 | 1,753,333     | 1,960,764 | 1,960,764 | 1,704,320 | △256,444       | △49,013        |

자료: 법무부

2017회계연도 법무부 총지출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2,512억원(7.2%)이 증가한 3조 7,384억 2,1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3,297억 7,200만원(9.7%)이 증가하였다.

[2017회계연도 법무부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 2016<br>결산(A) | 2017      |           |           |                | 전년 대비<br>(C-A) |
|----|---------------|-----------|-----------|-----------|----------------|----------------|
|    |               | 예산        |           | 결산<br>(C) | 예산 대비<br>(C-B) |                |
|    |               | 본예산       | 추경(B)     |           |                |                |
| 예산 | 3,301,100     | 3,337,774 | 3,385,352 | 3,637,214 | 251,862        | 336,114        |
| 기금 | 107,549       | 101,869   | 101,869   | 101,207   | △662           | △6,342         |
| 합계 | 3,408,649     | 3,439,643 | 3,487,221 | 3,738,421 | 251,200        | 329,772        |

자료: 법무부

## 나. 세입세출 결산

2017회계연도 법무부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1조 8,588억 9,500만원이며, 1조 6,233억 1,7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98.8%인 1조 6,031억 1,300만원을 수납하고 202억 100만원을 미수납하였으며 400만원을 불납결손처리 하였다.

[2017회계연도 법무부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 구분         | 예산        |           | 예산현액      | 징수<br>결정액(A) | 수납액<br>(B) | 미수납액   | 불납<br>결손액 | 수납률<br>(B/A) |
|------------|-----------|-----------|-----------|--------------|------------|--------|-----------|--------------|
|            | 본예산       | 추경        |           |              |            |        |           |              |
| 일반회계       | 1,756,682 | 1,756,682 | 1,756,682 | 1,523,811    | 1,503,692  | 20,115 | 4         | 98.7         |
| 교도작업특별회계   | 102,213   | 102,213   | 102,213   | 97,651       | 97,566     | 86     | 0         | 99.9         |
|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 0         | 0         | 0         | 1,855        | 1,855      | 0      | 0         | 100.0        |
| 합계         | 1,858,895 | 1,858,895 | 1,858,895 | 1,623,317    | 1,603,113  | 20,201 | 4         | 98.8         |

자료: 법무부

2017회계연도 법무부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3조 6,679억 6,900만원이며, 이 중 99.2%인 3조 6,372억 1,400만원을 지출하고 12억 1,7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95억 3,8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2017회계연도 법무부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 구분       | 예산        |           | 예산<br>현액(A) | 지출액<br>(B) | 다음연도<br>이월액 | 불용액    | 집행률<br>(B/A) |
|----------|-----------|-----------|-------------|------------|-------------|--------|--------------|
|          | 본예산       | 추경        |             |            |             |        |              |
| 일반회계     | 3,235,561 | 3,283,139 | 3,565,756   | 3,546,916  | 1,217       | 17,623 | 99.5         |
| 교도작업특별회계 | 102,213   | 102,213   | 102,213     | 80,298     | 0           | 11,915 | 88.3         |
| 합계       | 3,337,774 | 3,385,352 | 3,667,969   | 3,637,214  | 1,217       | 29,538 | 99.2         |

자료: 법무부

#### 다. 기금 결산

2017회계연도 법무부 소관 기금의 수정 수입계획액은 1,018억 6,900만원이며, 1,014억 8,5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99.7%인 1,012억 700만원을 수납하고 2억 7,800만원을 미수납하였다.

[2017회계연도 법무부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 구분        | 수입계획    |         | 계획현액    | 징수<br>결정액(A) | 수납액<br>(B) | 미수납액 | 불납<br>결손액 | 수납률<br>(B/A) |
|-----------|---------|---------|---------|--------------|------------|------|-----------|--------------|
|           | 당초      | 수정      |         |              |            |      |           |              |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 101,869 | 101,869 | 101,869 | 101,485      | 101,207    | 278  | 0         | 99.7         |

자료: 법무부

2017회계연도 법무부 소관 기금의 수정 지출계획액은 1,018억 6,900만원이며, 이 중 99.3%인 1,012억 700만원을 지출하고 9억 6,8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2017회계연도 법무부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 구분        | 지출계획    |         | 계획<br>현액(A) | 지출액<br>(B) | 다음연도<br>이월액 | 불용액 | 집행률<br>(B/A) |
|-----------|---------|---------|-------------|------------|-------------|-----|--------------|
|           | 당초      | 수정      |             |            |             |     |              |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 101,869 | 101,869 | 101,869     | 101,207    | 0           | 968 | 99.3         |

자료: 법무부

## 라. 재무 결산

2017회계연도 말 현재 법무부의 자산은 9조 5,926억 100만원, 부채는 2,724억 2,100만원으로 순자산은 9조 3,201억 8,000만원이다.

자산은 전기 대비 3,650억 8,500만원(4.0%) 증가한 것으로 일반유형자산 9조 3,631억 7,300만원, 유동자산 1,231억 3,200만원, 무형자산 584억 6,400만원 등으로 구성된다. 이는 국유재산 재평가 등에 따른 일반유형자산 3,400억 8,400만원 증가, 교도작업특별회계 정부내단기대여금 증가 등에 따른 유동자산 326억 2,900만원 증가 등에 기인한다.

부채는 전기 대비 392억 200만원(12.6%) 감소한 것으로 장기충당부채 1,507억 3,600만원, 유동부채 969억 2,900만원, 장기차입부채 247억 5,6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소송충당부채 1,185억 감소 등에 따른 장기충당부채 1,132억 3,600만원 감소, 국가배상금 미지급금 672억 증가 등에 따른 유동부채 694억 1,700만원 증가 등에 기인한다.

[2017회계연도 법무부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17<br>회계연도 | 2016<br>회계연도 | 전년도 대비 증감 |       |
|--------------|--------------|--------------|-----------|-------|
|              |              |              | 금 액       | 비 율   |
| 자 산          | 9,592,601    | 9,227,516    | 365,085   | 4.0   |
| Ⅰ. 유동자산      | 123,132      | 90,503       | 32,629    | 36.1  |
| Ⅱ. 투자자산      | 12,000       | 22,855       | △10,855   | △47.5 |
| Ⅲ. 일반유형자산    | 9,363,173    | 9,023,089    | 340,084   | 3.8   |
| Ⅳ. 무형자산      | 58,464       | 61,985       | △3,521    | △5.7  |
| Ⅴ. 기타비유동자산   | 35,832       | 29,084       | 6,748     | 23.2  |
| 부 채          | 272,421      | 311,623      | △39,202   | △12.6 |
| Ⅰ. 유동부채      | 96,929       | 27,512       | 69,417    | 252.3 |
| Ⅱ. 장기차입부채    | 24,756       | 20,139       | 4,617     | 22.9  |
| Ⅲ. 장기충당부채    | 150,736      | 263,972      | △113,236  | △42.9 |
| 순 자 산        | 9,320,180    | 8,915,893    | 404,287   | 4.5   |
| Ⅰ. 기본순자산     | 5,685,180    | 5,685,180    | 0         | 0     |
| Ⅱ. 적립금 및 양여금 | 504,664      | 278,856      | 225,808   | 81.0  |
| Ⅲ. 순자산 조정    | 3,130,336    | 2,951,857    | 178,479   | 6.0   |

자료: 법무부

법무부는 2017년도 재정운영결과 재정지출(비용)이 재정수입(수익)을 초과하여 순비용이 1조 3,819억 2,900만원 발생하였다. 비용은 프로그램총원가 1조 4,484억 3,500만원, 관리운영비 2조 5,313억 2,500만원, 비배분비용 396억 7,500만원으로 구성되며, 수익은 프로그램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665억 600만원, 비배분수익 2,050억 9,600만원으로 구성된다.

재정운영순원가(프로그램순원가 + 관리운영비 + 비배분비용 - 비배분수익)는 전년도 대비 2,509억 6,500만원(7.2%) 증가한 3조 7,478억 3,300만원이며, 이는 프로그램순원가가 전년도 대비 2,552억 3,100만원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

총 9개의 프로그램 중 프로그램순원가가 큰 프로그램은 법무활동프로그램(4,380억 4,500만원)과 교정활동프로그램(3,045억 8,2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관리운영비는 인건비 2조 796억 8,200만원과 경비 4,516억 4,3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배분비용은 평가손실 57억 6,900만원과 기타비용 310억 8,000만원, 비배분수익은 기타수익 1,803억 2,000만원과 자산처분이익 170억 8,0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7회계연도 법무부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17<br>회계연도 | 2016<br>회계연도 | 전년도 대비 증감 |       |
|-------------------------|--------------|--------------|-----------|-------|
|                         |              |              | 금액        | 비율    |
| I. 프로그램순원가(가-나)         | 1,381,929    | 1,126,698    | 255,231   | 22.7  |
| 가. 프로그램 총원가             | 1,448,435    | 1,188,036    | 260,399   | 21.9  |
| 나. 프로그램 수익              | 66,506       | 61,338       | 5,168     | 8.4   |
| II. 관리운영비               | 2,531,325    | 2,386,658    | 144,667   | 6.1   |
| III. 비배분비용              | 39,675       | 72,236       | △32,561   | △45.1 |
| IV. 비배분수익               | 205,096      | 88,724       | 116,372   | 131.2 |
| V. 재정운영순원가(I+II+III-IV) | 3,747,833    | 3,496,868    | 250,965   | 7.2   |
| VI. 비교환수익 등             | 0            | 0            | 0         | 0     |
| VII. 재정운영결과(V-VI)       | 3,747,833    | 3,496,868    | 250,965   | 7.2   |

자료: 법무부

법무부의 2017년도 기초순자산은 8조 9,158억 9,300만원이고, 기말순자산은 9조 3,201억 8,000만원으로 기초 대비 4,042억 8,700만원(4.5%) 증가하였는데, 이는 회계연도 중에 순자산 차감항목인 재정운영결과는 전기 대비 2,509억 6,500만원 증가, 순자산 가산항목인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이 전기 대비 4,541억 4,800만원 증가, 조정항목이 전기 대비 2,749억 9,300만원으로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2017회계연도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국고 수입 등 재원의 조달 5조 5,697억 5,500만원과 국고이전지출 등 재원의 이전 △1조 5,961억 1,400만원으로 구성되며, 조정항목은 자산재평가이익 1,784억 7,900만원으로 구성된다.

[2017회계연도 법무부 순자산변동표 요약]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17<br>회계연도 | 2016<br>회계연도 | 전년도 대비 증감 |       |
|-----------------------|--------------|--------------|-----------|-------|
|                       |              |              | 금액        | 비율    |
| I. 기초순자산              | 8,915,893    | 8,439,796    | 476,097   | 5.6   |
| II. 재정운영결과            | 3,747,833    | 3,496,868    | 250,965   | 7.2   |
| III. 재원의 조달 및 이전      | 3,973,641    | 3,519,493    | 454,148   | 12.9  |
| IV. 조정항목              | 178,479      | 453,472      | △274,993  | △60.6 |
| V. 기말순자산(I-II+III+IV) | 9,320,180    | 8,915,893    | 404,287   | 4.5   |

자료: 법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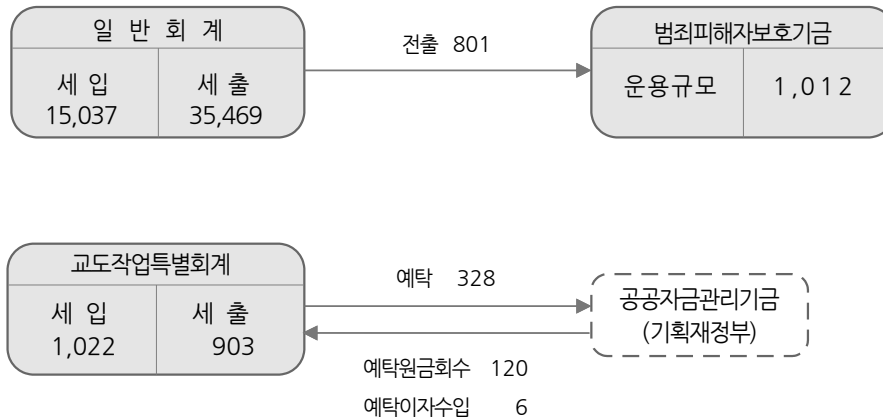
## 마. 재정 구조

2017회계연도 법무부의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은 다음과 같다.

회계·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 범죄피해자보호기금으로 801억 1,000만원이 전출되었다. 그리고 교도작업특별회계는 공자기금으로 327억 8,700만원을 예탁하였고, 공자기금으로부터 예탁원금 회수 120억원, 예탁이자수입 6억 2,200만원을 받았다.

[2017회계연도 법무부 소관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

(단위: 억원)



주: 총계 결산 기준  
자료: 법무부

법무부의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된 사업으로 ①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업, ② 안전비리 등 민관유착비리사범 단속 사업, ③ 국민편익증진 법제정비 사업 등이 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업은 최초 사업 시작임을 고려 인력 및 예산 등의 적정 편성규모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법제몽활동비 4,900만원이 감액(25억 4,300만원→24억 9,400만원)되었고, 안전비리 등 민관유착비리사범 단속 사업은 방위사업비리 합동조사단의 조직 축소 등에 따라 9억 6,800만원(101억 8,500만원→92억 1,700만원) 감액되었다. 국민편익증진법제정비 사업은 청년법제포럼이 법제처의 유사한 사업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 2,000만원 감액(13억 1,000만원→12억 9,000만원)되었다.

국회 심사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된 사업으로는 ① 교정시설 수용관리 및 공공요금 사업, ② 검찰청 시설운영 사업 등이 있다.

교정시설수용관리 및 공공요금 사업은 수용인원 증가에 따른 급식비·피복비 등 수용관리 비용 및 공공요금 99억 2,000만원이 증액(1,793억 2,000만원→1,892억 4,000만원)되었고, 검찰청 시설운영 사업은 검찰청사 청소용역근로자의 최저임금 보장 등을 위하여 18억 8,600만원이 증액(495억 8,100만원→514억 6,700만원)되었다<sup>1)</sup>.

국회심사 과정에서 부대의견이 채택된 사업으로 변호사제도의 선진화 사업 등이 있다. 변호사제도의 선진화 사업은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연수 비용의 자부담율을 매년 25%p씩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여 2020년부터는 실무연수 비용을 중단할 것” 이 부대의견으로 채택되었다<sup>2)</sup>.

1) 법제사법위원회, 「2017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16.10.  
국회,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16.12.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업으로 ① 교정시설 장비운용 및 현대화 사업, ② 갯생보호활동 사업 등이 있다. 교정시설장비운용 및 현대화 사업은 교정기관 내의 실내 조명을 LED로 교체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매립형 등기구 설치 등으로 389억 1,200만원이 증액(486억 3,100만원 → 875억 4,300만원)되었다. 갯생보호활동 사업은 출소자 등의 취업지원 활동 강화를 위해 9억 6,500만원이 증액(272억 1,800만원→281억 8,300만원)되었다.

---

2) 국회,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16.12.

법무부는 ① 대국민 법률서비스 제공 확대, ② 정신질환 범죄자 관리 강화, ③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 등을 통한 반듯한 사회, 행복한 국민 실현을 2017년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예산을 집행하였다.

그러나 2017회계연도 법무부 소관 결산에 대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첫째, 국가배상금 및 형사보상금 사업 예산, 교정시설 수용관리 및 공공요금 사업의 공공요금 및 제세, 구료비 예산은 연례적으로 부족하게 편성되어 과도한 이·전용 또는 예비비 편성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향후 적정 예산 편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범죄신고자 보상금, 형집행 우수기관·유공자 표창 포상금, 교정본부의 각종 포상금 등의 법령상 근거가 미약한 측면이 있으므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검찰청 청사관리용역 근로자에 대한 법무부의 임금 지급액은 최저임금과 큰 차이가 없는 수준으로, 시중 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부합하지 않아 향후 동 지침의 준수에 필요한 적정 수준의 예산을 편성·집행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 II

## 주요 현안 분석

### 1

### 부적절한 예비비 편성 및 적정 예산 편성 필요

#### 1-1. 국가배상금의 적정 예산 편성 및 미지급금 최소화 노력 필요

##### 가. 현 황

국가배상금 지급<sup>1)</sup> 사업은 공무원의 불법행위나 공공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국가 배상금 지급을 위한 것으로, 2017년도 예산현액 3,547억 5,900만원 중 집행액은 3,547억 5,800만원이고 100만원이 불용되었다.

[2017회계연도 국가배상금 지급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예산액     |    | 전년도<br>이월액 | 이·전용<br>등 | 예비비     | 예산현액    | 집행액     | 다음연도<br>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 |            |           |         |         |         |             |     |
| 국가배상금<br>지급 | 100,000 | 0  | 0          | 4,759     | 250,000 | 354,759 | 354,758 | 0           | 1   |

자료: 법무부

##### 나. 분석의견

국가배상금 지급 사업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첫째, 국가배상금 예산은 연례적으로 부족하게 편성되어 과도한 이·전용 및 예비비 편성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향후 국가배상금의 적정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신봉진 예산분석관(bjshin@assembly.go.kr, 788-4642)

1) 코드명: 일반회계 1031-301

동 사업은 국가배상금과 지연이자, 국가배상사건에 관한 소송비용 등을 지출하는 사업인데, 매년 예산액이 부족하여 이·전용을 통한 증액과 예비비 편성에 의해 사업비가 충당되고 있다.

2017년의 경우 47억 5,900만원이 이·전용으로 증액되고, 당초 예산액 1,000억원의 250%에 해당되는 2,500억원이 예비비로 증액되는 등 당초 예산액 대비 254.8%인 2,547억 5,900만원이 이·전용 및 예비비로 충당되어 집행되었다.

#### [최근 5년간 국가배상금 지급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 예산액     | 이전용 등  | 예비비     | 예산현액    | 집행액     | 불용액 |
|------------------|---------|--------|---------|---------|---------|-----|
| 2013             | 20,000  | 15     | 41,790  | 61,805  | 61,600  | 205 |
| 2014             | 23,600  | 49     | 181,414 | 205,063 | 205,062 | 1   |
| 2015             | 40,000  | 434    | 260,788 | 301,222 | 301,222 | 0   |
| 2016             | 55,000  | 23,610 | 158,005 | 236,615 | 236,615 | 0   |
| 2017             | 100,000 | 4,759  | 250,000 | 354,759 | 354,758 | 1   |
| 2018<br>(7월말 기준) | 200,000 | 0      | 218,454 | 418,454 | 641,068 | 0   |

자료: 법무부

연례적인 이·전용 증액 및 예비비 편성에 대한 지속적인 외부 지적에 따라 법무부는 동 사업의 2018년도 예산을 전년도에 비해 100% 증가한 2,000억원으로 편성하였다. 그러나 “구로동 일대 농지에 대한 국가의 수용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 확정(14바32090 등 7건, 2017.11.)에 따라 법무부는 2018년 7월 말 기준 2,184억 5,400만원의 목적예비비를 편성<sup>2)</sup>하여 6,410억 6,8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였고, 동일한 사건으로 총 16건(1심 8건, 2심 5건, 3심 3건)이 계류 중이며, 검찰의 항소 포기 등으로 판결 확정 시 2,041억원의 배상금 지급 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법무부는 국가배상금은 지급시기 및 금액이 법원 판결로 정해지기 때문에 정확한 시기나 금액 예측이 곤란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배상금 예산이 지속적으로 부족하여 연례적으로 이·전용 증액 및 예비비 편성이 이루어지는 것은 국

2) 2018년도 예산총칙 변경(2017.12.6.)으로 구로 분배농지 손해배상사건 관련 국가배상금에 대한 목적예비비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가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배상금 지급 지연으로 소송 당사자인 국민의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법무부는 향후 국가배상금의 면밀한 추계를 통해 적정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전년도 국가배상금 미지급금을 당해 연도 예산으로 충당하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으므로, 법무부는 미지급금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국가배상금 지급 사업의 집행액에는 국가배상금 원금뿐만 아니라 지연이자<sup>3)</sup>, 국가배상사건 소송비용 확정액<sup>4)</sup>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최근 국가배상금 예산액 부족에 따른 미지급금 증가로 지연이자도 증가하고 있다.

구로농지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예측이 곤란한 지연이자 발생<sup>5)</sup>한 2017년을 제외하고, 2013~2016년의 경우 지연이자 집행액이 원금 집행액의 16.5~26.9%에 달하고 있다.

---

3) 국가배상금 지연이자는 「민법」 제379조에 따른 5%의 지연이율(불법행위 성립일로부터 발생)과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연 15%의 법정이율(원고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 소장부분 송달일로부터 발생)의 적용을 받는다.

4) 국가배상금 지급 관련 소송에서 국가의 패소비용을 의미한다.

5) 구로 농지사건은 정부가 1960년대 ‘구로수출산업공업단지(구로공단)’ 조성 목적으로 서울 구로구 구로동 일대 30만평의 농지를 수용한 사건으로, 주민들은 정부를 상대로 토지반환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대부분 승소하였으나 정부의 부당한 소송개입 등으로 인해 주민들이 소송을 포기하였고, 2008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 결과 ‘국가의 공권력 부당 남용 사건’으로 나타나 피해자 유족들이 재심을 청구하였다. 이에 따른 항소심 판결일이 2013~2016년으로, 대법원 판결선고일(2017. 11~12)까지 지연기간은 사건별 1년 5개월~4년 6개월이다.

[최근 5년간 지연이자 규모]

(단위: 백만원, %)

| 연 도  | 원 금(A)  | 지연이자(B)               | 비중(B/A) |
|------|---------|-----------------------|---------|
| 2013 | 47,946  | 9,170                 | 19.1    |
| 2014 | 170,647 | 28,224                | 16.5    |
| 2015 | 237,862 | 55,753                | 23.4    |
| 2016 | 180,227 | 48,468                | 26.9    |
| 2017 | 179,527 | 169,557 <sup>1)</sup> | 94.4    |

주: 1) 2017년 지연이자 규모가 타 연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은 구로수출산업공업단지 분배농지 강탈사건 관련 대법원 판결(2017.11.)로 인한 지연이자(1,551억 6,300만원) 발생에 기인한 것임  
자료: 법무부

법무부는 전년도 미지급금을 당해 연도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은 국가재정법상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반하는 측면이 있고, 당해 연도 예산을 더욱 부족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며, 이에 따라 전년도 미지급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발생<sup>6)</sup>시킨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연말에 배상금 판결이 확정되어 지급신청이 이루어지는 경우 예산 부족으로 부득이하게 미지급금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경우까지 예측하여 국가배상금 예산을 편성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법무부는 향후 집행 평균액 등을 고려한 적정예산 편성 등을 통해 미지급금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6) 피해자가 배상금 수령최고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지급청구를 하지 않는 ‘지급 미청구사건’의 경우 미지급금에 대한 지연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최근 5년간 국가배상금 전년도 미지급금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연도                                             | 2013   |    | 2014   |     | 2015   |    | 2016  |    | 2017   |    |
|------------------------------------------------|--------|----|--------|-----|--------|----|-------|----|--------|----|
| 구분                                             | 미지급금   | 건수 | 미지급금   | 건수  | 미지급금   | 건수 | 미지급금  | 건수 | 미지급금   | 건수 |
| 총계                                             | 11,808 | 26 | 79,331 | 139 | 41,228 | 71 | 7,900 | 77 | 74,792 | 28 |
| 연말(12월말)<br>배상금 판결<br>확정 및 지급<br>신청 미지급<br>발생분 | 237    | 3  | 4,975  | 12  | 16,004 | 12 | 483   | 4  | 33,219 | 9  |

자료: 법무부

## 1-2. 형사보상금의 적정 예산 편성 필요

### 가. 현 황

형사보상 사업은 법원의 무죄판결 또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구속 피고인·피의자에게 형사보상금을 지급하고, 무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었던 자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자가 공판 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데 소요된 경비(무죄비용 보상금)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7년도 형사보상 예산은 275억원이고, 이·전용액 22억 9,700만원과 예비비 62억 4,500만원을 더한 예산현액 360억 4,200만원 중 집행액은 360억 3,900만원이다.

7) 코드명: 일반회계 1337-302

[최근 5년간 형사보상금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 연 도  | 예산액(A) | 이·전용 등 | 예비비    | 예산현액   | 집행액(B) | 집행률(B/A) |
|------|--------|--------|--------|--------|--------|----------|
| 2013 | 11,000 | 0      | 46,672 | 57,672 | 57,672 | 524.3    |
| 2014 | 14,000 | 0      | 74,185 | 88,185 | 88,166 | 629.8    |
| 2015 | 20,000 | 5,200  | 27,775 | 52,975 | 52,975 | 264.9    |
| 2016 | 25,000 | 940    | 5,829  | 31,769 | 31,769 | 127.1    |
| 2017 | 27,500 | 2,297  | 6,245  | 36,042 | 36,039 | 131.1    |

자료: 법무부

## 나. 분석의견

형사보상 사업과 관련하여 국회는 연례적인 예산 과소 편성 및 예비비 사용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하여 왔고,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으로 법정 지급기한 내 형사보상금 미지급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므로, 법무부는 향후 적정 예산 편성을 통해 형사보상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필요가 있다.

형사보상 사업 예산의 최근 5년간 집행 현황을 보면, 예산이 매년 증액 편성되고 있으나 형사보상 집행 소요액이 당초 편성된 예산액보다 많아 부족분을 이·전용액 및 예비비<sup>8)</sup>로 충당하고 있다.

법무부는 형사보상 예산이 매년 예산액보다 초과집행되는 이유에 대하여 2009년 구 「도로법」 제84조 과적차량에 대한 양벌규정 위헌결정으로 이미 벌금을 납부한 법인들이 재심을 신청하여 무죄판결을 받은 건수가 대폭 증가하였고, 과거사 정리위원회 활동(2006~2010)에 따른 재심 무죄판결로 인해 형사보상 청구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와 같은 연례적인 예산의 과소 편성 및 예비비 사용 문제는 국회 결산심사시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는데, 2018년도 예산은 전년 예산(275억원) 대비 20.7% 증액된 332억원으로, 최근 5년간(2013~2017년) 집행액의 평균인 533억원 및 2017년도 집행액 360억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는 점에서 동일한 문제가 반복될 여지가 크다고 판단된다.

8) 「국가재정법」

제22조(예비비) ① 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단서 생략)



더욱이 형사보상청구에 대한 법원의 결정기한을 6개월로 정하고, 검찰의 형사보상금 지급기한을 3개월로 명시하며, 지급기한 내 보상금 미지급시 민사법정이율<sup>9)</sup>로 계산한 지연이자 지급규정을 신설하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2018.2.28.)하여 공포·시행(2018.3.20.)되었음을 고려할 때, 법무부는 향후 지연이자의 지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형사보상금의 적기 집행을 위한 예산 확보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연례적인 국가배상금 예산부족으로 인한 이·전용 증액, 예비비 사용 과다는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형사보상금 지급 지연으로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므로, 법무부는 향후 형사보상금의 면밀한 추계를 통해 적정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 1-3. 교정기관 공공요금 및 구료비의 연례적 부족

#### 가. 현 황

법무부는 교도소 수용자의 급식, 피복, 의료비 등 수용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정시설 수용관리 및 공공요금<sup>10)</sup>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017년 동 사업 예산액은 1,892억 4,000만원이었으나 이·전용액 48억 3,000만원 및 예비비 179억 3,900만원을 더한 예산현액 2,120억 900만원 중 2,119억 7,000만원을 집행하고 3,900만원을 불용하였다.

---

9)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10) 코드명: 일반회계 1532-300

[연도별 교정시설 수용관리 및 공공요금 사업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 도  | 예산액     |         | 전년도<br>이월액 | 이·전용<br>등 | 예비비    | 예산현액    | 집행액     | 다음연도<br>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      |            |           |        |         |         |             |     |
| 2015 | 160,747 | 160,747 | 0          | 21,752    | 3,464  | 185,963 | 185,934 | 0           | 29  |
| 2016 | 169,229 | 169,229 | 0          | 12,255    | 11,739 | 193,223 | 193,216 | 0           | 7   |
| 2017 | 189,240 | 189,240 | 0          | 4,830     | 17,939 | 212,009 | 211,970 | 0           | 39  |

자료: 법무부

## 나. 분석의견

교도소 수용인원 증가에 따른 공공요금 및 제세, 구료비 예산 부족 문제가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향후 적정 예산 편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수용인원 추세를 볼 때 이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지출이므로 예비비 집행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

동 사업은 매년 이·전용 증액 과다, 예비비 사용 등 예산 부족 문제를 나타내고 있는데, 2017년에도 동일한 문제가 시정되지 않고 있다. 동 사업 예산 중 특히 교정시설 운영 및 수용자 관리에 소요되는 전기료, 상·하수도요금, 물이용부담금 등을 납부하기 위한 ‘공공요금 및 제세(210-02목)’와 수용자의 급량비로 사용되는 ‘구료비(320-06목)’ 예산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다.

2017년 ‘공공요금 및 제세’는 당초 예산액이 753억 7,600만원인데 집행액은 911억 9,000만원이고, ‘구료비’는 당초 예산액이 1,034억 2,600만원인데 집행액은 1,101억 3,100만원이다.

[2017년 교정시설 수용관리 및 공공요금 사업 중 공공요금 및 제세, 구료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 도                  | 예산액     |         | 전년도<br>이월액 | 이·전용<br>등 | 예비비    | 예산현액    | 집행액     | 다음연도<br>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      |            |           |        |         |         |             |     |
| 공공요금및제세<br>(210-02목) | 75,376  | 75,376  | 0          | 4,819     | 10,996 | 91,191  | 91,190  | 0           | 1   |
| 구료비<br>(320-06목)     | 103,426 | 103,426 | 0          | 0         | 6,705  | 110,131 | 110,131 | 0           | 0   |

자료: 법무부

법무부는 최근 수년 간 교정기관 수용인원이 급증하여 전기, 상·하수도 등 사용량과 수용자 급량비 소요가 증가한 반면 예산편성은 증가하는 수용인원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편성이 되어 공공요금 및 구료비 부족이 발생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교정기관의 공공요금 및 구료비 부족이 연례적으로 반복되어 왔음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법무부의 설명은 예산 편성 시 최근 수년 간 발생해 온 교정시설 수용인원 급증 현상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계획수립이 부족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국가재정법」 제22조<sup>11)</sup>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비비는 헌법상 ‘예산의 사전의결원칙’에 대한 예외이므로 예산의 편성이나 심의 당시 예측할 수 없었고(예측불가능성), 다음 연도 예산 편성이나 심의를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시간이 긴박하며(시급성), 확정된 예산으로 충당할 수 없는 불가피한 초과지출에 충당(불가피성)하기 위한 재원으로서, 이미 확보된 예산을 활용한 후 부족분에 대하여 사용(보충성)하는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2017년도 예산안 요구 시점인 2016년 당시 교정시설의 연중 일평균 수용인원이 56,000명을 상회하였는데도 예산편성 기준인원을 53,892명으로 하여 본예산을 편성<sup>12)13)</sup>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동 사업에 대한 예비비 집행은

11) 「국가재정법」

제22조(예비비) ①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예산총칙 등에 따라 미리 사용목적을 지정해 놓은 예비비는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예비비 신청요건인 ‘예측불가능성’을 위배하였다는 점에서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향후 법무부는 동 사업 예산 편성 시 수용인원에 대한 합리적인 예측을 통해 본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12) 최근 5년간 교정시설 연중 일평균수용인원 및 예산편성인원과의 격차는 다음과 같다.

(단위: 명, %)

| 연 도  | 일평균수용인원(A) | 예산편성인원(B) | 격차(B-A) | 수용정원(C) | 수용률(A/C) |
|------|------------|-----------|---------|---------|----------|
| 2013 | 47,924     | 48,000    | 76      | 45,690  | 104.9    |
| 2014 | 50,128     | 48,000    | △2,128  | 46,430  | 108      |
| 2015 | 53,892     | 48,000    | △5,892  | 46,600  | 115.6    |
| 2016 | 56,495     | 49,500    | △6,995  | 46,600  | 121.2    |
| 2017 | 57,298     | 53,892    | △3,406  | 47,820  | 119.8    |

자료: 법무부

13) 법무부는 2018년도 수용관리예산 편성기준 수용인원을 2017년 53,892명보다 상향조정한 56,495명을 기준으로 편성하여 2018년 3월 기준 일평균수용인원(54,870명)과의 격차를 해소하였으나, 수용정원(47,820명)에 비해 과밀 수용되고 있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 2-1. 범죄신고자 보상금의 명확한 법적근거 마련 및 집행실적 제고 필요

### 가. 현 황

국민생활침해사범단속<sup>1)</sup> 사업은 보이스피싱, 사행성게임장, 불법사금융 등 국민 생활침해사범에 대한 수사체계 구축 및 민생치안 확립을 통하여 안정된 서민생활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 예산현액 134억 9,500만원 중 집행액은 130억 1,800만원이고 4억 7,600만원이 불용되었다.

법무부는 범죄 신고 및 제보를 활성화하여 신속한 사건 실체 규명 및 피해 회복을 도모하고자 2015년 국민생활침해사범단속 사업 내에 ‘범죄신고자 보상금’을 신설하였다.

범죄신고자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피의자의 죄질, 재범우려,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공익상의 필요성이 현저한 중요사건의 피의자 검거공로자(검찰·경찰 공무원 등 법령상 신고의무자 제외)’이며, 법무부는 ① 범죄의 죄질과 중요도, ② 검거공로자 신고내용의 정확성, ③ 검거공로자가 직접 기여한 공로, ④ 예산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 지급을 결정한다고 설명하였다.

[2017회계연도 국민생활침해사범단속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예산액    |        | 전년도<br>이월액 | 이·전<br>용 등 | 예비비 | 예산현<br>액 | 집행액    | 다음연도<br>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     |            |            |     |          |        |             |     |
| 국민생활침해<br>사범단속 | 14,287 | 14,287 | 0          | △792       | 0   | 13,495   | 13,018 | 0           | 476 |

자료: 법무부

신봉진 예산분석관(bjshin@assembly.go.kr, 788-4642)

1) 코드명: 일반회계 1335-303

## 나. 분석의견

법무부는 범죄신고자 보상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범죄신고자 보상금의 법령상 근거가 미약한 측면이 있으므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보상금은 ① 국가의 적법한 사업수행이나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타인에게 손해나 손실을 가했을 경우 각종 법률에 따라 지급하는 경비와 ② 법령에 의하여 반대급부 또는 채권채무의 원인행위 없이 일방적으로 민간인에게 급여하는 보상금, 장려금 및 상금을 지칭한다.

각종 보상금에 대한 공통지침으로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 “보상금에 대한 지급근거 및 지급한도는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하며, 지급방법 및 절차·금액 등은 하위 규정(행정규칙)으로 구체화할 수 있다”라고 규정<sup>2)</sup>하고 있다. 특히 집행지침은 국민의 신고에 대한 각종 보상금은 반드시 법령에 근거를 두고, 훈령, 지침 등에 따라 지급하는 등 법령상 근거가 미약한 경우에는 법령상 근거를 명확히 하도록 하고 있다.<sup>3)</sup>

국민생활침해사범단속 사업의 범죄신고자 보상금의 법적 근거로 법무부는 「중요사건 피의자에 대한 검거 공로자 보상 규정」을 들고 있으나, 이는 행정규칙인 대검찰청 훈령이므로 법적 근거가 미약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법무부는 집행지침에 따라 범죄신고자 보상금의 지급근거를 행정규칙이 아닌 법령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범죄신고자 보상금은 2015년 신설 이후 집행실적이 전무하므로 집행실적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범죄신고자 보상금이 신설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2,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집행실적은 전무한 실정이다.

2) 기획재정부,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2017.1, p.189.

3) 기획재정부,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2017.1, pp.189~190.

[범죄신고자 보상금 예산 편성 및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 2015년 |     |     | 2016년 |     |     | 2017년 |     |     |
|-------|-----|-----|-------|-----|-----|-------|-----|-----|
| 예산액   | 집행액 | 집행률 | 예산액   | 집행액 | 집행률 | 예산액   | 집행액 | 집행률 |
| 20    | 0   | 0   | 20    | 0   | 0   | 20    | 0   | 0   |

자료: 법무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법무부는 이에 대해 범죄신고자 보상금 제도에 대한 홍보 부족 등으로 보상금 소요가 없어 집행실적이 부진하였다는 입장이다.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 “집행이 부진한 신고포상금은 제도개선을 통해 집행실적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는 점<sup>4)</sup>을 고려할 때, 법무부는 향후 범죄신고자 보상금 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동 제도에 대한 홍보 활동을 강화하는 등 집행실적 제고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2-2. 형집행 우수기관·유공자 표창 포상금의 법적근거 마련 및 적정 예산 편성 필요

### 가. 현 황

형집행 및 범죄수익환수<sup>5)</sup> 사업은 국가형벌권의 엄정한 집행과 몰수(추징)보전 절차를 통한 범죄수익 환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 예산현액 13억 8,200만원 중 집행액은 13억 7,800만원이고 500만원이 불용되었다.

법무부는 동 사업에서 형집행 우수기관·유공자 표창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형집행 우수기관 포상금은 재산형 집행 우수기관 포상금과 자유형 집행 우수기관 포상금으로 구분되는데, 재산형 집행 우수기관 포상금은 6개 그룹(벌과금 실 조정 건수에 따라 구분)별 재산형 집행실적 1위 검찰청을 대상으로 100~50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것이며, 자유형 집행 우수기관 포상금은 자유형미집행자 검거 집행률, 집

4) 기획재정부,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2017.1, p.190.

5) 코드명: 일반회계 1831-401

행인원, 국외도피검거 가점, 형시효완성 감점 등을 기준으로 매 반기별로 4개 그룹(매 반기별 자유형미집행자 발생인원에 따라 구분)별 상위 3개 검찰청(총 12개)을 우수청으로 선정하여 그룹별·순위별로 50~20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것이다. 형집행 유공자 표창 포상금은 일선 검찰청 정보보고를 기준으로 우수사례를 선정(국외도피 자유형미집행자 검거, 새로운 추적 기법 이용, 끈질긴 추적 검거 등)하여 자유형미집행자 검거팀 수사관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형집행 및 범죄수익환수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예산액   |       | 전년도<br>이월액 | 이·전<br>용 등 | 예비비 | 예산현액  | 집행액   | 다음연도<br>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    |            |            |     |       |       |             |     |
| 형집행 및<br>범죄수익환수 | 1,485 | 1,485 | 0          | △103       | 0   | 1,382 | 1,378 | 0           | 5   |

자료: 법무부

## 나. 분석의견

법무부는 ‘형집행 우수기관 포상금’ 및 ‘형집행 유공자 표창 포상금’ 예산을 편성·집행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법무부는 ‘형집행 우수기관 포상금’ 및 ‘형집행 유공자 표창 포상금’의 지급근거 및 지급한도를 법령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보상금에 대한 지급근거 및 지급한도를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하도록<sup>6)</sup> 하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형집행 우수기관 포상금’ 및 ‘형집행 유공자 표창 포상금’을 집행하면서 법령상 근거 및 지급한도를 마련하지 않고 있으므로, 집행지침에 따라 ‘형집행 우수기관 포상금’ 및 ‘형집행 유공자 표창 포상금’에 대한 지급근거 및 지급한도를 법령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6) 기획재정부,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2017.1, p.189.



둘째, 법무부는 ‘형집행 우수기관 포상금’ 및 ‘형집행 유공자 표창 포상금’의 적정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법무부는 형집행 실적 제고를 위하여 ‘형집행 우수기관 포상금’ 및 ‘형집행 유공자 표창 포상금’으로 매년 각각 3,000만원, 1,000만원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는데, 2017년에는 ‘형집행 우수기관 포상금’으로 3,800만원(재산형 집행 우수기관 6개 검찰청, 자유형 집행 우수기관 19개 검찰청)과 ‘형집행 유공자 표창 포상금’으로 200만원(집행 실적 우수직원 20명)을 집행하였다.

한편 2015~2017년 동안 형집행 우수기관 포상금 예산은 초과집행(집행률 126.7%)된 반면 형집행 유공자 표창 포상금은 과소집행(집행률 20%)되었는데,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예산의 과다·과소 집행을 방지하기 위해 법무부는 향후 포상금 예산을 적정 수준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형집행 우수기관 포상금 및 형집행 유공자 표창 포상금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 구 분   | 형집행 우수기관 포상금 |     |       | 형집행 유공자 표창 포상금 |     |      |
|-------|--------------|-----|-------|----------------|-----|------|
|       | 예산액          | 집행액 | 집행률   | 예산액            | 집행액 | 집행률  |
| 2015년 | 30           | 39  | 126.7 | 10             | 2   | 20.0 |
| 2016년 | 30           | 38  | 126.7 | 10             | 2   | 20.0 |
| 2017년 | 30           | 38  | 126.7 | 10             | 2   | 20.0 |

자료: 법무부

[형집행 우수기관 포상금 및 형집행 유공자 표창 포상금 지급내역]

(단위: 개, 백만원, 명)

| 구 분                |                    |       | 2015년 | 2016년 | 2017년 |
|--------------------|--------------------|-------|-------|-------|-------|
| 형집행<br>우수기관<br>포상금 | 재산형 집행<br>우수기관 포상금 | 대상 기관 | 6     | 6     | 6     |
|                    |                    | 지급 금액 | 15    | 15    | 15    |
|                    | 자유형 집행<br>우수기관 포상금 | 대상 기관 | 19    | 19    | 19    |
|                    |                    | 지급 금액 | 24    | 23    | 23    |
| 형집행 유공자 표창 포상금     |                    | 지급 인원 | 15    | 16    | 20    |
|                    |                    | 지급 금액 | 2     | 2     | 2     |

자료: 법무부

## 2-3. 교정본부 각종 포상금의 명확한 법적근거 마련 필요

### 가. 현 황

교정본부는 교도작업특별회계의 교도작업<sup>7)</sup> 사업, 직업훈련<sup>8)</sup> 사업, 교특회계관리기본경비<sup>9)</sup> 사업에서 교도작업 생산증대 및 교도작업 제안 포상금 등 각종 포상금(310-03목)을 지급하고 있다. 2017년도 포상금 예산 2억 3,201만원 중 집행액은 2억 2,751만원이고 450만원이 불용되었다.

법무부에 따르면 ‘교도작업 생산증대 포상금’은 교정기관을 대상으로 직원 1인당 생산실적(전년대비) 순위 및 정역집행률 향상 등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교도작업 제안 포상금’은 교정직원 및 수형자를 대상으로 물자 및 예산절감에 관한 사항, 품질개선에 관한 사항 등과 관련한 제안 중 선발하여 지급하는 것이다. ‘직업훈련생 우수 포상금’은 직업훈련 담당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 지도 실적 및 직업훈련관련 개인역량 강화 등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교도작업 경영평가 포상금’은 교정기관, 교정직원, 수형자 대상 전년 대비 생산실적 증감율, 생산실적 등을 기준으로, ‘교정작품전시회 우수작품 포상금’은 수형자 대상 교도작업(공예) 작품부문 및 문예작품 부문 우수작품을 선발하여 지급하는 것이다.

---

7) 코드명: 교도작업특별회계 1535-300

8) 코드명: 교도작업특별회계 1535-301

9) 코드명: 교도작업특별회계 7012-250

[2017회계연도 교정본부 포상금(310-03목)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포상금 명칭                            | 소관부서 | 세부사업<br>(코드)                 | 예산액 | 집행<br>액 | 지급근거                              |
|-----------------------------------|------|------------------------------|-----|---------|-----------------------------------|
| 교도작업 생산증대 및<br>교도작업 제안 포상금        | 교정본부 | 교도작업<br>(1535-300)           | 180 | 180     | 교도작업<br>운영지침 제20조<br>(예규)         |
| 직업훈련생<br>우수 포상금                   | 교정본부 | 직업훈련<br>(1535-301)           | 9   | 9       | 수형자 직업능력개발<br>훈련 운영지침<br>제32조(예규) |
| 교도작업 경영평가,<br>교정작품전시회<br>우수작품 포상금 | 교정본부 | 교특회계관리<br>기본경비<br>(7012-250) | 43  | 38.5    | 교도작업<br>운영지침 제20조<br>(예규)         |
| 합 계                               |      |                              | 232 | 227.5   | -                                 |

자료: 법무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나. 분석의견

교정본부가 지급하고 있는 각종 포상금의 법령상 근거가 미약한 측면이 있으므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보상금에 대한 지급근거 및 지급한도는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하며, 지급방법 및 절차·금액 등은 하위 규정(행정규칙)으로 구체화할 수 있다”라고 규정<sup>10)</sup>하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교도작업 생산증대 및 교도작업 제안 포상금’ 및 ‘직업훈련생 우수 포상금’, ‘교도작업 경영평가, 교정작품전시회 우수작품 포상금’ 등을 집행하면서 ‘교도작업운영지침’ 및 ‘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지침’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이는 예규이므로 법적 근거가 미약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법무부는 집행지침에 따라 교정본부가 지급하는 각종 포상금의 지급근거 및 지급한도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10) 기획재정부,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2017.1, p.189.

### III

## 개별 사업 분석

### 1

## 토지대여료 수납률 제고 노력 필요

### 가. 현 황

토지대여료<sup>1)</sup>는 국유재산인 토지를 대여하는데 따른 임대수입으로서, 2017년도 토지대여료의 세입예산액은 12억 7,7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4억 900만원이며 이 중 4억 5,700만원을 징수(예산액 대비 35.7%, 징수결정액 대비 32.4%)하고, 9억 5,300만원은 미수납되었다.

[토지대여료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목명    | 예산액   |       | 이체 등<br>증감액 | 예산<br>현액 | 징수<br>결정액 | 수납액 | 미수납액 | 불납<br>결손액 |
|-------|-------|-------|-------------|----------|-----------|-----|------|-----------|
|       | 본예산   | 추경    |             |          |           |     |      |           |
| 토지대여료 | 1,277 | 1,277 | 0           | 1,277    | 1,409     | 457 | 953  | 0         |

자료: 법무부

### 나. 분석의견

법무부의 토지대여료 수납률이 연례적으로 저조한 수준이므로, 수납률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2017년 법무부의 토지대여료 미수납액의 주요 내역은 수원지검 성남지청 이전 부지 모델하우스 설치임대료 미납액 6억 7,600만원과 대검찰청 소유 주민복지시설 동 사용료 미납액 1억 100만원이다.

신봉진 예산분석관(bjshin@assembly.go.kr, 788-4642)

1) 코드명: 일반회계 56-564

(1) 성남지청 토지대여료 미수납액 6억 7,600만원은 성남지청 이전 예정부지(성남시 구미동 190번지, 면적 3,152.87㎡)를 건본주택 설치 용도로 임대한 업체의 자금사정 악화 등에 따라 발생한 것이다.<sup>2)</sup>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청사 이전을 위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과 함께 1997년 2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90번지(32,695㎡) 소재 부지를 60억 9,057만 원에 매입하였으나, 현 성남지청 부지 인근 주민(수정구) 및 성남 시청의 반대로 이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여 청사 건립이 지연됨에 따라, 위 부지를 10개로 임의의 구획하여 2005년부터 2016년까지 구역별로 「국유재산법」에 따라 사용을 허가하고 사용료를 징수(총 76회)하여 왔다.<sup>3)</sup>

법무부는 2010년 10월 28일 용인시 성북동에서 공동주택건설 사업 중인 제니스건설(주)으로부터 위 이전 부지 중 “가”구역(4,202.47㎡)에 대한 사용허가 신청을 받아 유상사용을 허가하였다. 동 토지와 관련하여 최초 계약기간(2010.12.20~2011.12.19)의 임대료 6억 6,798만원은 선납되었으나, 계약 연장기간(2011.12.20~2012.12.19)의 임대료 6억 7,600만원이 미납되어 2018년 3월까지 장기간 미수납<sup>4)</sup>되었는데, 2017년 말 기준 임대료 미수납액 6억 7,600만원 외에 임대료 미수납에 따른 가산금<sup>5)</sup> 4억 5,311만원, 국유재산(토지)을 사용 허가 없이 사용한 데 대한 변상금<sup>6)</sup> 3억 2,958만원과 변상금 미수납에 따른 가산금 2억 2,374만원 등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다.

제니스건설(주)은 최초 계약기간 종료 약 1달 전인 2011년 11월 14일 부지 사용연장 신청을 하여 성남지청에서는 2011년 12월 16일까지 연장기간에 대한 토지대여료 6억 7,600만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사용을 허가하였으나, 이후 제니스건설은 시공업체(고려개발)의 워크아웃 개시 결정에 따른 채권단의 채권, 채무 동결 등에 기인한 자금 사정 악화로 납부 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못하였다.

2) 대법원과 법무부는 동 토지를 1/2씩 관리하고 있어, 대법원의 토지대여료도 법무부와 마찬가지로 미수납되었다.

3) 법무부에 따르면 동 토지에 대한 향후 사용계획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4) 2018년 3월 22일 미수납액 및 가산금, 변상금 전액(16억 9,496만원) 수납 완료되었다.

5) 코드명: 일반회계 58-581

6) 코드명: 일반회계 57-571

법무부는 동 토지대여료 미수납액과 관련하여 해당 업체에 대해 수차례 납부 독촉, 사용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회 개최, 채권추심<sup>7)</sup>과 채권압류<sup>8)</sup> 등 토지대여료 수납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입장이다.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sup>9)</sup>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및 제2항<sup>10)</sup>은 토지 등 국유재산 사용료는 선납하도록 하고,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허가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수익을 시작하기 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무부는 성남지청 이전 예정부지를 임대한 업체와 연장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토지대여료를 선납받아야 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법무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2011년 12월 16일로 정하였으나 업체는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를 검토하였으나 당시 채납자가 토지사용료의 납부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점, 사용허가 취소에 따른 자진 철거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 대집행 등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절차를 밟을 시 국가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하지 않았다고 설명하였다.

7) 채권추심 내역

(단위: 원)

| 추심일          | 추심금액      | 추심방법 | 비고      |
|--------------|-----------|------|---------|
| 2013. 6. 10. | 7,851,500 | 자진납부 | 철근매각 대금 |

8) 채권압류 현황

| 구분       | 압류일자                     | 압류대상                                                   |
|----------|--------------------------|--------------------------------------------------------|
| 토지       | 2013.6.10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북동 387-25외 4필지 183㎡                       |
| 자동차      | 2013.6.10                | 68가5519 베라크루즈                                          |
| 예금       | 2013.6.12                | 신한은행 등 예금계좌                                            |
| 소유권이전청구권 | 2013.9.11.<br>2013.10.28 |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및 정산금<br>(용인시 수지구 성북동 387-43외 65필지) |
| 부담금      | 2015.12.9                | 용인시 기반시설부담금                                            |

9)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의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다.

10)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사용료의 납부시기 등) ① 법 제32조제1항 및 제65조의9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허가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수익을 시작하기 전으로 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납부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2) 영등포구청에서 2008.1.1.부터 무상사용 중이던 대검찰청 소유 주민복지시설 동(문래정보문화도서관, 연 31만명 이용)이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2조제4항 및 제5항 신설로 2016.1.1.부터 유상사용으로 전환<sup>11)</sup>되었는데, 영등포구청의 행정재산 취득 계획제출로 1년간 무상사용 기간이 연장되었으나, 영등포구는 예산 문제로 취득불가 및 유상사용 수용불가 의견을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2017.1.1.부터 유상사용 전환에 따른 토지대여료 1억 100만원 및 가산금 1,265만원, 건물대여료<sup>12)</sup> 3,660만원 및 가산금 458만원 등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다.

법무부는 향후 국유재산 임대 시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따라 대여료를 선납 받아 미수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고, 미수납된 토지대여료·변상금·가산금 등 세입을 보다 효과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 11) 종전 「국유재산법 시행령」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용료 면제에 관한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2011.4.1.) 시 지방자치단체가 사용료를 면제 받으려면 해당 재산의 취득계획을 제출하여야 하고 취득계획 제출 시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동 규정에 따라 법무부는 무상사용 허가기간(2008.1.1.~2015.12.31.) 만료 후 영등포구청으로부터 취득계획을 제출받고 2016.1.1.부터 1년간 사용료를 면제하였으나, 영등포구청에서 동 재산에 대한 취득을 하지 않아 허가기간 만료(2016.12.31.) 이후 2017.1.1.부터 사용료를 부과하였다.

| 개정 전                                               | 개정(2011.4.1.) 후                                                                                                        |
|----------------------------------------------------|------------------------------------------------------------------------------------------------------------------------|
| 「국유재산법 시행령」<br>제32조(사용료의 면제) ① ~ ③ (생략)<br>< 신 설 > | 「국유재산법 시행령」<br>제32조(사용료의 면제) ① ~ ③ (종전과 같음)<br>④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받으려면 그 재산의 취득 계획을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 신 설 >                                            | ⑤ 제5항에 따라 취득 계획을 제출받은 중앙관서의 장이 사용료를 면제하려는 경우 그 사용허가 기간은 1년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

- 12) 코드명: 일반회계 51-512

## 가. 현 황

징계부과금<sup>1)2)</sup>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sup>3)</sup>에 따라 공무원의 금전·물품, 부동산, 향응 수수, 공금 횡령 및 유용 등 금품 관련 비위에 대하여 징계처분 외에 수수액, 횡령액 및 유용액 등의 5배 이내에서 부과하는 부가금이다. 2017년도 징계부과금의 세입예산액은 2억 8,3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1억 5,400만원이며 이 중 6,300만원을 징수(예산액 대비 22.2%, 징수결정액 대비 5.5%)하고, 10억 9,100만원은 미수납되었다.

신봉진 예산분석관(bjshin@assembly.go.kr, 788-4642)

1) 코드명: 일반회계 56-564

2) 회계상 과목으로는 ‘징계부과금’이나, 근거 법령상 명칭은 ‘징계부가금’이다.

3)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징계부가금) ① 제78조에 따라 공무원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다음 각 호의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한 경우
  - 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 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 다.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 마.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7회계연도 징계부과금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목명    | 예산액 |     | 이체 등<br>증감액 | 예산<br>현액 | 징수<br>결정액 | 수납액 | 미수납액  | 불납<br>결손액 |
|-------|-----|-----|-------------|----------|-----------|-----|-------|-----------|
|       | 본예산 | 추경  |             |          |           |     |       |           |
| 징계부과금 | 283 | 283 | 0           | 283      | 1,154     | 63  | 1,091 | 0         |

자료: 법무부

## 나. 분석의견

법무부의 징계부과금 수납률이 연례적으로 저조한 수준이므로, 실효성 있는 수납률 제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017년 징계부과금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5.5%로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법무부는 징계 대상자가 수형 중이거나 파면처분으로 인한 재력 부족인 경우에는 수납이 어려우며, 소송 계류 중이거나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심사 중인 경우에는 그 결과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 확정시까지 납부 연기를 하는 사례가 많은 것이 저조한 수납률의 원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징계부과금은 공무원의 금품 관련 비리를 근절·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 만큼 법무부는 수납률을 제고하여 징계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

[최근 5년간 징계부과금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 연도   | 예산액<br>(A) | 예산<br>현액 | 징수<br>결정액<br>(B) | 수납액<br>(C) | 수납률<br>(C/A) | 수납률<br>(C/B) | 미수납액  | 불납<br>결손액 |
|------|------------|----------|------------------|------------|--------------|--------------|-------|-----------|
| 2013 | 37         | 37       | 721              | 283        | 764.9        | 39.3         | 438   | 0         |
| 2014 | 15         | 15       | 514              | 51         | 340.0        | 9.9          | 463   | 0         |
| 2015 | 283        | 283      | 676              | 48         | 17.0         | 7.1          | 628   | 0         |
| 2016 | 283        | 283      | 2,332            | 108        | 38.2         | 4.6          | 2,225 | 0         |
| 2017 | 283        | 283      | 1,154            | 63         | 22.3         | 5.5          | 1,091 | 0         |

자료: 법무부

특히, 2017년도 검찰청 징계부과금 징수결정액은 8억 7,100만원으로 법무부 전체 징수결정액의 75.5%를 차지하고 있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3.6%로 검찰청을 제외한 법무부의 평균 수납률 11.3%보다 낮은 수준이다.

[최근 5년간 법무부(검찰청 제외) 및 검찰청 징계부과금 현황]

(단위: 백만원, %)

| 연도   | 법무부<br>전체 | 법무부(검찰청 제외)  |            |              | 검찰청          |            |              |
|------|-----------|--------------|------------|--------------|--------------|------------|--------------|
|      |           | 징수결정액<br>(A) | 수납액<br>(B) | 수납률<br>(B/A) | 징수결정액<br>(C) | 수납액<br>(D) | 수납률<br>(D/C) |
| 2013 | 721       | 85           | 16         | 18.8         | 637          | 267        | 41.9         |
| 2014 | 514       | 79           | 21         | 26.6         | 436          | 30         | 6.9          |
| 2015 | 676       | 128          | 10         | 7.8          | 549          | 38         | 6.9          |
| 2016 | 2,332     | 163          | 8          | 4.9          | 2,169        | 100        | 4.6          |
| 2017 | 1,154     | 283          | 32         | 11.3         | 871          | 31         | 3.6          |

자료: 법무부

징계부과금 미수납액의 구체적인 현황을 살펴보면, 기관별로는 검찰청이 8억 3,940만원이고 법무부는 2억 5,173만원으로 검찰청 미수납액이 법무부 전체 미수납액의 76.9%에 해당한다.

[2017년 법무부 징계부과금 미수납액 현황]

(단위: 천원)

| 기관명              | 징계사항 | 징계일자       | 미수납액      | 미수납사유          |
|------------------|------|------------|-----------|----------------|
| 서울남부지검           | 파면   | 2016.10.12 | 255,000   | 구속 수감 중        |
|                  | 파면   | 2012.10.9  | 178,300   | 구속 수감 중        |
| 서울중앙지검           | 파면   | 2016.10.11 | 182,500   | 구속 수감 중        |
| 인천지검 부천지청        | 파면   | 2014.3.10  | 71,150    | 채납자 재력부족       |
| 대전지검 천안지청        | 파면   | 2016.10.6  | 33,600    | 구속 수감중         |
| 전주지검             | 해임   | 2015.3.10  | 30,700    | 채납자 재력부족       |
| 서울서부지검           | 파면   | 2017.12.29 | 30,000    | 채납자 소청심사청구     |
| 창원지검 진주지청        | 파면   | 2016.3.9   | 19,000    | 채납자 재력부족       |
| 서울동부지검           | 파면   | 2017.3.9   | 18,225    | 형사재판 및 소청심사 청구 |
| 서울북부지검           | 파면   | 2011.1.7   | 14,297    | 채납자 재력부족       |
| 인천지검             | 해임   | 2015.6.15  | 6,000     | 채납자 재력부족       |
|                  | 견책   | 2017.12.21 | 628       | 납기 미도래         |
| 검찰청 소계           |      |            | 839,400   | -              |
| 법무부              | 해임   | 2017.5.9   | 100,000   | 기타(소송진행중)      |
|                  | 해임   | 2016.11.14 | 89,284    | 기타(소송진행중)      |
|                  | 해임   | 2016.8.8   | 10,150    | 기타(소송진행중)      |
| 인천공항<br>출입국관리사무소 | 파면   | 2012.12.10 | 45,500    | 채납자 재력부족       |
|                  | 해임   | 2014.8.20  | 2,200     | 채납자 재력부족       |
|                  | 파면   | 2014.10.27 | 2,000     | 채납자 재력부족       |
| 서울남부보호관찰소        | 파면   | 2014.8.20  | 2,600     | 채납자 재력부족       |
| 법무부(검찰청 제외) 소계   |      |            | 251,734   | -              |
| 총 계              |      |            | 1,091,134 | -              |

자료: 법무부

검찰청은 어느 기관보다도 부정부패 척결에 앞장서 깨끗하고 투명해야 할 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법무부는 소속 공무원의 근무기강을 확립하는 동시에 보다 실효성 있는 수납률 제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가. 현 황

국민편익증진 법제정비<sup>1)</sup> 사업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사법령의 지속적 정비와 효율적 시행을 위한 사업으로, 2017년도 예산현액 12억 7,200만원 중 집행액은 12억 2,900만원이고 300만원이 불용되었다. 법무부는 동 사업 중 임차료(210-07목) 예산액 9,100만원 중 1,000만원을 타 사업 등으로 전용(감)하였고, 나머지 예산현액 8,1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다.

[2017회계연도 국민편익증진 법제정비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예산액   |       | 전년도<br>이월액 | 이·전용<br>등 | 예비비 | 예산현액  | 집행액   | 다음연도<br>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    |            |           |     |       |       |             |     |
| 국민편익증진<br>법제정비 | 1,290 | 1,290 | 0          | 18        | 0   | 1,272 | 1,229 | 40          | 3   |
| 임차료            | 91    | 91    | 0          | △10       | 0   | 81    | 81    | 0           | 0   |

자료: 법무부

## 나. 분석의견

법무부가 서울 서초구 소재 건물(오피런스)을 연중 상시 대관하며 총 6,897만원에 달하는 임차료를 집행한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예산 절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법무부는 민법개정위원회 등 법무부 소관 법령의 제·개정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려는 목적으로 서울 서초구 소재 건물(오피런스)을 연중 상시 대관하며 매월 574만 7,500원씩 총 6,897만원을 지출하였다.<sup>2)</sup>

신봉진 예산분석관(bjshin@assembly.go.kr, 788-4642)

1) 코드명: 일반회계 1033-300

법무부는 소관 법령 제·개정 논의를 위한 외부위원(교수, 변호사 등)이 참여하는 후견제도 활성화 T/F, 알기 쉬운 민법 개정 T/F,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 T/F,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 T/F, 전자문서법 개정위원회, 집단소송제 개선 특별분과위원회 등의 회의를 개최하기 위하여 해당 건물을 상시 임차하여 사용하였다.

법무부는 학계,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들이 쉽게 접근하여 상시 활용할 수 있는 회의장의 사용이 불가피하고, 법무부는 과천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떨어지며, 소속 기관인 검찰청은 수사보안상 다수의 외부인의 출입이 곤란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2017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서도 회의장 임차는 각급 공공기관의 시설을 최대한 활용토록 하고 있으며,<sup>3)</sup> 법무부 소속기관 회의장을 활용할 여력 또한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본부 및 각급 검찰청, 소속기관의 회의실 중 외부 전문가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서울 소재 회의장은 총 51개이며, 법무부의 의견과 같이 수사기관 및 교정시설 등의 회의장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소속기관 회의실 이용이 가능해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에는 본부 및 소속기관 회의장을 최대한 활용하고 임차료를 낭비 지출하지 않도록 예산절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

2) 법무부는 외부 회의장 임차료 절감 대책의 일환으로 2018. 4. 9. 서울 서초구 소재 오피런스 빌딩보다 임차료가 저렴한 인근 제이빌딩으로 이전하였으며, 이전한 회의장의 월 임차료는 462만원으로 종전보다 월 112만원, 연 1,344만원의 임차료 절감 효과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3) 기획재정부, 「2017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2016. 4., p.182.

[서울소재 법무부 소속기관 회의실 현황]

| 기관명           | 주소                              | 회의실 현황(개)(수용인원: 명)                                                                                       |
|---------------|---------------------------------|----------------------------------------------------------------------------------------------------------|
| 인천공항 서울역출장소   |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378                 | 소회의실 1(10)                                                                                               |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151                | 대회의실 1(40), 소회의실 1(15)                                                                                   |
| 서울출입국 세종로출장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38                   | 소회의실 1(14)                                                                                               |
| 김포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886                 | 소회의실 1(10)                                                                                               |
| 대검찰청          |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157                 | - 본 관(15층): 대회의실 1(320)<br>중회의실 1(180), 소회의실 1(140)<br>- 별 관(4층) 예그리나홀 1(316)<br>- NDFC(2층) 베리타스홀 1(140) |
| 서울고검          |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158                | 대회의실 1(100), 중회의실 1(25),<br>소회의실 2(각 20)                                                                 |
| 서울동부지검        |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의로 30                | 대회의실 1(100), 중회의실 1(21),<br>부회의실 10(각 15), 화상회의실 1(10)                                                   |
| 서울남부지검        | 서울시 양천구 신월로 390<br>(신정1동 313-1) | 대회의실 1(200), 소회의실 1(32),<br>세미나실 1(23)                                                                   |
| 서울북부지검        | 서울시 도봉구 마들로 747                 | 대회의실 1(326), 중회의실 1(30),<br>소회의실 1(18)                                                                   |
| 서울서부지검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74                | 대회의실 1(200), 중회의실 1(20)                                                                                  |
| 서울동부(구)       | 서울 송파구 정의로 37                   | 대회의실 1(72), 소회의실 2(25, 7)                                                                                |
| 서울남부(구)       | 서울특별시 구로구 금오로 865               | 대회의실 1(117), 소회의실 1(17)                                                                                  |
| 서울남부(교)       | 서울 구로구 금오로 867                  | 대회의실 1(50), 소회의실 1(17)                                                                                   |
| 서울북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5-3               | 회의실 1(16)                                                                                                |
| 서울보호관찰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천로 272              | 대회의실 1(50), 소회의실 1(24)                                                                                   |
| 서울동부보호관찰소     | 서울 송파구 정의로 37                   | 대회의실 1(40)                                                                                               |
| 서울남부보호관찰소     | 서울 양천구 목동남로93                   | 소회의실 1(20)                                                                                               |
| 서울북부보호관찰소     | 서울 강북구 덕릉로 78                   | 대회의실 2(각 17), 소회의실 2(각 10)                                                                               |
| 합 계           |                                 | 51(검찰청 제외 21)                                                                                            |

자료: 법무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가. 현 황

변호사제도의 선진화<sup>1)</sup> 사업은 변호사에 대한 관리·감독으로 그 비위를 예방하고, 마을변호사 제도 등 변호사의 공익활동을 활성화하려는 사업으로, 2017년도 예산현액 10억 8,500만원 중 집행액은 10억 8,900만원이고 100만원이 불용되었다.

동 사업의 내역사업 중 하나인 ‘민·상사 법률연구 지원’ 사업은 민·상사 법률분야의 체계적인 연구를 위하여 사단법인 한국법학원<sup>2)</sup>에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016년에 신규 반영되었다.<sup>3)</sup> 2016년에는 보조금 5억원을 편성하였으나, 2017년 예산안에는 한국법학원의 시설비 및 임대보증금 지출이 완료됨에 따라 3억원을 편성하였고, 3억원 전액이 집행되었다. 해당 예산 대부분은 연구원(6명) 및 행정원(1명)의 인건비성 경비(2억 7,362만원)로 집행되었다.

신봉진 예산분석관(bjshin@assembly.go.kr, 788-4642)

1) 코드명: 일반회계 1038-303

2) 한국법학원은 법률문화의 향상을 통해 국민생활의 안정과 번영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1956년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현재 부원장직은 법원행정처 차장, 헌법재판소 사무차장, 법무부 차관 등이 맡고 있다. 법무부는 2007년 「한국법학원육성법」 제정에 따라 한국법학원에 대한 보조 근거를 마련하였다.

○ 소재지: 기존 서울중부등기소 내 소재하였으나, 민·상사 법률연구 지원 사업으로 임대보증금 등을 지원받아 2016년 7월 서초동으로 이전

○ 구성(인원)

- 이사회: 원장(1), 부원장(5), 상임이사(6), 이사(11), 감사(2)

- 사무국: 사무국장(1), 직원(1)

- 민·상사 법률연구(2016년 7월부터 운영): 박사 등 연구원(6), 행정지원(1)

3) 대법원 또한 재판일반경비지원 사업(코드명: 일반회계 1143-404)의 내역사업으로 한국법학원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금액은 법무부와 동일하다.

[2017회계연도 민·상사 법률연구 지원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예산액   |       | 전년도<br>이월액 | 이·전용<br>등 | 예비비 | 예산<br>현액 | 집행액   | 다음연도<br>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    |            |           |     |          |       |             |     |
| 변호사제도의<br>선진화   | 1,085 | 1,085 | 40         | △35       | 0   | 1,090    | 1,089 | 0           | 1   |
| 민·상사법률<br>연구 지원 | 300   | 300   | 0          | 0         | 0   | 300      | 300   | 0           | 0   |

자료: 법무부

[2017년 민상사법률연구지원 사업 예산 편성내역 및 세부집행내역]

(단위: 천원)

| 비 목                | 내 용  |                                             | 예산액     | 집행액     |
|--------------------|------|---------------------------------------------|---------|---------|
| 민간경상보조<br>(320-01) | 인건비  | 1) 연구팀 전문위원 4명×40,000,000원                  | 160,000 | 229,993 |
|                    |      | 2) 연구팀 기타전문위원 2명×33,000,000원                | 66,000  |         |
|                    |      | 3) 행정지원 1명×33,000,000원                      | 33,000  |         |
|                    |      | 4) 연금지급금 7명×857,000원                        | 5,999   | 22,054  |
|                    |      | 5) 퇴직적립금<br>(4명×3,333,000원)+(3명×2,750,000원) | 21,582  | 21,570  |
|                    |      | 6) 계수조정 19,000원                             | 19      | -       |
|                    | 소 계  |                                             | 286,600 | 273,617 |
|                    | 운영지원 | 1) 사무용품 및 전산용품 1,400,000원                   | 1,400   | 7,267   |
|                    |      | 2) 시내출장<br>2명×6.25회×12월×20,000원             | 3,000   | 685     |
|                    |      | 3) 공공요금 12월×666,7000원                       | 8,000   | 7,431   |
|                    |      | 4) 기타수용비(행사 등) 1,000,000원                   | 1,000   | 11,000  |
|                    | 소 계  |                                             | 13,400  | 26,383  |
|                    | 합 계  |                                             | 300,000 | 300,000 |

자료: 법무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나. 분석의견

법무부는 민·상사 법률연구 지원 사업을 통해 관련 주제에 대한 심도 깊고 연속성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법무부는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연구기관으로 한국법제연구원(1990년 설립)이 있으나 대부분 공법 연구에 집중되어 있으며, 민·상사법 분야는 모든 법률의 근간이 되는 기본법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전문 연구기관이 부재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조사 및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일반적인 연구용역 절차에 따라 연구과제를 수행할 경우 현안 위주의 단편적 연구가 이루어져 연구사업의 연속성 유지 등에 한계가 있으므로 별도의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법학원은 2016년 7월 민·상사 학술연구부를 설립한 이후 연구원 6명을 채용하여 반기 동안 4개의 연구과제를 수행하였고, 이에 대한 결과물은 2017년 상반기에 제출하였다. 2017년 6월에는 4개의 신규 연구과제를 확정하여 중 1개 과제에 대한 결과물을 12월에 제출하였다.

그런데 2016년 하반기~2017년 상반기에 수행한 연구과제와 2017년 하반기부터 수행한 연구과제를 비교할 때, 법무부가 한국법학원에 대한 지속적인 민간경상보조금 지원 필요성의 주요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연구사업의 연속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모든 과제의 연구가 1년의 기간 안에 종결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정책연구비(260-02목)를 활용한 연구용역 공모 등을 통해 충분히 수행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016~2017년 한국법학원 수행 연구주제]

| 구 분 | 2016년 하반기~2017년 상반기                                     | 2017년 하반기~                                                                  |
|-----|---------------------------------------------------------|-----------------------------------------------------------------------------|
| 민법팀 | 공동주택인 집합건물에 관한<br>법적 규율의 통합방안<br>(2016.8.1.~2017.3.29.) | 개정 민법(여행계약) 시행에 따른<br>여행표준약관의 개선 방안<br>(2017.7.1.~2017.12.29.)              |
|     | 자율주행자동차의 책임 법제 정비<br>(2016.7.1.~2017.3.29.)             | 소프트웨어(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br>침해의 개념 및 손해액 산정 기준에<br>관한 연구<br>(2017.7.1.~2018.4.27.) |
| 상법팀 | 주주총회 활성화 방안<br>(2016.7.1.~2017.5.30.)                   | 신주인수선택권 및 차등의결권 제도<br>관련 최근 논의 동향<br>(2017.7.1.~2018.4.5.)                  |
|     | 자금조달활성화 방안<br>(2016.8.1.~2017.5.30.)                    | 각종 소수 주주 보호제도의<br>활성화 방안<br>(2017.7.1.~2018.4.27.)                          |

자료: 법무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더욱이, 법무부는 동 사업과 별도로 국민편익증진법제정비<sup>4)</sup> 사업 및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기업법제 선진화<sup>5)</sup> 사업의 법제연구용역비로도 정책연구용역을 상시 발주하고 있다. 국민편익증진법제정비 사업에서는 2017년 1억 7,500만원을 집행하여 11개 연구용역을 수행하였고,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기업법제 선진화 사업에서는 8,500만원으로 7개의 연구용역을 수행하였다. 연구용역 참여자는 대부분 대학교수, 로펌의 변호사 등이고 한국법학원에 채용된 연구원들은 대부분 박사학위 소지자, 박사과정 수료자 등임을 고려할 때, 법무부는 민·상사 법학연구 지원 사업이 타 사업과 비교하여 유의미한 성과가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동시에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4) 코드명: 일반회계 1033-300

5) 코드명: 일반회계 1033-304

[2017년 법제 관련 연구 실시내역 비교]

| 세부사업명<br>(코드명)                  | 국민편익증진법제정비<br>(1033-300) |                                                                   | 성장동력 확충을<br>위한 기업법제<br>선진화<br>(1033-304)         | 변호사제도의<br>선진화<br>(1038-303)             |
|---------------------------------|--------------------------|-------------------------------------------------------------------|--------------------------------------------------|-----------------------------------------|
| 내역사업명                           | 법제연구용역비                  |                                                                   | 법제연구용역비                                          | 민·상사법률연구 지원<br>(한국법학원<br>보조금)           |
| 최초사업년도                          | 계속사업                     |                                                                   | 계속사업                                             | 2016년~                                  |
| 비목                              | 일반연구비(260-01목)           |                                                                   | 일반연구비<br>(260-01목)                               | 민간경상보조<br>(320-01목)                     |
| 예산액                             | 2억 2,000만원               |                                                                   | 1억 3,000만원                                       | 3억원                                     |
| 집행액                             | 1억 7,500만원               |                                                                   | 8,500만원                                          | 3억원                                     |
| 사업추진방식                          | 입찰 또는 수의계약               |                                                                   | 입찰 또는<br>수의계약                                    | 법무부 요청 또는<br>협약                         |
| 연구용역<br>결과물<br>(2017년<br>종료 기준) | 1                        | 지속적 대리권을<br>활용한 의사결정지원<br>방안 연구                                   | 자기주식 규제에 관한<br>입법론적 연구                           | 공동주택인 집합<br>건물에 관한 법적<br>규율의 통합 방안      |
|                                 | 2                        | 민법상 비영리법인의<br>관리감독 강화<br>방안 연구                                    | 각종 경제법령에 산재<br>하는 회사법적 특례<br>규정의 체계적<br>정비 방안    | 자율주행자동차의<br>책임 법제 정비                    |
|                                 | 3                        | 개별법상<br>과태료조항에 대한<br>정비 필요성 연구                                    | 해외 사례 비교를<br>통한 우리나라 중재<br>전문인력 양성제도<br>발전 방안 연구 | 주주총회 활성화 방안                             |
|                                 | 4                        | 주택 및 상가임대차<br>관련 선진국의 주요<br>법적 규율과 그에 대한<br>사회·문화적 배경<br>등에 대한 연구 |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br>위한 개인도산법제<br>개선방안 연구              | 자금조달 활성화<br>방안                          |
|                                 | 5                        | 개정 프랑스 민법 중<br>물권법 담보법<br>(제2권, 제4권)의 번역                          |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br>수립에 관한 연구                        | 개정 민법(여행계약)<br>시행에 따른 여행표준<br>약관의 개선 방안 |

| 세부사업명<br>(코드명) | 국민편익증진법제정비<br>(1033-300) |                                               | 성장동력 확충을<br>위한 기업법제<br>선진화<br>(1033-304) | 변호사제도의<br>선진화<br>(1038-303) |
|----------------|--------------------------|-----------------------------------------------|------------------------------------------|-----------------------------|
|                | 6                        | 개정프랑스채권법<br>(제3권제3편)의<br>번역 및 해제              | 기존 경영관리인<br>제도의 개선 방안                    | -                           |
|                | 7                        | 고령화시대를 대비한<br>노인의 보호방안                        | 기업과 인권 관련<br>국내외 동향 및 국내<br>기업 법제에의 시사점  | -                           |
|                | 8                        | 인공지능 사회를 대비한<br>민사법적 과제                       | -                                        | -                           |
|                | 9                        | 개정 일본민법<br>번역 및 해설                            | -                                        | -                           |
|                | 10                       | 일본 공익인정등위원회<br>운영 및 관리감독<br>실태 분석             | -                                        | -                           |
|                | 11                       | 계약갱신요구권<br>행사기간 연장에<br>대한 사회·경제적<br>영향에 관한 연구 | -                                        | -                           |

자료: 법무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가. 현 황

법무부는 취약계층에게 폭넓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법률서비스를 활동의 난이도 및 소송 수행 여부에 따라 소송 수행을 제외한 1차 서비스(법률상담 및 정보제공, 소송 방법 및 절차 안내, 법률구조 알선 등 조력기관 연계)와 2차 서비스(소송 제기, 권리 보전 등)로 구분하고 있다.

법무부는 무료 변론 등을 수행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운영 보조금을 지급하는 법률구조<sup>1)</sup> 사업을 계속 실시하여 오고 있으며, 취약계층 법률상담 강화를 위하여 2012년부터는 법률홈닥터<sup>2)</sup> 제도를, 2014년부터는 마을변호사 제도<sup>3)</sup>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2017년에는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sup>4)</sup> 사업을 신규 시행하였다.

신봉진 예산분석관(bjshin@assembly.go.kr, 788-4642)

1) 코드명: 일반회계 1131-300

2) 세부사업명: 서민 법률보호를 위한 법률홈닥터, 코드명: 일반회계 1131-301

3) 세부사업명: 변호사제도의 선진화, 코드명: 일반회계 1038-303 / 시범사업은 2013년부터 운영하였고, 정식 예산은 2014년부터 반영되었다.

4) 세부사업명: 외국인사회통합지원, 코드명: 일반회계 1233-301 / 2017년 홍보비 1,500만원(홍보 리플렛 제작·배포), 현장상담 실비 380만원(1회당 5만원 지급)

[법률서비스 지원 관련 예산 및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16   |        | 2017   |        | 2018   | 서비스<br>유형             |
|----------------------|--------|--------|--------|--------|--------|-----------------------|
|                      | 예산     | 결산     | 예산     | 결산     | 예산     |                       |
| 법률구조                 | 45,565 | 45,565 | 47,742 | 47,742 | 50,264 | 1차+2차<br>(소송수행<br>포함) |
| 대한법률구조공단             | 43,343 | 43,343 | 45,817 | 45,817 | 48,299 |                       |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1,531  | 1,531  | 1,525  | 1,525  | 1,559  |                       |
|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691    | 691    | 400    | 400    | 406    |                       |
| 서민 법률보호를 위한<br>법률홈닥터 | 2,449  | 2,256  | 4,235  | 3,697  | 4,227  | 1차<br>(소송수행<br>제외)    |
| 변호사제도의 선진화           | 1,381  | 1,300  | 1,085  | 1,089  | 2,378  |                       |
| 마을변호사 제도운영           | 140    | 140    | 140    | 140    | 245    |                       |
| 외국인사회통합지원            | 6,692  | 6,94   | 10,961 | 10,682 | 11,610 |                       |
|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 -      | -      | 29     | 19     | 29     |                       |

자료: 법무부

법률구조 사업에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실제 소송 업무까지 수행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무료로 법률구조를 실시하고 있다. 법률홈닥터 및 마을변호사는 소송을 제외한 법률상담 등만을 수행하며, 전자는 법무부에 고용된 계약직으로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상주하지만, 후자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변호사가 없는 무변촌에 마을변호사(비상주)를 위촉하여 출장실비 지원 등 자원봉사 개념에 가깝게 운영하고 있다.

[각 사업별 법률서비스 대상 및 주요 업무]

| 기관/사업               | 서비스 대상                                                                                                                                | 주요 업무                                                                                                                                     | 유형                        |
|---------------------|---------------------------------------------------------------------------------------------------------------------------------------|-------------------------------------------------------------------------------------------------------------------------------------------|---------------------------|
| 대한법률<br>구조공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제적으로 어려워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li> <li>전국 시·군·구, 농·어촌 등 법률보호 취약지역</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률상담 및 정보제공, 법 교육, 소송구조, 법률 문서 작성 등</li> </ul>                                                     | 1차+2차<br>(소송<br>수행<br>포함) |
| 한국가정<br>법률상담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저소득·소외계층,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폭력피해여성</li> <li>보호시설 등의 출장, 순회 상담</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률상담, 소송구조, 소장작성, 화해조정 등 수행, 법교육 등</li> </ul>                                                      |                           |
| 대한가정<br>법률복지<br>상담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든 국민, 국내 거주 외국인, 해외 거주 국민(재외동포)</li> <li>소외계층, 취약계층, 폭력 가해자 및 피해자 등</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률상담, 소송구조, 조정화해 및 무료대서, 법률 및 예방교육 등 법률구조사업 수행</li> </ul>                                          |                           |
| 법률홈닥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독거노인, 결혼이주여성, 새터민, 범죄피해자, 농어촌 지역의 주민 등 법률 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직접 수요자 중심의 현장 접근성이 높은 장소(구청, 시청, 복지협의회 등)에서 1차 법률서비스 제공</li> <li>조력기관 연계 및 맞춤형 법교육 제공 등</li> </ul> | 1차<br>(소송<br>수행<br>제외)    |
| 마을변호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읍·면·동 무변촌 법률서비스 취약지역 주민 전체</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화, 인터넷을 통한 법률상담 등</li> <li>변호사의 재능기부 봉사활동</li> </ul>                                              | 1차<br>(소송<br>수행<br>제외)    |

자료: 법무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나. 분석의견

법무부가 수행하고 있는 각종 법률서비스 지원 관련 사업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첫째, 법률홈닥터는 인권국, 마을변호사는 법무실에서 추진하는 등 유사 사업이 분절적으로 수행되고 있으므로, 사업 추진 시 지역배분과 관련한 면밀한 협의를 거치는 등 효율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찾아가는 서민 법률 주치의’를 표방하며 기획된 법률홈닥터는 법무부에서 직접 고용한 변호사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복지협의회 등 지역 거점기관에 상주하면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법률상담 등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2012년에 법률홈닥터 20명 배치로 시작한 이후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하여 2018년 4월 기준 총 61명 중 휴직자 3명을 제외한 58명의 법률홈닥터가 활동하고 있으며, 마을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를 매개로 전국 1,413개 모든 읍·면 및 86개 동에 변호사를 위촉(비상주)하는 방식으로 수행한다.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 및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취약계층 서민을 위한 법률서비스 지원 사업은 서비스 대상지역의 중복, 타 사업 서비스 이용자 선별 비용 발생,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이용자의 번거로움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sup>5)</sup>

이에 대하여 법무부는 법률홈닥터는 법무부가 채용하는 기간제 근로자인 반면 마을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위촉하는 등 마을변호사 제도는 법률홈닥터 및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법률구조와는 제도 취지나 운영 주체 및 방식이 서로 상이하여 사업이 중복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법률홈닥터 사업, 마을변호사 사업,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사업 등 각종 법률서비스 지원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는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복지서비스 제공이라는 점, 사업대상에 취약계층 서민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 사업내용에 법률상담·교육·서류작성 등 1차 법률서비스 제공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 등에서 유사한 측면이 있다.

더욱이 법률홈닥터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인권국과 마을변호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법무실은 법률홈닥터 및 마을변호사의 지역배분과 관련한 실·국간 협의를 거치지 않는 등 분절적인 사업 수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는 두 제도의 차이를 감안할 때 오히려 상호보완적인 역할이 가능할 수 있고 법률복지 제도의 사각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나, 관련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보인다.

---

5) 국회예산정책처, 「201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운영위·법사위)」, 2016.10., pp.45~49 등



[취약계층 서민 대상 법률서비스 제공기관 배치현황]

| 구분 | 법률상담터 배치기관                                                                                                    | 마을변호사 배치지역                                                                                                                                                                                                                 |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소                                                                                                                       |
|----|---------------------------------------------------------------------------------------------------------------|----------------------------------------------------------------------------------------------------------------------------------------------------------------------------------------------------------------------------|-----------------------------------------------------------------------------------------------------------------------------------|
| 서울 | 강동구청, 강서구청, 관악구청, 노원구청, 도봉구청, 동작구청, 마포구청, 서대문구청, 양천구청, 은평구청, 종로구청, 사회복지협의회(서울)                                | -                                                                                                                                                                                                                          | -                                                                                                                                 |
| 경기 | 고양덕양구청, 광명시청, <u>남양주시청</u> , 동두천시청, <u>성남시청</u> , 안산시청, <u>안성시청</u> , <u>오산시청</u> , <u>이천시청</u> , 사회복지협의회(수원) | 파주, 평택, 안성, <u>김포</u> , <u>용인</u> , 화성, <u>광주</u> , <u>이천</u> , 여주, 양평, 양주, <u>연천</u> , 포천, <u>남양주</u> , <u>가평</u> , <u>오산</u> , 의왕                                                                                        | 포천, <u>가평</u> , <u>남양주</u> , <u>연천</u> , <u>철원</u> , <u>용인</u> , <u>오산</u> , <u>안성</u> , <u>김포</u>                                |
| 인천 | <u>강화군청</u> , 남구청, 사회복지협의회(인천)                                                                                | <u>강화</u> , 옹진                                                                                                                                                                                                             | <u>강화</u>                                                                                                                         |
| 충청 | <u>논산시청</u> , <u>서산시청</u> , <u>아산시청</u> , <u>천안시청</u> , <u>충주시청</u> , 사회복지협의회(청주)                             | 세종, 금산, 보령, 홍성, <u>예산</u> , <u>서천</u> , 공주, <u>청양</u> , <u>논산</u> , 계룡, 부여, <u>서산</u> , 당진, 태안, <u>천안</u> , <u>아산</u> , <u>청주</u> , <u>진천</u> , <u>보은</u> , <u>괴산</u> , 증평, <u>충주</u> , <u>음성</u> , <u>제천</u> , 단양, 영동, 옥천 | <u>서천</u> , 보령, <u>예산</u> , <u>청양</u> , <u>부여</u> , <u>당진</u> , <u>아산</u> , <u>보은</u> , <u>괴산</u> , <u>진천</u> , <u>음성</u>         |
| 대전 | 동구청, 사회복지협의회(대전)                                                                                              | <u>중구</u> , <u>유성구</u>                                                                                                                                                                                                     | -                                                                                                                                 |
| 대구 | <u>달서구청</u> , 동구청, 북구청, 수성구청                                                                                  | <u>달성</u>                                                                                                                                                                                                                  | -                                                                                                                                 |
| 경북 | <u>경산시청</u> , <u>영주시청</u> , <u>포항시청</u>                                                                       | <u>성주</u> , <u>고령</u> , <u>영천</u> , <u>경산</u> , <u>칠곡</u> , <u>청도</u> , <u>안동</u> , <u>영주</u> , 봉화, 경주, <u>포항</u> , 울릉, 김천, 구미, 상주, <u>문경</u> , <u>예천</u> , 의성, 군위, <u>청송</u> , 영덕, 영양, <u>울진</u>                          | <u>청도</u> , <u>영천</u> , <u>칠곡</u> , <u>성주</u> , <u>고령</u> , <u>영주</u> , <u>예천</u> , <u>문경</u> , <u>청송</u> , <u>울진</u> , <u>영양</u> |

| 구분 | 법률상담터 배치기관                       | 마을변호사 배치지역                                                                                        |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소                                          |
|----|----------------------------------|---------------------------------------------------------------------------------------------------|------------------------------------------------------|
| 경남 | 사회복지협의회(창원),<br>사회복지협의회(김해)      | 양산, 창원, 김해, 함안,<br>의령, 통영, 거제, 고성,<br>밀양, 창녕, 거창, 함양,<br>합천, 진주, 사천, 남해,<br>하동, 산청                | 김해, 함안, 의령, 하동,<br>사천, 남해, 산청, 고성,<br>창녕, 합천, 함양     |
| 부산 | 부산시청, 남구청, 사상구청,<br>수영구청         | 기장, 중구, 진구,<br>금정구, 강서구, 사상구                                                                      | -                                                    |
| 울산 | 울산시청                             | 울주, 동구                                                                                            | -                                                    |
| 전북 | 익산시청, 전주시청,<br>사회복지협의회(전주)       | 김제, 완주, 임실, 진안,<br>무주, 군산, 익산, 정읍,<br>부안, 고창, 남원, 장수,<br>순창                                       | 진안, 김제, 무주,<br>익산, 부안, 고창,<br>장수                     |
| 전남 | 순천시청,<br>사회복지협의회(무안)             | 나주, 화순, 장성, 담양,<br>곡성, 영광, 무안, 신안,<br>함평, 영암, 장흥, 강진,<br>순천, 여수, 광양, 구례,<br>고흥, 보성, 해남, 완도,<br>진도 | 곡성, 영광, 나주, 화순,<br>함평, 영암, 무안, 강진,<br>보성, 고흥, 완도, 진도 |
| 광주 | 서구청, 남구청, 광산구청                   | -                                                                                                 | -                                                    |
| 강원 | 원주시청, 삼척시청, 속초시청,<br>사회복지협의회(춘천) | 철원, 춘천, 화천, 양구,<br>인제, 홍천, 강릉, 삼척,<br>원주, 횡성, 양양, 고성,<br>태백, 영월, 정선, 평창                           | 인제, 양구, 화천, 삼척,<br>동해, 횡성, 정선, 태백,<br>평창             |
| 제주 | 사회복지협의회(제주)                      | 제주, 서귀포                                                                                           | 서귀포지소                                                |

자료: 법무부

따라서 향후 법무부는 법률 서비스 지원 사업 추진 시 지역배분과 관련하여 실·국간 면밀한 협의를 거치는 등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둘째,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사업은 기존의 마을변호사 제도와 별도로 추진해야 할 차별성이나 당위성이 미흡한 것으로 보이므로, 마을변호사 제도와 통합이 필요하다.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사업은 외국인사회통합지원 사업의 2017년 신규 내역사업으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2018년 5월 말 기준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는 총 186명이다.

법무부는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사업 추진 시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콜센터)를 통한 3자 통역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동 사업은 언어장벽, 정보 부족으로 법률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국내 체류 외국인이 대상이라는 점에서 마을변호사 사업과 서비스 대상에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서비스 제공 주체가 ‘국내 변호사’이며 서비스 내용이 기존 마을변호사가 수행할 수 없는 특수한 영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별도의 세부사업에서 추진하기보다는 기존의 마을변호사 제도에 통역 서비스만 추가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는 국적, 종교, 언어 및 문화적 배경 등 다양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법률지식 뿐만 아니라 외국어 능력, 관심국가, 타문화에 대한 이해(해외체류 경험 등)를 겸비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며, 외국인들이 한국에 체류하면서 겪게 되는 민형사상의 일반적인 법률상담외에도 국적취득, 체류자격 변경 및 연장, 국제결혼 특성에 따른 혼인신고 절차 및 이혼, 출입국관리법 위반자의 강제퇴거, 난민신청 등 출입국외국인정책과 밀접한 법률상담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일반적인 법률상담을 수행하는 마을변호사와는 차별이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사업 대상이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해당 국가(외국)의 법률적 문제가 아닌 우리나라 체류 중 국내에서 발생한 법률문제에 대한 상담 서비스라는 점,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사업의 상담분야가 기존의 마을변호사가 수행할 수 없는 분야가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변호사의 외국어 능력이나 해외체류경험 등이 서비스를 수행하는 데 추가적인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필수적인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가진 기존의 마을변호사도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사업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동 사업의 2017년 예산 2,940만원 중 1,872만원(63.7%)이 집행되었는데, 이 중 1,419만원은 홍보용 리플릿 제작에 사용되었으며 실질적인 대면상담에 소요된 금액은 380만원에 불과하다. 이는 2017년 대면상담 실적이 총 126건에 불과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2017년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사업 예산 집행내역]

(단위: 천원)

| 비 목               | 예산편성내역    |        | 세부집행내역              |        |
|-------------------|-----------|--------|---------------------|--------|
|                   | 내 용       | 금액     | 내 용                 | 금액     |
| 일반수용비<br>(210-01) | 외국인을 위한   | 29,400 |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 대면상담 실시 | 3,800  |
|                   | 마을변호사 운영비 |        | 홍보용 리플릿 제작          | 14,919 |
| 합 계               |           | 29,400 | -                   | 18,719 |

자료: 법무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17년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출입국관리사무소별 대면상담 실적]

(단위: 건)

| 계   | 서울 | 남부 | 부산 | 인천 | 수원 | 제주 | 대구 | 대전 | 여수 | 양주 | 울산 | 광주 | 창원 | 춘천 | 청주 | 전주 |
|-----|----|----|----|----|----|----|----|----|----|----|----|----|----|----|----|----|
| 126 | 15 | 14 | 6  | 4  | 13 | 9  | 17 | 13 | 4  | 9  | 4  | 0  | 5  | 3  | 7  | 4  |

자료: 법무부

한편, 2017년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의 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 통한 상담실적은 총 905건인데, 이 중 3자 통역 방식으로 수행한 상담은 242건(26.7%)으로 나타나 통역 수요가 크지 않음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사업을 기존 마을변호사 제도와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해야 할 필요성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2017년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의 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 통한 상담실적]

(단위: 건)

| 법률상담             |                    |     | 상담분야 |     |     |    |     |
|------------------|--------------------|-----|------|-----|-----|----|-----|
| 일반 <sup>1)</sup> | 3자통역 <sup>2)</sup> | 총계  | 가사   | 형사  | 민사  | 노동 | 계   |
| 663              | 242                | 905 | 175  | 153 | 448 | 6  | 905 |

주: 1) 변호사와 이용자의 양자 간 통화

2) 종합안내센터 직원, 변호사, 이용자의 3자간 통화

자료: 법무부

이와 같이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사업은 기존에 법률서비스 지원사업을 실시해오던 법무실 또는 인권국이 아닌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신규 내역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차별성이나 당위성이 미흡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활한 사업관리 측면에서 마을변호사 제도와 통합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가. 현 황

범죄피해자 치료 및 자립 지원<sup>1)</sup> 사업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및 스마일센터에 대한 보조를 통하여 상담, 경제·의료지원, 신변보호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간접지원 사업과 검찰청·경찰청 등이 수행하는 치료비·심리치료비·긴급생계비 지원, 강력범죄 현장정리 등 직접지원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2017년도 계획현액 167억 4,100만원 중 집행액은 164억 4,900만원이고 2억 9,200만원이 불용되었다.

[2017회계연도 범죄피해자 치료 및 자립 지원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계획액    |        | 전년도<br>이월액 | 이·전<br>용 등 | 예비비 | 계획현액   | 집행액    | 다음연도<br>이월액 | 불용액 |
|---------------------|--------|--------|------------|------------|-----|--------|--------|-------------|-----|
|                     | 당초     | 수정     |            |            |     |        |        |             |     |
| 범죄피해자 치료<br>및 자립 지원 | 17,091 | 16,741 | 0          | 0          | 0   | 16,741 | 16,449 | 0           | 292 |

자료: 법무부

### 나. 분석의견

범죄피해자 치료 및 자립 지원 사업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첫째, 치료비·심리치료비·긴급생계비 지원 사업은 집행이 부진한 측면이 있으므로 적극적인 제도 안내 등 사업추진 노력이 필요하다.

신봉진 예산분석관(bjshin@assembly.go.kr, 788-4642)

1) 코드명: 범죄피해자보호기금 1135-300

치료비·심리치료비·긴급생계비 지원 사업은 범죄피해자가 범죄로 인하여 5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적 피해 또는 정신적 피해를 입어 의료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그 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경제적 지원을 신청한 범죄피해자의 생계가 곤란해진 경우 일선 검찰청에서 범죄피해자에게 생계비·학자금·장례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치료비·심리치료비·긴급생계비는 범죄피해자의 지급청구(치료내역 증빙 서류 및 진단서 등 첨부)에 대해 검찰청 경제적지원 심의회에서 심의·결정한 후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데, 피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거나 치료비 등을 타 기관으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한 원칙적으로 지급이 결정된다.

[치료비·심리치료비·긴급생계비 지급기준]

| 구분         | 치료비(심리치료비)                                                                                                                                                                                                                                                   | 긴급생계비                                                                                                                                                                      |
|------------|--------------------------------------------------------------------------------------------------------------------------------------------------------------------------------------------------------------------------------------------------------------|----------------------------------------------------------------------------------------------------------------------------------------------------------------------------|
| 지급 결정      | 검찰청 경제적지원 심의회 <sup>1)</sup> 를 통해 지급 결정                                                                                                                                                                                                                       |                                                                                                                                                                            |
| 지급 대상 (요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범죄 피해로 5주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범죄피해자</li> <li>○범죄피해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li> </ul>                                                                                                                                               | ○범죄피해로 생계가 곤란하거나,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범죄피해자                                                                                                                                      |
| 지급 방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한 이후의 본인 부담액 실비 지원</li> <li>○범죄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지출된 금액 지원</li> <li>○범죄피해 발생일로부터 10년 내, 범죄피해를 안 날로부터 3년 내 신청</li> </ul>                                                                                         | ○범죄피해 발생일로부터 10년 내, 범죄피해 안 날로부터 3년 내 신청                                                                                                                                    |
| 지급 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피해자 1인에 대해 연 1,500만원, 최대 5,000만원 지급</li> <li>※ 가해자에게 받은 보상이 있을 경우 지원금 공제</li> <li>○정신과 치료비 : 피해자 1인에 대해 1회 최대 300만원, 연 1,500만원 한도 (총액 5,000만원)</li> <li>○심리상담서비스 : 전문가 이용시 회당 5~10만원, 집단상담의 경우 회당 최대 50만원</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긴급생계비 : 월1회 50만원 상한 지급 (최대 150만원, 3개월)</li> <li>○학자금 : 학기당 1회, 최대 연2회 지원 (연령대에 따라 50~100만원)</li> <li>○장례비 : 300만원 상한 지급</li> </ul> |

주: 1) 검찰청 경제적지원 심의회는 위원장(차장검사), 해당지검 주무 검사, 의사, 변호사, 범죄피해자 지원업무 관련 전문가 등 5인으로 구성됨

자료: 법무부

2016년도에 범죄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 확대 목적으로 치료비 예산과 심리치료비 예산이 전년 대비 각각 11억원, 1억원 증액되었으나, 증액된 취지와는 다르게 2015년 집행률은 99.6%, 2016년 집행률은 86.2%, 2017년 집행률은 83.8%로 매년 집행률이 낮아지고 있다.

[2017년 치료비·심리치료비·긴급생계비 예산 편성내역 및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비 목               | 예산편성내역 |       | 세부집행내역                    |                     |
|-------------------|--------|-------|---------------------------|---------------------|
|                   | 내 용    | 금액    | 내 용                       | 금액                  |
| 일반수용비<br>(210-01) | 치료비    | 2,200 | 총 1,082건 지원 <sup>1)</sup> | 2,430 <sup>1)</sup> |
|                   | 심리치료비  | 700   |                           |                     |
| 기타보전금<br>(310-04) | 긴급생계비  | 1,500 | 총 644건 지원                 | 1,405               |
| 합 계               |        | 4,400 | -                         | 3,835               |

주: 1) 법무부는 피해자의 치료비 청구내역에 치료비와 심리치료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집행내역의 엄밀한 분리가 어렵다고 설명하고 있음.

자료: 법무부

[치료비·심리치료비 지원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2015  |       |     | 2016  |       |     | 2017  |       |     |
|-------|-------|-----|-------|-------|-----|-------|-------|-----|
| 계획액   | 집행액   | 불용액 | 계획액   | 집행액   | 불용액 | 계획액   | 집행액   | 불용액 |
| 1,700 | 1,694 | 6   | 2,900 | 2,500 | 400 | 2,900 | 2,430 | 470 |

자료: 법무부

법무부는 집행률이 매년 낮아지고 있는 이유를 지원대상자의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 및 범죄피해자의 심리치료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심리치료서비스 공급이 확충되고 있는 상황<sup>2)</sup> 등을 고려하여 동 예산의 증액 취지에 맞도록 법무부는 향후 대상자에 대한 적극적인 제도 안내<sup>3)</sup> 등 사업추진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2) 법무부 심리치료서비스 제공 기관인 스마일센터가 확대 설치 중(2017년 1개소 추가, 전국 총 11개소, 2021년까지 총 18개소 설치 계획)이며, 피해자 유형에 따라 여성가족부 해바라기센터(성폭력피해자),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전문기관(아동학대피해자) 등에서도 심리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둘째, 치료비 및 심리치료비를 일반수용비(210-01목)으로 편성·집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긴급생계비와 같이 기타 보전금(310-04목)으로 편성·집행할 필요가 있다.

현재 치료비·심리치료비는 일반수용비(210-01목)로 편성·집행하고, 긴급생계비는 기타 보전금(310-04목)으로 편성·집행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법무부는 치료비·심리치료비는 긴급생계비 등과 달리 요건에 따라 지급액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 지급내역에 근거하여 지급액을 심의하고 지원을 결정하며, 부적격 사유에 따른 지원금 환수도 수행하고 있으므로 일반수용비로 예산 과목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치료비·심리치료비 사업과 긴급생계비 지원 사업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4)에 따른 지원 정책으로, 절차 간소화와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신청·지급창구가 일선 검찰청으로 일원화되어 법적 근거 및 사업수행주체가 동일하다.

또한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일반수용비는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인 행정사무비와 기타 업무수행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하는 물품의 구입비 등 경상경비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sup>5)</sup>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 기타 법령에 의해 반대급부 또는 채권채무의 원인행위 없이 민간에 지원하는 경비는 기타 보전금(310-04목)으로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sup>6)</sup> 등을 고려할 때, 범죄피해자보호법 범죄피해자에 대한 치료 소요경비에 대한 직접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치료비·심리치료비도 긴급생계비의 경우와 같이 기타 보전금(310-04목)에 편성·집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법무부는 2017년 11월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 처리 지침」을 개정하여 심리치유 지원 요건을 확대(심리상담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죄피해자를 검찰청에 지정, 연계된 심리상담 전문가에게 심리상담을 의뢰하는 절차 마련, 심리상담전문가의 피해자 방문상담 비용 및 심리상담소·연구소 등의 기관에서 실시한 심리검사비 등 지원)하였다.

4)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손실 복구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보호·지원의 필요성 등에 따라 상담, 의료제공(치료비 지원을 포함한다), 구조금 지급, 법률구조, 취업 관련 지원, 주거지원,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보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5) 기획재정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2016.4, p.173.

6) 기획재정부,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2017.1, p.263.



## 가. 현 황

법무부는 전국 검찰청 시설의 운용 및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검찰청 시설운영<sup>1)</sup>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7년도 예산현액 578억 2,100만원 중 집행액은 576억 5,300만원이고 1억 6,800만원이 불용되었다.

동 사업에서 전국 64개 검찰청사의 시설 및 청소 용역 등 청사관리용역 예산으로 185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예산 부족으로 타 사업에서 11억 4,100만원을 전용(증)하고 내역조정을 통해 공공요금및제세(210-02목) 항목에서 1억 2,300만원을 추가 집행하여 총 197억 6,500만원을 집행하였다.

[2017회계연도 검찰청 시설운영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예산액    |        | 전년도<br>이월액 | 이·전용<br>등 | 예비비 | 예산현액   | 집행액    | 다음연도<br>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     |            |           |     |        |        |             |     |
| 검찰청 시설운영     | 51,467 | 57,266 | 0          | 555       | 0   | 57,821 | 57,653 | 0           | 168 |
| 청사관리용역<br>경비 | 18,501 | 18,501 | 0          | 1,264     | 0   | 19,765 | 19,765 | 0           | 0   |

자료: 법무부

## 나. 분석의견

검찰청 청사관리용역 근로자에 대한 법무부의 임금 지급액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향후 동 지침의 준수에 필요한 적정 수준의 예산을 편성·집행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신봉진 예산분석관(bjshin@assembly.go.kr, 788-4642)

1) 코드명: 일반회계 1333-300

2017년 검찰청 시설운영 사업에는 청사관리용역을 위하여 전년도 예산(152억 1,400만원) 대비 21.6% 증액된 185억 1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었고, 예산 편성의 기준이 되는 청사관리용역 근로자 인건비의 노임단가는 2016년 시급 5,613원에서 2017년 시급 6,470원으로 15.3% 인상되었다.

#### [2016~2017년도 청사관리용역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16년도 예산(A)             | 2017년도 예산(B)             | 증 감     |           |
|-------|--------------------------|--------------------------|---------|-----------|
|       |                          |                          | 금액(B-A) | 비율(B-A/A) |
| 총 용역비 | 15,214<br>(시급 5,613원 기준) | 18,501<br>(시급 6,470원 기준) | 3,287   | 21.6      |

자료: 법무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sup>2)</sup>에 따르면 청사관리용역 근로자의 노임단가는 시중노임단가<sup>3)</sup>(시급 8,329원)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법무부는 2017년 청사관리용역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시급 6,470원)과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인 시급 6,584원을 적용하여 지급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무부는 청사관리용역 예산 부족으로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 [청사관리용역 근로자 지급단가(시급) 비교]

(단위: 원)

| 구 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
| 시중노임단가  | 8,019 | 8,209 | 8,329 |
| 최저임금    | 5,580 | 6,030 | 6,470 |
| 실제 지급단가 | 5,710 | 6,159 | 6,584 |

자료: 법무부

2) 정부는 청소·경비 등 단순노무 용역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하여 국가정책조정회의(2011. 11. 25.)와 당정협의(2011. 11. 28.) 등을 거쳐 용역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방안을 담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발표(2011. 11. 28.)하였고, 공공부문 전체에 적용되는 규정을 마련하여 용역계약 시 업체선정·관리 준수사항 등을 명시하였다.

3) 청소·경비용역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의 단순노무 종사원(구 제조부분 보통인부) 노임을 기본급으로 적용하여 산정하였다.

동 사업의 2017년도 예산은 전년 대비 32억 8,700만원(21.6%) 증액되었고, 11억 4,100만원을 이·전용을 통하여 추가집행<sup>4)</sup>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중 노임단가를 적용하지 못하였다.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은 용역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정부의 방침을 담고 있으므로, 법무부는 향후 동 지침의 준수에 필요한 적정 수준의 예산을 편성·집행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

4) 2016년도에도 청사관리용역 근로자의 인건비 부족으로 타 사업에서 10억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는데, 이 경우에도 시중노임단가가 아닌 최저임금 수준으로 근로자 인건비를 지급하였다.

## 가. 현 황

법무부는 검사실을 검사, 수사관(검찰사무직) 1~3명, 실무관(사무운영직) 1명으로 구성하고 있는데, 실무관은 사무운영직(구 기능직)과 사무보조원(무기계약직)으로 구분된다. 사무운영직 예산은 검찰청운영 인건비(총액)<sup>1)</sup> 사업에 편성되어 있는 반면, 사무보조원 예산은 검찰국의 기본경비와 사업비에 분리 편성되어 있다.

[2017회계연도 검사실 사무보조원 인건비 등 편성 및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코드명)                | 2017년 |       | 2018년  |
|-------------------------|-------|-------|--------|
|                         | 예산    | 결산    | 예산     |
| 검찰수사지원(1335-300)        | 2,765 | 2,722 | 3,691  |
| 사무보조원 상용임금              | 2,284 | 2,280 | 2,894  |
| 사무보조원 복리후생비             | 235   | 235   | 259    |
| 사무보조원 고용부담금             | 246   | 207   | 538    |
| 수사일반(1335-301)          | 3,810 | 3,735 | 12,842 |
| 사무보조원 상용임금              | 3,391 | 3,331 | 10,631 |
| 사무보조원 복리후생비             | 54    | 54    | 234    |
| 사무보조원 고용부담금             | 365   | 350   | 1,977  |
| 검찰청운영기본경비(총액)(7018-202) | 2,752 | 2,045 | 3,142  |
| 사무보조원 상용임금              | 2,446 | 1,817 | 2,613  |
| 사무보조원 복리후생비             | 43    | 43    | 43     |
| 사무보조원 고용부담금             | 263   | 185   | 486    |

자료: 법무부

신봉진 예산분석관(bjshin@assembly.go.kr, 788-4642)

1) 코드명: 일반회계 7002-101 / 법무부에 따르면 인건비 예산은 일반직 직급별 인원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사무운영직 예산의 편성내역만을 별도로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전국 소속기관에서 사무운영직 급여 지급내역을 별도로 산출한 결과 2017년 사무운영직 급여 집행액은 777억 6,500만원이다.

## 나. 분석의견

검사실 사무보조원의 인건비 등(상용임금, 복리후생비, 고용부담금)이 3개의 세부사업에 분리 편성되어 있으므로 통합적 관리 및 원활한 예·결산 심사를 위하여 단일 세부사업에 편성하여야 한다.

검사실 보조인력인 사무보조원의 인건비 등(상용임금, 복리후생비, 고용부담금)은 지원내용이 동일함에도 검찰수사지원, 수사일반, 검찰청 운영 기본경비에 분리 편성되어 있어 전체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특히, 동일한 성격의 경비가 기본경비(7018 소속기관 기본경비)와 사업비(1335 수사지원 및 역량 강화)로 구분되는 것은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향후 이를 단일 사업으로 통합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다.

### 가. 현 황

교정시설장비운용 및 현대화<sup>1)</sup> 사업은 전국 교정기관의 노후시설·장비의 유지보수, 수용관리 등에 필요한 장비 구입 및 전자경비시스템 설치, 수용거실 출입문 자동화 등 시설·장비를 현대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2017년도 예산현액 866억 4,100만원 중 집행액은 866억 700만원이고 3,400만원이 불용되었다.

법무부는 동 사업을 통해 노후시설 유지보수 및 신축건물 신규장비 설치 등을 위하여 시설장비유지비(210-09목) 102억 9,300만원, 공사비(420-03목) 642억 1,800만원, 자산취득비(430-01목) 99억 3,400만원 등을 집행하였다.

[2017회계연도 교정시설장비운용 및 현대화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예산액    |        | 전년도<br>이월액 | 이·전용<br>등 | 예비비 | 예산현액   | 집행액    | 다음연도<br>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     |            |           |     |        |        |             |     |
| 교정시설장비<br>운용 및 현대화   | 48,631 | 87,543 | 0          | △902      | 0   | 86,641 | 86,607 | 0           | 34  |
| 시설장비유지비<br>(210-09목) | 10,281 | 10,281 | 0          | 12        | 0   | 10,293 | 10,293 | 0           | 0   |
| 공사비<br>(420-03목)     | 26,665 | 65,077 | 0          | △828      | 0   | 64,249 | 64,218 | 0           | 31  |
| 자산취득비<br>(430-01목)   | 9,935  | 9,935  | 0          | 0         | 0   | 9,935  | 9,934  | 0           | 1   |

자료: 법무부

### 나. 분석의견

법무부는 신축 서울동부구치소 공사 및 운영 과정에서 공사비로 집행해야 할 비용을 시설장비유지비로 집행하는 등 예산 집행지침 및 「국가재정법」상 절차를 준수

신봉진 예산분석관(bjshin@assembly.go.kr, 788-4642)

1) 코드명: 일반회계 1531-302

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각종 신규 시설 구축에 따른 시설장비유지비 집행에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

법무부는 완공된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서 1977년 개청한 성동구치소를 송파구 문정지구 법조타운 건물(2017.6. 완공)로 이전(2017.6.26.)하였고, 명칭을 서울동부구치소로 변경하였다. 법무부는 서울동부구치소 공사비 및 운영비 등으로 2017년에 총 30억 8,600만원을 집행하였다.

[2017년 서울동부구치소 공사 및 운영 관련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 예산액   | 집행액   |
|------------------|-------|-------|
| 일반수용비(210-01목)   | 456   | 456   |
| 시설장비유지비(210-09목) | 155   | 155   |
| 공사비(420-03목)     | 775   | 775   |
| 자산취득비(430-01목)   | 1,700 | 1,700 |
| 합 계              | 3,086 | 3,086 |

자료: 법무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건물 및 건축 설비 등 시설물의 유지보수비는 시설장비유지비로 집행하고,<sup>2)</sup> 건축물 신축이나 전신전화 시설비, 선로시설비는 공사비로 집행하도록 규정<sup>3)</sup>하고 있다.

그런데 서울동부구치소는 2017년 6월에 완공된 신축건물로서, 법무부는 서울동부구치소 사무실 번호키(게이트맨) 설치, 철조망 보강 설치, 배관 준설, 블라인드 및 앵글 설치, 통신설비 구입, 계단 설치 등 인테리어 및 각종 시설물 신규 설치에 필요한 비용 총 4,896만원을 공사비(420-03목)에서 지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동부구치소 운영 과정 중에 발생하는 시설물 및 비품 수선 소요를 충당하기 위한 시설장비유지비(210-09)로 집행하였다.

이와 같이 신규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비 비목으로 전용하지 않고 시설장비유지비로 집행한 것은 집행지침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가재정법」상 전용절차<sup>4)</sup>를 규정해 놓은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부적절한 집행으로 생각된다.

2) 기획재정부,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2017.1, p.156.

3) 기획재정부,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2017.1, p.270.

[2017년 서울동부구치소 시설장비유지비 집행 주요내역]

(단위: 원)

| 연번  | 일 자        | 건 명                                           | 집행액        | 비고  |
|-----|------------|-----------------------------------------------|------------|-----|
| 1   | 2017.1.18  | 여직원 탈의실 게이트맨 설치                               | 120,000    | 공사비 |
| 2   | 2017.1.18  | 이전TF팀 사무실 게이트맨 설치                             | 120,000    | 공사비 |
| 3   | 2017.2.8   | 도주방지 주복도 철조망 보강 설치 공사                         | 8,629,500  | 공사비 |
| 4   | 2017.2.17  | 거실현황판(아크릴+컷팅)                                 | 376,200    | 공사비 |
| 5   | 2017.2.20  | 교회당 출입문 게이트맨 설치                               | 210,000    | 공사비 |
| 6   | 2017.2.20  | 보안행정 앞 화장실 오수배관 준설작업                          | 300,000    | 공사비 |
| 7   | 2017.2.28  | 체육공원 관리사무소 통로 벽면 개수 공사                        | 1,518,000  | 공사비 |
| 8   | 2017.2.28  | 직원식당 내 유리 강화문 교체 및 비상대<br>기숙소 출입문 도어클로저 교체 설치 | 363,000    | 공사비 |
| 9   | 2017.3.10  | 정문 출입 자동문 무선리모컨 설치 공사                         | 1,210,000  | 공사비 |
| 10  | 2017.3.16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교도관실 구치감<br>출입문 게이트맨 설치 공사          | 794,000    | 공사비 |
| 11  | 2017.4.5   | 여 수용동 정화조 오수관 준설작업                            | 1,700,000  | 공사비 |
| 12  | 2017.6.8   | 대강당 옆 출입문 게이트맨 설치                             | 150,000    | 공사비 |
| 13  | 2017.6.28  | 수용자 거실 선풍기 벽걸이브라켓 타공 및 설치                     | 6,000,000  | 공사비 |
| 14  | 2017.7.3   | 지하 기계사무실 내 블라인드 설치                            | 115,500    | 공사비 |
| 15  | 2017.7.3   | 분류심사과장실 창호 블라인드 설치                            | 147,400    | 공사비 |
| 16  | 2017.7.14  | 침구 창고 등 앵글 설치 작업                              | 14,887,400 | 공사비 |
| 17  | 2017.7.14  | 출정과 사무실 및 차량사무실 블라인드 설치                       | 498,300    | 공사비 |
| 18  | 2017.7.24  | 보안과 휴게실 등 블라인드 설치 작업                          | 1,735,800  | 공사비 |
| 19  | 2017.7.24  | 수용자 취사장 TV 브라켓 설치                             | 130,000    | 공사비 |
| 20  | 2017.8.8   | 접견진행실 회차 알림 전광판 통신설비 구입                       | 290,400    | 공사비 |
| 21  | 2017.8.22  | 기계실, 전기실 책상 유리 설치                             | 412,500    | 공사비 |
| 22  | 2017.8.22  | 비상벨 외 2건                                      | 467,500    | 공사비 |
| 23  | 2017.9.5   | 보안과 여 수용관리팀 창고 앵글 설치                          | 587,400    | 공사비 |
| 24  | 2017.9.11  | 의료과 방사선기기 인터록 설치 작업                           | 165,000    | 공사비 |
| 25  | 2017.9.11  | 보안과 수용관리팀실 등 게이트맨 설치                          | 4,004,000  | 공사비 |
| 26  | 2017.10.16 | 분류심사과 상담실 등 롤스크린 설치 작업                        | 261,800    | 공사비 |
| 27  | 2017.10.23 | 연무관 강당계단 제작 설치                                | 500,000    | 공사비 |
| 28  | 2017.11.6  | 공기조화기 등 구리스주입기 설치                             | 1,980,000  | 공사비 |
| 29  | 2017.11.13 | 직원탈의실 등 번호키(게이트맨) 설치                          | 1,287,000  | 공사비 |
| 합 계 |            |                                               | 48,960,700 | -   |

자료: 법무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4) 「국가재정법」

제46조(예산의 전용)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 간의 유사성이 있는지, 재해대책 재원 등으로 사용할 시급한 필요가 있는지,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의 충당을 위한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법무부는 2016회계연도 예산 집행 시에도 시설장비유지비의 목적 외 집행 부적정 사례<sup>5)</sup>로 감사원으로부터 주의요구(2017.4.21.)를 받은 바 있다.

따라서 법무부는 향후 각종 신규 시설 구축에 따른 시설장비유지비 집행에 있어 정부의 예산 집행지침 및 편성지침, 「국가재정법」상 절차에 벗어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

5) 법무부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 등 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사비로 집행하여야 할 “신축청사 통신 및 전화설비 설치비” 402만원을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집행(2016.4.4.)하는 등 총 1억 3,583만원의 시설장비유지비를 예산편성 목적과 다르게 시설비나 감리비로 집행하였다.

갱생보호활동<sup>1)</sup> 사업은 사회적 취약계층인 무의탁·무연고 출소자에 대한 숙식 보호,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창업지원, 주거지원, 원호지원, 가족희망사업, 심리상담 및 치료, 사회성향상 교육, 멘토링 및 사후지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민간경상보조로 지원되고 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sup>2)</sup>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무부 소관 기타공공기관으로 갱생보호사업, 갱생보호제도 조사·연구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동 사업의 2017년 추경예산액은 281억 8,300만원이었으며 전액 집행되었다.

[2017회계연도 갱생보호활동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예산액    |        | 전년도<br>이월액 | 이·전용<br>등 | 예산현액   | 집행액    | 다음연도<br>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     |            |           |        |        |             |     |
| 갱생보호활동 | 27,218 | 28,183 | 0          | 0         | 28,183 | 28,183 | 0           | 0   |

자료: 법무부

## 10-1. 급여성 갱생보호수당 경상비 내 집행

### 가. 현황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수지차보전기관<sup>3)</sup>으로서 갱생보호활동 사업비와 자체 수입<sup>4)</sup>으로 기관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사업비, 경상비를 충당하고 있다.

이병철 예산분석관(bclee@assembly.go.kr, 788-3745)

1) 코드명: 일반회계 1633-300

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설립) 갱생보호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을 설립한다.

3) 수지차보전기관은 지출예산 총액에서 기관 운영으로 발생하는 자체수입예산을 차감한 나머지 부분을 출연·보조금으로 지원받는다.

2017회계연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체 기관예산은 갱생보호활동 사업비 267억 6,900만원, 자체수입 52억 100만원으로 총 319억 7,000만원이다. 결산 결과 인건비에 113억 4,600만원, 경상비에 7억 1,700만원, 사업비에 199억 700만원을 지출하였다.

[2017회계연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수입 및 지출 현황]

(단위:백만원)

| 구 분 |       | 본예산    | 추경     | 주요 집행 내역                                         |
|-----|-------|--------|--------|--------------------------------------------------|
| 수입  | 국고보조금 | 25,804 | 26,769 | 갱생보호활동(1633-300) 사업                              |
|     | 자체자금  | 5,201  | 5,201  | 부동산임대수입, 기증금, 바자회, 이자수입, 기타수입 등                  |
|     | 합계    | 31,005 | 31,970 |                                                  |
| 지출  | 인건비   | 11,346 | 11,346 | 봉급, 상여금, 정액수당, 직급보조비, 복리후생비, 퇴직금, 시간외수당, 법정부담금 등 |
|     | 경상비   | 717    | 717    | 본부운영경비, 일반업무비, 맞춤형복지, 갱생보호수당 등                   |
|     | 사업비   | 18,942 | 19,907 | 출소자 숙식제공, 원호지원, 취업지원, 창업지원, 주거지원, 심리상담 등         |
|     | 합계    | 31,005 | 31,970 |                                                  |

자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 나. 분석의견

급여성 경비인 갱생보호수당을 인건비가 아닌 경상비에 편성하여 지급해오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기획재정부 예산 집행 지침에 따르면 경상비로 편성이 가능한 항목은 손익계산서상의 판매비와 관리비 중 기관운영 또는 영업유지를 위해 매년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경비로서,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교육훈련비, 여비교통비, 수선유지비, 통신비 등이다.<sup>5)</sup> 그리고 명칭여하를 막론하고 급여성 경비는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이외의 비목에서 지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sup>6)</sup>

4)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자체수입으로는 부동산임대수입, 기증금, 바자회, 이자수입, 기타수입 등이 있다.

5) 기획재정부, 「2017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그러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특수근무수당 성격의 급여성 경비인 갱생보호수당을 경상비에 편성하여 현재까지 직원들에게 지급해오고 있는 것은 정부의 예산편성 지침과 맞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2017년도에 직원들에게 지급된 갱생보호수당은 총 3억 2,507만원이며, 2011년 이후 현재까지 총 18억 2,200만원이 지급되었다.<sup>7)</sup>

[2011~2017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상비 집행현황]

(단위: 천원)

| 연 도         |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
| 경<br>상<br>비 | 갱생보호수당 | 196,748 | 231,413 | 246,798 | 261,071 | 270,873 | 290,426 | 325,068 |
|             | 맞춤형복지  | 79,248  | 85,807  | 95,344  | 100,311 | 127,205 | 113,005 | 121,848 |
|             | 기본운영비  | 181,708 | 218,681 | 234,938 | 266,095 | 284,236 | 283,382 | 252,702 |
|             | 간담회비   | 0       | 0       | 0       | 0       | 0       | 0       | 17,342  |
| 합계          |        | 457,704 | 535,901 | 577,080 | 627,477 | 682,314 | 686,813 | 716,960 |

자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타 공공기관에 비해 공단 임금이 열악한 점을<sup>8)</sup> 개선하고자 급여 보전책으로 복리후생비 성격의 갱생보호수당을 경상비내 편성하여 지급하였다고 밝히고 있으나, 정부의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과 부합하지 않으므로 인건비 항목으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

## 10-2. 경북기술교육원 건립비 부적정 집행

### 가. 현황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출소자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해 지역별 분야별 기술교육원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기술교육원은 지역 특화 산업과 연계하여 기능

6) 기획재정부, 「2017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

7) 2017년도 기준으로 직원 1인당 163만원의 갱생보호수당이 지급되었다.

8) 2017회계연도 결산기준 공단의 직원 평균 보수는 4,775만원으로 기타공공기관 직원평균 보수인 6,580만원과 비교할 때 72.6% 수준이다.

훈련, 취업알선 등을 실시하며, 법무보호대상자의 특성을 감안하여 독립공간에서 기능훈련을 지원하고 있다.

2012년 인천과 울산에 용접기능훈련을 위한 기술교육원을 개원한 이후 전북, 경남, 경기남부, 충남에 추가로 건립되었다. 2017년 전기기능 기술교육을 위한 경북 기술교육원이 완공되면서 현재는 총 7개 기술교육원이 운영되고 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기술교육원 운영 현황]

(단위: 백만원, m<sup>2</sup>, 명)

| 설립연도 | 지역기술원 | 특화분야  | 건립비용  | 대지면적     | 2017년 교육 실적 |    |    |
|------|-------|-------|-------|----------|-------------|----|----|
|      |       |       |       |          | 입교          | 수료 | 취업 |
| 2012 | 인천    | 용접기능  | 1,410 | 2,589.5  | 107         | 93 | 32 |
| 2012 | 울산    | 용접기능  | 2,750 | 580.4    | 126         | 99 | 52 |
| 2014 | 전북    | 영농기능  | 3,903 | 19,794.0 | 72          | 54 | 17 |
| 2015 | 경남    | 기계조립  | 2,800 | 3,037.0  | 89          | 56 | 8  |
| 2016 | 경기남부  | 여성특화  | -     | 604.0    | 102         | 73 | 26 |
| 2016 | 충남    | 자동차정비 | 2,800 | 5,926.0  | 51          | 39 | 12 |
| 2017 | 경북    | 전기기능  | 3,925 | 2,878.4  | -           | -  | -  |

자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 나. 분석의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경북기술교육원을 건립하면서 사업 계획에 없는 차량 구입비 등으로 집행한 문제점이 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2015년 경북기술교육원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6~2017년 공사를 거쳐 2018년 3월 개원하였다. 경북기술교육원 건립 예산은 갯생보호활동 사업비에서 부지매입비, 설계비, 건축비, 감리비, 장비구입비, 집기비품비, 부대경비(수수료 등) 등에 총 40억원 중 39억 2,500만원을 집행하였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기술교육원 건립 계획 대비 실행 현황]

(단위: 천원)

|         | 집행 항목            | 지출계획(A)   | 실집행액(B)   | 잔액(A-B)  |
|---------|------------------|-----------|-----------|----------|
| 2016년   | 부지매입비            | 1,091,585 | 1,021,832 | △69,753  |
|         | 설계용역 및 인허가 기타경비  | 82,415    | 77,168    | △5,247   |
|         | 소계(A)            | 1,174,000 | 1,099,000 | △75,000  |
| 2017년   | 건축비(건축,전기,통신,소방) | 2,400,000 | 2,410,769 | 10,769   |
|         | 감리비 (건축,전기)      | 31,000    | 30,500    | △500     |
|         | 장비구입비            | 251,550   | 141,998   | △109,552 |
|         | 집기비품비            | 128,150   | 234,617   | 106,467  |
|         | 부대경비(수수료 등)      | 15,300    | 8,116     | △7,184   |
|         | 소계(B)            | 2,826,000 | 2,826,000 | 0        |
| 합계(A+B) |                  | 4,000,000 | 3,925,000 | △75,000  |

자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법무부에 제출된 경북기술교육원 건립비 지출계획과 실제 지출내역을 비교해보면 장비구입비 지출은 1억 955만원이 감소했으나, 집기비품비는 계획 대비 집행액이 1억 647만원 증가하였다. 그런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집기비품비를 추가로 집행하면서 경북기술교육원 건립 계획에는 없는 업무용 차량 2대, 차량보험료, 취득세 등 총 7,339만원을 주무부처 승인 없이 연말에 집행한 문제점이 있다.<sup>9)</sup>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기술교육원 건립 계획 외 집행 내용]

(단위: 원)

| 지출항목                  | 지출일자          | 금액         | 지출 내용                   |
|-----------------------|---------------|------------|-------------------------|
| 경북기술교육원 건립<br>(집기비품비) | 2017년 12월 11일 | 34,637,000 | 경북지부 업무용차량 구입(카니발)      |
|                       | 2017년 12월 18일 | 499,060    | 경북지부 업무용차량(카니발) 자동차보험가입 |
|                       | 2017년 12월 22일 | 2,266,170  | 경북지부 업무용차량(카니발) 등록관련 지출 |
|                       | 2017년 12월 27일 | 34,065,000 | 경북지부 업무용차량(쏘나타) 구입 지출   |
|                       | 2017년 12월 28일 | 1,097,950  | 경북지부 업무용차량(쏘나타) 자동차보험   |
|                       | 2017년 12월 29일 | 829,770    | 경북지부 업무용차량(LF쏘나타) 취득세 등 |
| 합계                    |               | 73,394,950 |                         |

자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법무부는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갱생보호활동 사업의 면밀한 계획 수립과 함께 집행·정산 등 사업비 관리감독에도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9)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경북기술교육원 건립 구성요소로 판단하여 집행하였지만, 자산취득비가 아닌 집기비품비에서 업무용 차량 구입비를 처리한 점에서 주의가 부족했다고 밝히고 있다.



**법제처**





## 1

## 현 황

## 가. 세입·세출 결산

2017회계연도 법제처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0원이며, 8,7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8%인 700만원을 수납하고 8,000만원을 미수납하였다.

[2017회계연도 법제처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 구분   | 예산  |    | 예산현액 | 징수<br>결정액(A) | 수납액<br>(B) | 미수납액 | 불납<br>결손액 | 수납률<br>(B/A) |
|------|-----|----|------|--------------|------------|------|-----------|--------------|
|      | 본예산 | 추경 |      |              |            |      |           |              |
| 일반회계 | 0   | 0  | 0    | 87           | 7          | 80   | 0         | 8            |

자료: 법제처

2017회계연도 법제처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326억 6,000만원이며, 이 중 97.5%인 318억 5,300만원을 지출하고 8억 6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7회계연도 법제처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 구분   | 예산     |        | 예산<br>현액(A) | 지출액<br>(B) | 다음연도<br>이월액 | 불용액 | 집행률<br>(B/A) |
|------|--------|--------|-------------|------------|-------------|-----|--------------|
|      | 본예산    | 추경     |             |            |             |     |              |
| 일반회계 | 32,215 | 32,215 | 32,660      | 31,853     | 0           | 806 | 97.5         |

자료: 법제처

## 나. 재무 결산

2017회계연도 말 현재 법제처의 자산은 168억 9,787만원, 부채는 1,971만원으로 순자산은 168억 7,815만원이다.

자산은 전기 대비 8억 5,180만원(4.8%) 감소한 것으로 유동자산 5억 4,424만원, 투자자산 883만원, 일반유형자산 102억 2,530만원 등으로 구성되며 토지 자산재평가, 기계장치 및 집기, 비품 등의 신규 취득 감소로 일반유형자산이 1억 2,840만원, 장기임차보증금 기말 유동성 대체로 기타비유동자산이 3억 8,000만원, 소프트웨어에 대한 감가상각 등으로 무형자산이 8억 5,080만원 감소한 것에 기인한다.

부채는 전기 대비 508만원(20.0%) 감소한 것으로 유동부채 1,971만원으로 구성되며 퇴직급여충당부채인 장기충당부채가 508만원 감소한 것에 기인한다.

[2017회계연도 법제처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17<br>회계연도 | 2016<br>회계연도 | 전년도 대비 증감 |         |
|--------------|--------------|--------------|-----------|---------|
|              |              |              | 금 액       | 비 율     |
| 자 산          | 16,898       | 17,750       | △852      | △4.8    |
| Ⅰ. 유동자산      | 544          | 46           | 498       | 1,082.6 |
| Ⅱ. 투자자산      | 9            | 0            | 9         | 0.0     |
| Ⅲ. 일반유형자산    | 10,225       | 10,354       | △129      | △1.2    |
| Ⅳ. 사회기반시설    | 0            | 0            | 0         | 0.0     |
| Ⅴ. 무형자산      | 6,118        | 6,968        | △850      | △12.2   |
| Ⅵ. 기타비유동자산   | 2            | 382          | △380      | △99.5   |
| 부 채          | 20           | 25           | △5        | △20.0   |
| Ⅰ. 유동부채      | 20           | 20           | 0         | 0.0     |
| Ⅱ. 장기차입부채    | 0            | 0            | 0         | 0.0     |
| Ⅲ. 장기충당부채    | 0            | 5            | △5        | △100.0  |
| Ⅳ. 기타비유동부채   | 0            | 0            | 0         | 0.0     |
| 순 자 산        | 16,878       | 17,725       | △847      | △4.8    |
| Ⅰ. 기본순자산     | 3,973        | 3,973        | 0         | 0.0     |
| Ⅱ. 적립금 및 양여금 | 11,334       | 12,181       | △847      | △4.8    |
| Ⅲ. 순자산 조정    | 1,571        | 1,571        | 0         | 0.0     |

자료: 법제처

법제처는 2017년도 재정운영결과 재정지출(비용)이 재정수입(수익)을 초과하여 순비용이 349억 9,080만원 발생하였다. 비용은 프로그램순원가 57억 9,363만원, 관리운영비 292억 5만원, 비배분비용 533만원으로 구성되며, 수익은 비배분수익 822만원으로 구성된다.

재정운영순원가(프로그램순원가 + 관리운영비 + 비배분비용 - 비배분수익)는 전년 대비 17억 5,792만원(5.3%) 증가한 349억 9,080만원이며, 이는 사업비 예산지출액의 증가로 프로그램 순원가 709만원 증가 및 정·현원의 증가로 관리 운영비 10억 6,738만원 증가에 기인한다.

총 2개의 프로그램 중 프로그램순원가는 정부입법총괄지원 프로그램(57억 9,400만원)과 법제행정지원(291억 2,2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관리운영비는 인건비 172억 4,185만원과 경비 119억 5,82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배분비용은 대손상각비 534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7회계연도 법제처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17<br>회계연도 | 2016<br>회계연도 | 전년도 대비 증감 |       |
|--------------------------------|--------------|--------------|-----------|-------|
|                                |              |              | 금액        | 비율    |
| I. 프로그램순원가                     | 5,794        | 5,085        | 709       | 13.9  |
| II. 관리운영비                      | 29,200       | 28,133       | 1,067     | 3.8   |
| III. 비배분비용                     | 5            | 17           | △12       | △70.6 |
| IV. 비배분수익                      | 8            | 2            | 6         | 300.0 |
| V. 재정운영순원가( I + II + III - IV) | 34,991       | 33,233       | 1,758     | 5.3   |
| VI. 비교환수익 등                    | 0            | 0            | 0         | 0.0   |
| VII. 재정운영결과( V - VI)           | 34,991       | 33,233       | 1,758     | 5.3   |

자료: 법제처

법제처의 2017년도 기초순자산은 177억 2,488만원이고, 기말순자산은 168억 7,815만원으로 기초 대비 8억 4,673만원(4.8%) 감소하였는데, 이는 순자산 차감항목인 재정운영결과가 349억 9,100만원이고, 순자산 가산항목인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이 341억 4,400만원이기 때문이다.

한편, 2017회계연도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국고수입, 제재금수익, 기타재원조달등 재원의 조달 349억 9,100만원과 국고이전지출로 구성된 재원의 이전 727만원으로 구성되며, 조정항목은 없다.

[2017회계연도 법제처 순자산변동표 요약]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17<br>회계연도 | 2016<br>회계연도 | 전년도 대비 증감 |        |
|------------------------------|--------------|--------------|-----------|--------|
|                              |              |              | 금액        | 비율     |
| I. 기초순자산                     | 17,725       | 16,696       | 1,029     | 6.2    |
| II. 재정운영결과                   | 34,991       | 33,233       | 1,758     | 5.3    |
| III. 재원의 조달 및 이전             | 34,144       | 32,691       | 1,453     | 4.4    |
| IV. 조정항목                     | 0            | 1,571        | △1,571    | △100.0 |
| V. 기말순자산( I - II + III + IV) | 16,878       | 17,725       | △847      | △4.8   |

자료: 법제처

법제처의 2017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된 사업으로는 ① 법제정비 사업, ② 법제교육 및 법제전문인력육성 사업 등이 있다.

법제정비 사업은 법제정비 내역사업으로 편성된 사전입법지원 사업 예산(2억 7500만원)이 법령심사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인 법령입법지원 사업으로 재편성됨에 따라 2억 8,700만원이 감액(15억 3,400만원 → 12억 4,700만원) 되었고, 법제교육 및 법제전문인력육성 사업은 기획재정부 구조조정 방침에 따른 자체 예산 삭감을 통해 사이버교육 신규 콘텐츠 개발비 등 1억 3,400만원이 감액(11억 1,800만원 → 9억 8,400만원)되었다.

국회 심사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된 사업으로는 ①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 사업, ② 법령심사지원 사업, ③ 외국법제기관교류 사업 등이 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 사업은 생활법령정보 다국어 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3억 6,000만원이 증액(7억 8,200만원 → 11억 4,200만원)되었고, 법령심사지원 사업은 법령 입법 영향 분석 일반연구비가 신설되는 등 2억 8,200만원이 증액(1억 900만원 → 3억 9,100만원)되었으며, 외국법제기관교류 사업은 개도국 법제정비 지원을 추진하기 위하여 4,400만원이 증액(1억 4,600만원 → 1억 9,000만원)되었다.

법제처는 ① 체계적인 법제 정비와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을 통한 **입법 관리 강화와 법제지원 확대**, ② 신속·원활한 법제행정 지원을 통한 **정부입법 행정지원 강화** 등을 2017년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예산을 집행하였다.

그러나 2017회계연도 법제처 소관 결산에 대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첫째, 총액인건비 대상 인건비 사업의 집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법제처는 총액인건비 비대상사업으로부터의 이·전용 등을 최소화하고 기 확정된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인건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별도정원의 규모가 비대하고 장기적·지속적 필요성을 가지는 바, 별도정원 규모의 적정성 및 직제 개편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둘째, 법제처는 2013년 이래 세계법제정보센터의 운영 및 홍보 업무를 (재)법령정보관리원에 위탁하고 있으며, 매년 위탁사업의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성과지표와 목표치가 해마다 변동되어 성과평가 결과를 연속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성과평가 기준이 적절하게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한 진단을 통해 효과적인 성과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 II

## 개별 사업 분석

### 1

### 인건비(총액인건비 대상) 사업의 집행 및 운영상 문제점

#### 가. 현 황

인건비(총액인건비 대상) 사업<sup>1)</sup>은 법제처의 직제상 정원, 별도정원 등에게 봉급 및 각종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사업이다. 법제처는 2017년도 예산현액 165억 3,500만원 중 165억 2,800만원을 집행하였고 7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7회계연도 인건비(총액인건비대상)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예산     |        | 전년도<br>이월액 | 이·전용<br>등  | 예산현액   | 집행액    | 다음연도<br>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     |            |            |        |        |             |     |
| 인건비<br>(총액인건비대상) | 16,086 | 16,086 | 0          | 522<br>△73 | 16,535 | 16,528 | 0           | 7   |

자료: 법제처

#### 나. 분석의견

인건비(총액인건비 대상) 사업의 집행 및 운영에 있어서 법제처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법제처는 기 확정된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인건비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영미 예산분석관(ymlee@assembly.go.kr, 788-4640)

1) 코드명: 일반회계 7001-100

법제처는 ① 유학·육아 휴직자의 조기 복귀, ② 헌법개정지원단(現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지원단)<sup>2)</sup> 지원을 위한 별도정원 4명 파견, ③ 자치법제 지원업무 강화를 위한 수시직제 2명 증원, ④ 경상남도과 울산광역시에의 법제협력관<sup>3)</sup> 2명 신규 파견 등으로 인건비 부족액이 발생하자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총액인건비 비대상 사업에서의 전용을 통해 이를 일부 충당하였다.

구체적으로, 법제처는 인건비 부족분 충당을 위해 총 4억 4,951만원을 인건비(총액인건비 대상)로 전용하였는데, 이 중 87.6%에 해당하는 3억 9,361만원이 총액인건비 비대상사업으로부터 전용되었다.

[인건비(총액인건비 대상)로의 전용 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 사업명                           | 세목              | 금액   |
|----------------|-------------------------------|-----------------|------|
| 총액인건비<br>대상사업  | 기관운영기본경비(총액)<br>(7011-200)    | 특근매식비(210-05)   | 8.0  |
|                |                               | 기타운영비(210-16)   | 1.5  |
|                |                               | 직책수행경비(250-02)  | 30.4 |
|                | 기획조정관실기본경비(총액)<br>(7011-202)  | 특근매식비(210-05)   | 2.0  |
|                | 법령해석정보국기본경비(총액)<br>(7011-206) | 특근매식비(210-05)   | 12.0 |
|                | 법제지원단기본경비(총액)<br>(7011-207)   | 특근매식비(210-05)   | 2.0  |
|                | 소계                            |                 | 55.9 |
| 총액인건비<br>비대상사업 | 기관운영기본경비<br>(7011-250)        | 일반수용비(210-01)   | 18.0 |
|                |                               | 공공요금및제세(210-02) | 3.5  |
|                |                               | 임차료(210-07)     | 23.5 |
|                |                               | 유류비(210-08)     | 3.5  |
|                |                               | 시설장비유지비(210-09) | 35.0 |
|                |                               | 국외교육여비(220-03)  | 2.6  |
|                |                               | 공사비(420-03)     | 10   |
|                |                               | 무형자산(440-00)    | 30   |

2) 헌법개정지원단은 헌법 개정에 관한 정부입장을 마련하기 위한 헌법개정지원협의회를 지원하기 위해 2017년 2월 신설되었다.

3) 법제협력관은 국가법령 및 자치법규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각 지자체에 파견되어 ① 지자체 정책 지원, ② 자치법규 입안 및 집행 지원, ③ 상시 법제교육 및 소통을 담당하는 법제 전문인력을 의미한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사업명                       | 세목             | 금액    |
|----|---------------------------|----------------|-------|
|    | 사회복무요원운용<br>(7011-251)    | 급식비(210-04)    | 0.5   |
|    |                           | 국내여비(220-01)   | 0.2   |
|    | 기획조정관실기본경비<br>(7011-252)  | 임차료(210-07)    | 7.0   |
|    | 행정부제국기본경비<br>(7011-253)   | 국외업무여비(220-02) | 4.6   |
|    | 경제법제국기본경비<br>(7011-254)   | 국외업무여비(220-02) | 1.4   |
|    | 사회문화법제국기본경비<br>(7011-255) | 국외업무여비(220-02) | 0.9   |
|    | 법령해석정보국기본경비<br>(7011-256) | 일반수용비(210-01)  | 44.0  |
|    |                           | 국외업무여비(220-02) | 4.8   |
|    | 법제지원단기본경비<br>(7011-257)   | 일반수용비(210-01)  | 10.0  |
|    |                           | 국내여비(220-01)   | 1.0   |
|    | 법제업무정보화추진<br>(7033-500)   | 특근매식비(210-05)  | 6.7   |
|    |                           | 관리용역비(210-15)  | 186.4 |
| 소계 |                           |                | 393.6 |
| 총계 |                           |                | 449.5 |

자료: 법제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러나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총액인건비 비대상사업에서 대상사업으로의 이·전용 등 총액인건비 규모를 확대시키는 예산운영을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으며, 총액인건비에 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력 및 예산을 계획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총액인건비에 부족액이 발생하는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총액인건비 규모를 조정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sup>4)</sup>

따라서 법제처는 총액인건비 규모 증액을 불가피한 사유에 한정하고 있고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국정과제 수행을 최대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총액인건비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이·전용 등을 최소화하고 기 확정된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인건비 관련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4) 기획재정부,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2017, p.65.

둘째, 법제처는 현재 운영 중인 별도정원의 장기적·지속적 필요성에 대한 진단을 바탕으로 직제상 정원 대비 별도정원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에 따르면 직제상 정원은 원활한 업무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정규모가 유지되어야 하며,<sup>5)</sup> 파견 등으로 인하여 운용되는 별도정원이 장기적·지속적으로 필요한 경우 직제상 정원에 포함하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sup>6)</sup>

그러나 법제처는 다른 처 단위 기관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직제상 정원 대비 가장 많은 별도정원을 보유하고 있어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한 적정규모의 직제상 정원이 유지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될 소지가 있다. 또한 별도정원이 지속적인 필요성을 지니고 장기간에 걸쳐 파견되고 있어 이들을 직제상 정원으로 흡수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는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2017년 기준 법제처의 봉급예산은 총 116억 3000만원으로 이 중 별도정원 봉급은 15.8%에 해당하는 18억 3,400만원이다. 국가보훈처 11%, 인사혁신처 6.8%, 식품의약품안전처 5.1% 등 다른 처 단위 기관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법제처의 봉급 예산에서 별도정원 봉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

5)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조(조직과 정원의 관리목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은 그 업무의 성질과 양에 따라 업무수행을 위한 적정규모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조직은 다른 행정기관의 조직과 기능상의 중복이 없어야 하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편성되어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기능과 업무량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에 따라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도 조정되어야 한다.

6)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2(파견 등으로 인한 별도정원의 관리) ① 중앙행정기관(합의제 행정기관을 포함한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별도 정원(파견자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는 정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관별·계급별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종류별 별도 정원에 대하여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별도 정원 및 그 기간의 연장 등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및 제43조제2항에 따른 1년 이상의 파견근무: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3항 본문에 따른 파견의 협의 시

2. ~ 3. (생략)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한 별도정원이 장기적·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직제상 정원에 포함하여 운용할 수 있다.

[2017년 4개 처의 봉급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

| 기관명      | 봉급<br>총계 | 직제상정원<br>봉급 | 별도정원<br>봉급 | 기타<br>봉급 | 별도정원<br>봉급 비중 |
|----------|----------|-------------|------------|----------|---------------|
| 법제처      | 11,630   | 9,741       | 1,834      | 56       | 15.8          |
| 국가보훈처    | 18,774   | 16,438      | 2,065      | 271      | 11.0          |
| 인사혁신처    | 15,195   | 13,942      | 1,031      | 222      | 6.8           |
| 식품의약품안전처 | 83,490   | 78,460      | 4,226      | 804      | 5.1           |

자료: 각 기관별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각목명세서」

또한 법제처의 별도정원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기준 총 19명으로, 2017년에 신규로 파견된 6명을 제외한 나머지 13명분의 직위는 길게는 12년, 짧게는 2년 이상 유지되고 있다.

[2017년 별도정원 운영 현황]

| 연<br>번 | 파견기관                          | 직급   | 인원<br>(명) | 최초<br>파견일 | 총 파견기간<br>(2017.12.기준) | 주요업무                    |
|--------|-------------------------------|------|-----------|-----------|------------------------|-------------------------|
| 1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 3·4급 | 1         | '05. 3.   | 12년 10개월               | 교수요원                    |
| 2      | 제주특별자치도                       | 4급   | 1         | '06. 4.   | 11년 9개월                | 자치법규 입안정비 지원            |
| 3      | 국회 법제실                        | 고위나  | 1         | '07. 8.   | 10년 5개월                | 법률안 입안 자문               |
| 4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4급   | 1         | '08. 1.   | 10년                    | 법사위 소관 법률 검토            |
| 5      | KOTRA                         | 4급   | 1         | '08.12.   | 9년 1개월                 | 외국인투자관련<br>법령 상담        |
| 6      | 경기도                           | 3·4급 | 1         | '12. 1.   | 6년                     | 자치법규 입안정비 지원            |
| 7      | 민간합동규제개선추진단<br>(국조실)          | 5급   | 1         | '13. 8.   | 4년 5개월                 | 규제개선 과제 발굴<br>및 이해점검 지원 |
| 8      | 인천광역시                         | 4급   | 1         | '15. 4.   | 2년 9개월                 | 자치법규 입안정비 지원            |
| 9      | 충청북도                          | 4급   | 1         | '15. 4.   | 2년 9개월                 | 자치법규 입안정비 지원            |
| 10     | 충청남도                          | 4급   | 1         | '15. 4.   | 2년 9개월                 | 자치법규 입안정비 지원            |
| 11     | 전라북도                          | 4급   | 1         | '15. 4.   | 2년 9개월                 | 자치법규 입안정비 지원            |
| 12     | 평창동계올림픽                       | 4급   | 1         | '15. 7.   | 2년 6개월                 | 평창동계올림픽                 |
| 13     | 조직위원회                         | 6급   | 1         | '15. 7.   | 2년 6개월                 | 관련 법무행정                 |
| 14     | 경남도청                          | 4급   | 1         | '17. 3.   | 10개월                   | 자치법규 입안정비 지원            |
| 15     | 울산광역시                         | 4급   | 1         | '17. 3.   | 10개월                   | 자치법규 입안정비 지원            |
| 16     | 헌법개정지원단<br>(現국민헌법자문<br>특별위원회) | 고위나  | 1         | '17. 3.   | 10개월                   | 헌법개정 지원                 |
| 17     |                               | 3·4급 | 1         | '17. 3.   | 10개월                   |                         |
| 18     |                               | 4·5급 | 1         | '17. 3.   | 10개월                   |                         |
| 19     |                               | 5급   | 1         | '17. 3.   | 10개월                   |                         |

주: 각 지방자치단체로 파견되어 '자치법규 입안정비 지원'을 담당하는 인력은 법제협력관을 의미함

자료: 법제처

이에 대해 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업무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인 법제협력관<sup>7)</sup>을 별도정원으로 증원시켜온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2015년부터 대상 지자체를 확대하여 지속적으로 파견하고 있는 법제협력관을 직제상 정원으로 포함하여 관리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한 조직운영 방식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바, 향후 법제처는 별도정원 규모의 적정성 및 직제 개편의 필요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

7) 법제처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시행(2006.7.1. 시행)에 대비하여 관련 조례의 제·개정 추진 지원을 요청함에 따라 2006년 4월 최초로 지방자치단체에 별도정원을 파견하였으며, 2013년부터 제도적인 파견을 추진하여 2015년에 ‘법제협력관’으로써 인천, 충북, 충남에 인력을 파견하였다. 2018년 3월 현재 총 11개 시·도에 별도정원으로 법제협력관이 파견되어 있으며,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별도정원이 아닌 인사교류형태(법제처 4급 ↔ 세종시 5급)로 추진 중이다.

### 가. 현 황

세계법제 지원 사업은 해외법령, 법제 연구보고서, 입법동향 등 세계법제정보를 요약·번역하여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국가법령 외국어 번역 업무의 총괄·조정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세계법제정보서비스 사업<sup>1)</sup>의 내역사업이다. 법제처는 2017년도 예산현액 4억 2,200만원 중 3억 9,400만원을 집행하고 2,8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7회계연도 세계법제 지원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예산  |     | 전년도<br>이월액 | 이·전용<br>등 | 예산현액 | 집행액 | 다음연도<br>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  |            |           |      |     |             |     |
| 세계법제정보<br>서비스 | 598 | 598 | 0          | 0         | 598  | 546 | 0           | 52  |
| 세계법제 지원       | 422 | 422 | 0          | 0         | 422  | 394 | 0           | 28  |

자료: 법제처

### 나. 분석의견

법제처는 세계법제정보센터 운영 및 홍보 위탁사업 성과평가 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위탁사업 성과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세계 각국의 주요 법령과 제도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체계화, 국민·기업·정부기관의 대외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법제 자료 제공, 세계 법제 연구를 기반으로 한 우리나라 법제 및 정책 선진화 등을 목적으로 2004년 출범하였다.<sup>2)</sup>

이영미 예산분석관(ymlee@assembly.go.kr, 788-4640)

1) 코드명: 일반회계 1031-301

2) 세계법제정보센터는 2004년 ‘동북아 법령정보서비스센터’로 출범하여 2006년 ‘세계법제정보센터’로 확대·개편되었다.

법제처는 2013년 이래 세계법제정보센터의 운영 및 홍보 업무를 (재)법령정보관리원에 위탁하고 있으며, 위탁사업비로 2013년 1억 7,000만원, 2014년 1억 7,000만원, 2015년 1억 8,700만원, 2016년 3억 1,400만원, 2017년 3억 7,800만원을 집행하였다.

[2013~2017년 세계법제정보센터 위탁사업비 집행 현황]

(단위: 천원)

| 연도    | 위탁업체       | 계약기간             | 계약금액    | 조달수수료 | 집행액     |
|-------|------------|------------------|---------|-------|---------|
| 2013년 | (재)법령정보관리원 | 2013.1.~2013.12. | 168,000 | 1,587 | 169,587 |
| 2014년 | (재)법령정보관리원 | 2014.1.~2014.12. | 168,500 | 1,591 | 170,091 |
| 2015년 | (재)법령정보관리원 | 2015.1.~2015.12. | 185,200 | 1,718 | 186,918 |
| 2016년 | (재)법령정보관리원 | 2016.1.~2016.12. | 311,600 | 2,678 | 314,278 |
| 2017년 | (재)법령정보관리원 | 2017.1.~2017.12. | 375,000 | 3,160 | 378,160 |

자료: 법제처

법제처는 매년 수탁사업자인 (재)법령정보관리원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재)법령정보관리원은 총점 100점으로 만점을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성과지표와 목표치가 해마다 변동되어 성과평가 결과를 연속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예를 들어, 법령관련 연구보고서를 제작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맞춤형 콘텐츠 제작 및 제공’ 성과지표의 경우 2015년 연간 65건 이상, 2016년 연간 80건 이상, 2017년 연간 20건 이상으로 목표달성치가 해마다 변동되고 있다. 또한 중점관리 대상 국가·지역·기구의 법령관리 현행성 및 정확성 여부를 점검하여 제출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현행성 점검’ 지표의 경우 2015년 월 1회(연 12회) 제출에서 2016년 이후 연 4회 제출로 목표치가 하락하였으며, 국가·지역·기구별 법령체계도 URL의 현행성 여부에 대하여 점검하여 제출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법령체계도 URL 현행성 점검’ 지표의 경우에도 2015년 연 2회에서 2016년 이후 연 1회로 감소하였다.

[최근 3개년 위탁사업 성과평가 항목 및 결과]

| 성과평가 항목                                     |                               |                                   |             | 2015년        | 2016년       | 2017년       |
|---------------------------------------------|-------------------------------|-----------------------------------|-------------|--------------|-------------|-------------|
| 과업                                          | 세부 과제                         | 성과 지표                             | 목표치<br>및 결과 |              |             |             |
| 중점관리<br>대상<br>국가·<br>지역·<br>기구/<br>법령<br>관리 | 중점관리 대상<br>국가·지역·기구/<br>법령 제공 | 법령<br>(번역·요약본)<br>게시              | 목표치         | -            | 160건<br>이상  | 350건<br>이상  |
|                                             |                               |                                   | 실적          | -            | 296건        | 361건        |
|                                             |                               |                                   | 점수(배점)      | -            | 25(25)      | 25(25)      |
|                                             | 중점관리 대상<br>국가·지역·기구/<br>법령 관리 | 현행성 점검                            | 목표치         | 월 1회         | 연 4회        | 연 4회        |
|                                             |                               |                                   | 실적          | 월 1회         | 연 4회        | 연 4회        |
|                                             |                               |                                   | 점수(배점)      | 20(20)       | 5(5)        | 5(5)        |
|                                             | 언어권별 번역<br>기준 연구              | 번역기준<br>마련                        | 목표치         | -            | -           | 6건          |
|                                             |                               |                                   | 실적          | -            | -           | 6건          |
|                                             |                               |                                   | 점수(배점)      | -            | -           | 10(10)      |
| 국가·<br>지역·<br>기구별<br>법령<br>체계도<br>작성        | 국가·지역·기구별<br>법령체계도 관리         | 국가·지역·<br>기구별 법령<br>체계도<br>서비스 현황 | 목표치         | 월 1회<br>현황보고 | 10개국<br>추가  | 13개국<br>추가  |
|                                             |                               |                                   | 실적          | 월 1회<br>현황보고 | 10개국<br>추가  | 13개국<br>추가  |
|                                             |                               |                                   | 점수(배점)      | 20(20)       | 10(10)      | 5(5)        |
|                                             |                               | 법령체계도<br>URL 현행성<br>점검            | 목표치         | 연 2회         | 연 1회        | 연 1회        |
|                                             |                               |                                   | 실적          | 연 2회         | 연 1회        | 연 1회        |
|                                             |                               |                                   | 점수(배점)      | 10(10)       | 10(10)      | 5(5)        |
| 맞춤형<br>법령<br>정보의<br>제공                      | 맞춤형 법령정보<br>제공                | 법령정보<br>제공 요청에<br>대한 회신           | 목표치         | 5일 이내<br>회신  | 5일 이내<br>회신 | 5일 이내<br>회신 |
|                                             |                               |                                   | 실적          | 5일 이내        | 5일 이내       | 3.1일        |
|                                             |                               |                                   | 점수(배점)      | 10(10)       | 15(15)      | 20(20)      |
|                                             |                               | 맞춤형 법령<br>정보 제공<br>현황 제출          | 목표치         | 매월 1회        | 매월 1회       | 매월 1회       |
|                                             |                               |                                   | 실적          | 매월 1회        | 매월 1회       | 매월 1회       |
|                                             | 맞춤형 연구 보고<br>서 제공             | 맞춤형 콘텐<br>츠 제작 및<br>제공            | 점수(배점)      | 10(10)       | 5(5)        | 5(5)        |
|                                             |                               |                                   | 목표치         | 65건 이상       | 80건 이상      | 20건 이상      |
|                                             |                               |                                   | 실적          | 68건          | 80건         | 20건         |
| 세계법제<br>정보센터<br>운영·관리                       | 세계법제정보센터<br>활용도 제고            | 세계법제정보<br>센터 방문자<br>수(명)          | 점수(배점)      | 15(15)       | 15(15)      | 10(10)      |
|                                             |                               |                                   | 목표치         | 만족도          | 만족도         | 방문자         |
|                                             |                               |                                   | 실적          | 85점 이상       | 85점 이상      | 67만명 이상     |
| 세계법제<br>정보센터<br>홍보                          | 온라인·오프라인<br>홍보                | 홍보계획<br>준수여부                      | 점수(배점)      | 10(10)       | 10(10)      | 10(10)      |
|                                             |                               |                                   | 목표치         | 90.3점        | 90.38점      | 69만명        |
|                                             |                               |                                   | 실적          | 37지 준수       | 37지 준수      | 37지 준수      |
|                                             |                               |                                   | 점수(배점)      | 5(5)         | 5(5)        | 5(5)        |

자료: 법제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에 대해 법제처는 위탁업무의 세부 사업별 수요 변동에 따라 해마다 성과목표를 새롭게 수립하고 그에 적합한 성과지표 및 목표치를 설정하여 변동이 이루어졌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사업에 대한 성과목표치는 전년도 실적 혹은 과거의 목표치 증가율을 고려하여 점증적으로 결정되는 바, 당해 (재)법령정보관리원이 목표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달성하였는데도 차년도에 목표치가 하향 조정되거나 매해 목표치가 크게 변동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성과평가 방식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법제처는 세계법제정보센터 운영 및 홍보 위탁사업의 성과평가 기준이 적절하게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한 진단을 통해 효과적인 성과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 가. 현 황

법제교육 사업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공기관 법규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법령 입안 및 운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제전문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사업으로 법제교육 및 법제전문인력육성 사업<sup>1)</sup>의 내역사업이다. 법제처는 2017년도 예산현액 8억 1,200만원 중 7억 9,300만원을 집행하고 1,9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7회계연도 법제교육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예산  |     | 전년도<br>이월액 | 이·전용<br>등 | 예산현액 | 집행액 | 다음연도<br>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  |            |           |      |     |             |     |
| 법제교육 및<br>법제전문인력육성 | 984 | 984 | 0          | 0         | 984  | 950 | 0           | 34  |
| 법제교육               | 812 | 812 | 0          | 0         | 812  | 793 | 0           | 19  |

자료: 법제처

## 나. 분석의견

법제처는 사이버교육의 실적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요를 반영한 신규과목 개발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법제처는 국가·지방 공무원 및 교육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이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2017년 기준 총 14개 과목이 개설되어 있으며 19일 교육 과정으로 연간 12회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사이버교육의 최근 4개년 연도별 수료 인원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1만 8,204명, 2015년 1만 7,532명, 2016년 1만 6,807명, 2017년 5,222명 등 2014년

이영미 예산분석관(ymlee@assembly.go.kr, 788-4640)

1) 코드명: 일반회계 1034-300

이래 개설 과목 수가 8개에서 14개로 증가했음에도 매년 수료 인원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2017년의 경우 시스템 개편으로 3월부터 서비스가 제공되어 타 년도와 달리 12회가 아닌 10회만이 운영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수료 인원이 급감하였다.

또한 법제처가 2015년 1억 351만원을 집행하여 신규 개발한 3개 과목(△ 사례로 보는 규제법령 정비, △ 자치법규 입안실무, △ 행정쟁송 실무)과 2016년 1억 원을 집행하여 개발한 3개 과목(△ 공무원이 알아야 할 주요판례, △ 법령입안 사례연구1, △ 법령입안 사례연구2)의 경우 기존에 개설되어 있던 과목에 비하여 실적이 다소 부진한 상황이다.

[사이버교육 운영현황(2014~2017)]

(단위: 명)

| 과목명 |                 | 2014년<br>(8개 과목,<br>12회 운영) | 2015년<br>(8개 과목,<br>12회 운영) | 2016년<br>(11개 과목,<br>12회 운영) | 2017년<br>(14개 과목,<br>10회 운영) |
|-----|-----------------|-----------------------------|-----------------------------|------------------------------|------------------------------|
| 1   | 공무원이 알아야 할 기본법령 | 2,300                       | 2,576                       | 2,433                        | 863                          |
| 2   | 공무원이 알아야 할 주요판례 | (2016년도 개발)                 |                             |                              | 596                          |
| 3   | 민법기초            | 2,329                       | 2,118                       | 2,054                        | 776                          |
| 4   | 법령입안 사례연구1      | (2016년도 개발)                 |                             |                              | 77                           |
| 5   | 법령입안 사례연구2      | (2016년도 개발)                 |                             |                              | 26                           |
| 6   | 법제실무            | 2,570                       | 1,848                       | 1,251                        | 393                          |
| 7   | 사례로 보는 규제법령 정비  | (2015년도 개발)                 |                             | 1,053                        | 238                          |
| 8   | 실무행정법           | 1,913                       | 2,266                       | 1,815                        | 447                          |
| 9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 2,491                       | 2,545                       | 2,015                        | 713                          |
| 10  | 알기쉽게 풀어 쓴 행정절차법 | 2,232                       | 2,270                       | 1,709                        | 335                          |
| 11  | 자치법규 입안실무       | (2015년도 개발)                 |                             | 932                          | 178                          |
| 12  | 정부유권 해석실무       | 2,223                       | 1,851                       | 1,000                        | 97                           |
| 13  | 판례와 사례로 다가가는 헌법 | 2,146                       | 2,058                       | 1,564                        | 262                          |
| 14  | 행정쟁송 실무         | (2015년도 개발)                 |                             | 981                          | 221                          |
| 총계  |                 | 18,204                      | 17,532                      | 16,807                       | 5,222                        |

자료: 법제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법제처는 2017년의 실적 부진이 사이버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인사혁신처 국가 공무원인재개발원 나라배움터(<https://e-learning.nhi.go.kr/>)의 서버 과부하로 인한 일시적 오류 발생,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등 타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이버 교육과정의 증가, 기관별 교육훈련 내부화 경향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2014년 이래 지속적으로 수료인원이 감소하고 있고 신설한 과목에 대한 수요가 높지 않은 것은 사업 계획 및 운영 미흡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는 바, 향후 법제처는 만족도 조사 등을 바탕으로 실적 저조 원인에 대해 철저히 분석하고 수요를 반영한 신규과목을 개발하는 등 실적 제고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감사원



## 1

## 현 황

## 가. 세입·세출 결산

2017회계연도 감사원 소관 결산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된다.

총계 기준 세입 결산액은 총 8억 3,100만원으로 예산액 4억 4,000만원 대비 188.9%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3억 6,500만원이다.

[감사원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      | 예산액 |             | 징수<br>결정액 | 수납액<br>(B) | 미수납액 | 불납<br>결손액 | 수납률<br>(B/A) |
|------|-----|-------------|-----------|------------|------|-----------|--------------|
|      | 본예산 | 추경예산<br>(A) |           |            |      |           |              |
| 일반회계 | 440 | 440         | 1,196     | 831        | 365  | -         | 188.9        |

자료: 감사원

총계 기준 세출 결산액은 총 1,209억 3,600만원으로 예산현액 1,262억 900만원 대비 95.8%를 집행하였으며, 이월액 26억 3,400만원, 불용액 26억 3,900만원이 각각 발생하였다.

[감사원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      | 예산액     |         | 예산현액<br>(A) | 지출액<br>(B) | 다음연도<br>이월액 | 불용액   | 집행률<br>(B/A) |
|------|---------|---------|-------------|------------|-------------|-------|--------------|
|      | 본예산     | 추경예산    |             |            |             |       |              |
| 일반회계 | 125,187 | 125,187 | 126,209     | 120,936    | 2,634       | 2,639 | 95.8         |

자료: 감사원

## 나. 재무 결산

2017회계연도 말 현재 감사원의 자산은 1,774억 1,600만원, 부채는 4억 1,500만원으로 순자산은 1,770억 100만원이다.

자산은 전기 대비 10억 2,100만원(0.6%) 증가한 것으로 유동자산 30억 600만원, 일반유형자산 1,668억 3,800만원, 무형자산 57억 2,100만원, 기타비유동자산 18억 5,200만원 등으로 구성된다. 이는 임차보증금 회수에 따른 유동자산 11억 200만원 감소, 감사자료 분석시스템 2단계 구축에 따른 무형자산 32억 9,400만원 증가 등에 기인한다.

부채는 전기 대비 7,900만원(23.5%) 증가한 것으로 유동부채 200만원, 장기충당부채 4억 1,3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지 않는 사무보조원 등(40명)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해야 하는 퇴직급여충당부채 8,000만원 증가 등에 기인한다.

[2017회계연도 감사원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17<br>회계연도 | 2016<br>회계연도 | 전년도 대비 증감 |         |
|------------|--------------|--------------|-----------|---------|
|            |              |              | 금 액       | 비 율     |
| 자 산        | 177,416      | 176,395      | 1,021     | 0.6     |
| Ⅰ. 유동자산    | 3,006        | 3,926        | (920)     | (23.4)  |
| Ⅱ. 일반유형자산  | 166,838      | 167,717      | (879)     | (0.5)   |
| Ⅲ. 무형자산    | 5,721        | 3,823        | 1,898     | 49.6    |
| Ⅳ. 기타비유동자산 | 1,852        | 929          | 923       | 99.4    |
| 부 채        | 415          | 336          | 79        | 23.5    |
| Ⅰ. 유동부채    | 2            | 3            | (1)       | (33.3)  |
| Ⅱ. 장기충당부채  | 413          | 333          | 80        | 24.0    |
| Ⅲ. 기타비유동부채 | -            | 1            | (1)       | (100.0) |
| 순 자 산      | 177,001      | 176,059      | 942       | 0.5     |

자료: 감사원

감사원은 2017년도 재정운영결과 재정지출(비용)이 재정수입(수익)을 초과하여 순비용이 1,308억 2,300만원 발생하였다. 비용은 프로그램총원가 1,310억 9,900만원,



비배분비용 1억 9,500만원으로 구성되며, 수익은 프로그램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4억원, 비배분수익 7,100만원으로 구성된다.

재정운영순원가(프로그램순원가 + 관리운영비 + 비배분비용 - 비배분수익)는 전년도 대비 150억 6,500만원(10.3%) 감소한 150억 6,500만원이며, 이는 비배분비용 중 전기에 발생한 유형자산(건물) 재평가손실 233억 500만원이 당기에 발생하지 않는 등 비배분비용이 전년도 대비 236억 5,300만원 감소한 것에 기인한다.

[2017회계연도 감사원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17<br>회계연도 | 2016<br>회계연도 | 전년도 대비 증감 |        |
|--------------------------------|--------------|--------------|-----------|--------|
|                                |              |              | 금액        | 비율     |
| I. 프로그램순원가                     | 130,699      | 125,195      | 5,504     | 4.4    |
| II. 관리운영비                      | -            | -            | -         | -      |
| III. 비배분비용                     | 195          | 23,848       | (23,653)  | (99.2) |
| IV. 비배분수익                      | 71           | 3,155        | (3,084)   | (97.7) |
| V. 재정운영순원가( I + II + III - IV) | 130,823      | 145,888      | (15,065)  | (10.3) |
| VI. 비교환수익 등                    | -            | -            | -         | -      |
| VII. 재정운영결과(V - VI)            | 130,823      | 145,888      | (15,065)  | (10.3) |

자료: 감사원

감사원의 2017년도 기초순자산은 1,760억 5,900만원이고, 기말순자산은 1,770억 100만원으로 기초 대비 9억 4,200만원(0.5%) 증가하였는데, 이는 순자산 차감항목인 재정운영결과는 1,308억 2,300만원 발생한 반면, 순자산 가산항목인 재원의 조달 및 이전 항목이 1,317억 9,200만원 발생하였고, 기타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조정항목 2,700만원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2017회계연도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국고수입(세출결산액) 1,209억 3,600만원, 공무원 연금 등 국가부담액 116억 8,700만원 등 조달 1,326억 2,300만원과 재원의 이전 △8억 3,100만원으로 구성되며, 조정항목은 유형자산(건물) 재평가이익 중 당기 감가상각에 따른 환입 2,700만원 등으로 구성된다.

[2017회계연도 감사원 순자산변동표 요약]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17<br>회계연도 | 2016<br>회계연도 | 전년도 대비 증감 |         |
|------------------------------|--------------|--------------|-----------|---------|
|                              |              |              | 금액        | 비율      |
| I. 기초순자산                     | 176,059      | 166,717      | 9,342     | 5.6     |
| II. 재정운영결과                   | 130,823      | 145,888      | (15,065)  | (10.3)  |
| III. 재원의 조달 및 이전             | 131,792      | 126,550      | 5,242     | 4.1     |
| IV. 조정항목                     | (27)         | 28,679       | (28,706)  | (100.1) |
| V. 기말순자산( I - II + III + IV) | 177,001      | 176,059      | 942       | 0.5     |

자료: 감사원

감사원의 2017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된 사업으로 ① 인건비, ② 감사활동경비가 있다.

인건비는 별도정원 운영인력이 편성시점보다 심사시점 현재 축소된 점, 육아 휴직자에 대한 예산 소요는 육아휴직수당의 증액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별도 정원 대상 인건비가 1억원(815억 3,500만원 → 814억 3,500만원) 감액되었다.

감사활동경비는 국가재무제표 결산검사 보조업무 용역사업의 낙찰률 추이를 고려하여 일반연구비가 2억원 감액되었고, 민원신고에 의존하기보다는 감사원 역량강화가 우선되어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신고포상금 예산이 1,000만원 감액되는 등 2억 1,000만원(232억 8,400만원 → 230억 7,400만원)이 감액되었다.

감사원은 정부의 재정운용 목표에 적극 동참하여 최대한 경비를 절감하되, 절감재원은 회계검사·직무감찰 등 헌법상 임무수행에 필요한 경비와 감사활동 인프라 개선 등 감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에 적극 반영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여 예산을 편성·집행하였다.

그러나 2017회계연도 감사원 소관 결산에 대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첫째, 감사원은 관련 법률에 따라 매년 국가재무제표 결산검사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년도에 상당 규모의 전기오류수정손익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결산검사 강화를 통해 국가재무제표의 신뢰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예산이 별도로 편성된 정보화사업을 통합발주하는 것은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며, 예외적으로 통합발주할 경우에는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 II

## 개별 사업 분석

### 1

### 국가재무제표 결산검사 강화 필요

#### 가. 현 황

국가재무제표 결산검사 사업은 국가결산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는 국가재무제표에 대한 결산검사로써, 「국가재정법」 제60조<sup>1)</sup>에 따라 매년 감사원이 수행하고 있으며, 감사활동경비<sup>2)</sup> 사업의 내역사업이다. 2017년 예산현액 20억원 중 17억 3,100만 원을 집행하였다.

[국가재무제표 결산검사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예산액    |        | 전년도<br>이월액 | 이·전용<br>등 | 예산현액   | 집행액    | 다음연도<br>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     |            |           |        |        |             |     |
| 감사활동경비                                | 23,074 | 23,074 | 17         | △180      | 22,911 | 21,929 | 526         | 456 |
| 국가재무제표 결산<br>검사 보조업무 용역 등             | 2,000  | 2,000  | 0          |           |        | 1,731  | 0           |     |
| 주요 감사사항, 감사<br>업무 발전 및 개선에<br>관한 연구용역 | 400    | 400    | 9          | △180      | 2,229  | 210    | 97          | 191 |

자료: 감사원

감사원은 매년 3월경 국가기관에 대한 재무감사를 수행하면서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를 보조인력으로 활용하여 국가재무제표에 대한 결산검사를 수행하고 있다.

이은경 예산분석관(eunkylee@assembly.go.kr, 788-4682), 오덕근 예산분석관(whale@assembly.go.kr, 788-4641)

1) 「국가재정법」 제60조(결산검사) 감사원은 제59조에 따라 제출된 국가결산보고서를 검사하고 그 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코드명: 일반회계 1134-309

## 나. 분석의견

감사원은 국가재무제표 결산검사 강화를 통해 국가재무제표의 신뢰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감사원은 2011회계연도부터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제출받은 회계연도 재무제표가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최종적으로 검사하고 있으며, 매년도 감사원의 결산검사 결과에 따른 국가재무제표 수정사항은 다음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다.

[감사원의 국가결산검사보고서 상의 국가재무제표 수정사항 요약]

(단위: 조원)

| 구 분  |        | 수정 전    | 오류 수정(감사원 수행) |     |      | 수정 후    |
|------|--------|---------|---------------|-----|------|---------|
|      |        |         | 과소            | 과대  | 계    |         |
| 2017 | 자 산    | 2,063.2 | 1.6           | 2.3 | △0.7 | 2,062.5 |
|      | 부 채    | 1,555.8 | 0.1           | 0.1 | △0.0 | 1,555.8 |
|      | 재정운영결과 | 19.9    | 2.0           | 0.8 | 1.2  | 21.1    |
| 2016 | 자 산    | 1,962.2 | 8.4           | 3.8 | 4.6  | 1,966.8 |
|      | 부 채    | 1,433.1 | 0.1           | 0.2 | △0.1 | 1,433.0 |
|      | 재정운영결과 | 56.8    | 3.8           | 2.0 | 1.8  | 58.6    |
| 2015 | 자 산    | 1,856.2 | 2.9           | 2.9 | 0.0  | 1,856.2 |
|      | 부 채    | 1,284.8 | 0.8           | 0.4 | 0.4  | 1,285.2 |
|      | 재정운영결과 | △29.6   | 2.5           | 2.3 | 0.2  | △29.4   |

자료: 감사원 연도별 국가결산 검사 및 감사활동 결과

그런데 다음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감사원의 재무결산 검사를 통하여 재무제표의 수정이 이루어진 다음연도에 전기오류수정손익<sup>3)</sup>이 적지 않게 발생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2016년에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수정된 계정별 재무제표금액은 총 18.3조원 인데, 2017년도에 전년도 재무제표 오류수정에 따라 발생한 전기오류수정손익은 15.9조원이다. 결과적으로 2016년 국가재무제표의 오류분은 ① 당해연도 감사원 감사결과 수정분 18.3조원, ② 익년도 전기오류수정손익 15.9조원을 합한 34.2조원이다.

3) 전기오류수정손익이란 기간손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과년도(過年度)의 회계상 오류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전기 이전의 재무제표에 대한 오류의 수정사항을 당기에 발견하여 이를 회계기준에 맞게 수정함에 따른 손익항목을 말한다.

[2015, 2016년 감사원 수정사항 및 익년도 전기오류수정손익]

(단위: 조원)

| 구 분  | 당해연도 감사원 수정사항 |     |      | 익년도 전기오류수정손익 |     |      | 합계   |
|------|---------------|-----|------|--------------|-----|------|------|
|      | 과소            | 과대  | 합계   | 손실           | 이익  | 합계   |      |
| 2015 | 6.2           | 5.6 | 11.8 | 3.6          | 3.7 | 7.3  | 19.1 |
| 2016 | 12.3          | 6.0 | 18.3 | 9.5          | 6.4 | 15.9 | 34.2 |

주: 당해연도 감사원 수정사항 수치는 자산, 부채, 재정운영결과 각각에 대해 감사원이 수정한 총액임  
 자료: 감사원 연도별 국가결산 검사 및 감사활동 결과 및 국가결산보고서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이렇게 당해연도에 감사원이 국가재무제표 결산검사를 통하여 재무제표를 수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익년도에 적지 않은 규모의 전기오류수정손익이 매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유형자산 및 사회기반시설 등의 계정을 중심으로 한 국가재무제표에 대한 신뢰성을 부여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다.

현재 국가재무결산이 7년차에 접어들어 안정화 단계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빈번하게 적지 않은 규모의 전기오류수정손익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감사원은 국가결산보고서 결산검사를 강화를 통해 전기오류수정손익 발생을 최소화하여 국가재무제표의 신뢰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 가. 현 황

전산운영경비(정보화)<sup>1)</sup> 사업은 감사원 소관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등을 위한 사업이다. 감사원은 2017년 예산현액 82억 1,200만원 중 60억 600만원을 집행하고, 20억 6,5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4,100만원을 불용하였다.

[전산운영경비(정보화)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예산액   |       | 전년도<br>이월액 | 이·전용<br>등 | 예산현액  | 집행액   | 다음연도<br>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    |            |           |       |       |             |     |
| 전산운영경비 | 7,046 | 7,046 | 1,006      | 160       | 8,212 | 6,006 | 2,065       | 141 |

자료: 감사원

동 세부사업 내 다음연도 이월액 중 18억 4,000만원은 “감사자료 분석시스템 3단계” 사업의 이월액으로 2017년 12월 28일 완료 후 준공검사에 따라 2018년 1월 잔액이 집행되었다.

### 나. 분석의견

예산이 별도로 편성된 정보화사업을 통합발주하는 것은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며, 예외적으로 통합발주할 경우에는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2017년 감사원이 편성한 주요 정보화 사업 예산 내역은 감사자료 분석시스템 구축 33억 6,800만원, OASYS 추가기능개발 3억 6,800만원, 감사자료 분석시스템 인프라구축 5억 8,200만원이다.

오덕근 예산분석관(whale@assembly.go.kr, 788-4641)

1) 코드명: 일반회계 1134-309



[2017년 감사원 주요 정보화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 내역             | 예산비목           | 예산액   |
|-------------------|----------------|-------|
| 감사자료분석시스템(3단계) 구축 | 일반연구비(260-01목) | 3,368 |
| 감사자료분석시스템 인프라 구축  | 자산취득비(430-01목) | 582   |
| OASYS 추가기능개발      | 일반연구비(260-01목) | 368   |
| 계                 |                | 4,318 |

자료: 감사원

감사자료분석시스템은 2015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보화 사업으로서 재정자료·공간정보·행정자료 등 주요 감사(전산)자료를 주기적으로 수집·분석·제공하는 신규 시스템이며, OASYS(감사업무관리시스템)은 감사활동 및 자료 관리, 지원업무, 지식관리 등이 운영되는 포털 시스템이다.

그런데 감사원이 수행한 정보화사업 “감사자료분석시스템(3단계) 구축 및 전자감사관리시스템 기능개선”과 “전자의사진행 전용망 및 맞춤형 감사자료 연계시스템 구축” 등 2건은 “감사자료분석시스템 구축” 사업과 “OASYS 추가기능개발” 사업을 통합하여 발주하였다.

[전자의사진행 전용망 및 맞춤형 감사자료 연계시스템 구축사업 내용]

| 사업 내용                             | 감사자료분석시스템 구축(3단계)                                                                                                                      | OASYS 추가기능개발                                                                                                       |
|-----------------------------------|----------------------------------------------------------------------------------------------------------------------------------------|--------------------------------------------------------------------------------------------------------------------|
| 감사자료분석시스템(3단계)구축 및 전자감사관리시스템 기능개선 | [감사자료분석시스템 구축]<br>사용자 중심으로 감사 업무에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의심사항을 감사자료 분석을 통해 도출할 수 있도록 분석 시나리오 정의→설계→개발→생성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용자 중심 감사자료 분석 플랫폼」 구축 | [전자감사관리시스템 기능 개선]<br>수작업으로 처리 중인 감사사항의 통합·분리에 대해 시스템 내부에서 처리하고 그 과정에서 생성되는 모든 감사 문서·자료를 자동으로 통합·분리, 문서작성시스템을 고도화 등 |
| 전자의사진행 전용망 및 맞춤형 감사자료 연계시스템 구축    | [맞춤형 감사자료 연계시스템 구축]<br>감사에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수감기관 자료를 상시로 요청 및 수집할 수 있는 포괄 업무 처리 프로세스 설계 및 구축                                               | [전자의사진행 전용망 구축]<br>안정적인 감사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 기존 전자감사관리시스템과 의사진행시스템을 분리운영·관리할 수 있는 인프라 도입 및 디지털 의사진행시스템 구축             |

자료: 감사원

[감사자료 분석시스템 구축 추진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사업기간                       | 예산현액             | 집행비목  | 집행액   | 이월액   | 불용액    |
|-------------------------------------------|----------------------------|------------------|-------|-------|-------|--------|
| 감사자료분석시스템<br>(3단계)구축 및 전자감사<br>관리시스템 기능개선 | 2017. 5.<br>~ 12.          | 4,478<br>(일반연구비) | 소계    | 1,931 | 1,840 | 187    |
|                                           |                            |                  | 일반연구비 | 1,790 | 1,840 | (일반연구비 |
|                                           |                            |                  | 자산취득비 | 141   | 0     | 47)    |
| 전자의사진행 전용망<br>및 맞춤형 감사자료<br>연계시스템 구축      | 2017.<br>10. ~<br>2018. 2. | 3,896<br>(자산취득비) | 소계    | 337   | 184   | (자산취득비 |
|                                           |                            |                  | 일반연구비 | 127   | 93    | 140)   |
|                                           |                            |                  | 자산취득비 | 210   | 90    |        |

주: 1. 감사원은 동 사업에서 “전자감사관리시스템 기능개선”과 “전자의사진행 전용망 구축” 사업을 OASYS 추가기능개발 사업으로 보고 있음.

2. 동 사업비는 감리 및 부대비가 포함된 금액임.

3. 예산현액 4,478백만원은 예산액 4,318백만원에 전용액 160백만원(일반연구비)이 더해진 금액임.

자료: 감사원

이에 대해 감사원은 효율적 사업관리를 위해 통합발주를 실시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예산이 별도로 편성된 사업을 통합발주하는 것은 예산의 투명성 및 효율성 측면에서 원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우선, 각 사업에 편성된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었는지에 대해 파악하기 어려워 예산의 투명성을 저해하게 된다. 가령, “OASYS 추가기능개발”을 위해 편성된 예산은 일반연구비 3억 6,800만원이나, 예산집행과정에서 “감사자료분석시스템(3단계) 구축” 사업과 함께 집행되어 사업별 결산내역을 파악하기 어렵다.

또한, 자산취득비(430-01목)는 “감사자료분석시스템 인프라 구축”을 위해 5억 8,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전자의사진행 전용망 및 맞춤형 감사자료 연계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련 사업예산이 함께 집행되어 자산취득비가 예산 편성취지에 부합하게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한편, 효율적 사업관리를 위해 통합발주한 “전자의사진행 전용망 및 맞춤형 감사자료 연계시스템 구축” 사업은 2차례의 공개입찰이 유찰된 후 수의계약으로 체결되었고, 사업비 5억 1,500만원 중 1억 8,400만원을 이월하는 등 효율적 사업관리라는 당초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통합발주할 경우, 사업성격에 따라 시스템 요구사항이 달라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고, 각 사업별 기술평가가 충분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향후 감사원은 통합발주를 가급적 지양하고, 예산 편성에 따른 정보화 사업 추진을 통해 예산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



## 1 현 황

## 가. 총수입총지출 결산

2017회계연도 대법원 소관 총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1,832억 9,200만원 (19.4%)이 감소한 7,642억 1,0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97억 9,700만원 (12.8%)이 증가하였다.

[2017회계연도 대법원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 2016<br>결산(A) | 2017    |         |           |                | 전년 대비<br>(C-A) |
|----|---------------|---------|---------|-----------|----------------|----------------|
|    |               | 예산      |         | 결산<br>(C) | 예산 대비<br>(C-B) |                |
|    |               | 본예산     | 추경(B)   |           |                |                |
| 예산 | 700,595       | 897,002 | 897,002 | 709,731   | △187,271       | 9,136          |
| 기금 | 53,818        | 50,500  | 50,500  | 54,479    | 3,979          | 661            |
| 합계 | 754,413       | 947,502 | 947,502 | 764,210   | △183,292       | 9,797          |

자료: 대법원

2017회계연도 대법원 총지출은 1조 7,838억 1,3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793억 6,900만원(4.4%)이 증가하였다.

[2017회계연도 대법원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 2016<br>결산(A) | 2017      |           |           |                | 전년 대비<br>(C-A) |
|----|---------------|-----------|-----------|-----------|----------------|----------------|
|    |               | 예산        |           | 결산<br>(C) | 예산 대비<br>(C-B) |                |
|    |               | 본예산       | 추경(B)     |           |                |                |
| 예산 | 1,650,626     | 1,803,701 | 1,803,701 | 1,729,334 | △74,367        | 78,708         |
| 기금 | 53,818        | 50,500    | 50,500    | 54,479    | 3,979          | 661            |
| 합계 | 1,704,444     | 1,854,201 | 1,854,201 | 1,783,813 | △70,388        | 79,369         |

자료: 대법원

## 나. 세입·세출 결산

2017회계연도 대법원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8,970억 200만원이며, 7,118억 7,5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99.7%인 7,097억 3,100만원을 수납하고 21억 4,200만원을 미수납하였으며 200만원을 불납결손처리 하였다.

[2017회계연도 대법원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 구분     | 예산      |         | 예산현액    | 징수<br>결정액(A) | 수납액<br>(B) | 미수납액  | 불납<br>결손액 | 수납률<br>(B/A) |
|--------|---------|---------|---------|--------------|------------|-------|-----------|--------------|
|        | 본예산     | 추경      |         |              |            |       |           |              |
| 일반회계   | 575,030 | 575,030 | 575,030 | 428,676      | 426,532    | 2,142 | 2         | 99.5         |
| 등기특별회계 | 321,972 | 321,972 | 321,972 | 283,199      | 283,199    | 0     | 0         | 100.0        |
| 합계     | 897,002 | 897,002 | 897,002 | 711,875      | 709,731    | 2,142 | 2         | 99.7         |

자료: 대법원

2017회계연도 대법원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1조 8,096억 3,700만원이며, 이 중 89.1%인 1조 7,293억 3400만원을 지출하고 170억 2,3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632억 8,0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2017회계연도 대법원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 구분     | 예산        |           | 예산<br>현액(A) | 지출액<br>(B) | 다음연도<br>이월액 | 불용액    | 집행률<br>(B/A) |
|--------|-----------|-----------|-------------|------------|-------------|--------|--------------|
|        | 본예산       | 추경        |             |            |             |        |              |
| 일반회계   | 1,481,729 | 1,481,729 | 1,483,881   | 1,472,012  | 6,146       | 5,723  | 99.2         |
| 등기특별회계 | 321,972   | 321,972   | 325,756     | 257,322    | 10,877      | 57,557 | 79.0         |
| 합계     | 1,803,701 | 1,803,701 | 1,809,637   | 1,729,334  | 17,023      | 63,280 | 89.1         |

자료: 대법원

## 다. 기금 결산

2017회계연도 대법원 소관 기금의 수정 수입계획액은 505억이며, 550억 9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99.0%인 544억 7,900만 원을 수납하고 5억 2,900만 원을 미수납하였으며 100만 원을 불납결손처리 하였다.

[2017회계연도 대법원 소관 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

| 구분        | 수입계획   |        | 계획현액   | 징수<br>결정액(A) | 수납액<br>(B) | 미수납액 | 불납<br>결손액 | 수납률<br>(B/A) |
|-----------|--------|--------|--------|--------------|------------|------|-----------|--------------|
|           | 당초     | 수정     |        |              |            |      |           |              |
| 사법서비스진흥기금 | 50,500 | 50,500 | 50,500 | 55,009       | 54,479     | 529  | 1         | 99.0         |

자료: 대법원

2017회계연도 대법원 소관 기금의 수정 지출계획현액은 506억 1,800만원이며, 이 중 107.6%인 544억 7,900만 원을 지출하고 3억 2,700만 원은 불용처리하였다.

[2017회계연도 대법원 소관 지출 결산 ]

(단위: 백만원, %)

| 구분        | 지출계획   |        | 계획<br>현액(A) | 지출액<br>(B) | 다음연도<br>이월액 | 불용액 | 집행률<br>(B/A) |
|-----------|--------|--------|-------------|------------|-------------|-----|--------------|
|           | 당초     | 수정     |             |            |             |     |              |
| 사법서비스진흥기금 | 50,500 | 50,500 | 50,618      | 54,479     | 0           | 327 | 107.6        |

자료: 대법원

## 라. 재무 결산

2017회계연도 말 현재 대법원의 자산은 6조 6,191억 6,900만원, 부채는 903억 9,200만원으로 순자산은 6조 5,287억 7,700만원이다.

자산은 전기 대비 341억 4,200만원(0.5%) 증가한 것으로 유동자산 162억 8,700만원, 일반유형자산 6조 5,498억 8,200만원, 무형자산 472억 1,000만원, 기타비유동자산 57억 9,100만원 등으로 구성된다. 이는 건물 신축 및 토지 자산재평가 등에 따른 일반유형자산 410억 4,300만원 증가, 소프트웨어 감가상각 등에 따른 무형자산 70억 8,800만원 감소 등에 기인한다.

부채는 전기 대비 74억 3,000만원(9.0%) 증가한 것으로 유동부채 366억 7,500만원, 장기차입부채 537억 1,7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금융리스계약 증가에 따라 상환해야할 장기차입금의 증가로 장기차입부채 87억 900만원 증가 등에 기인한다.



[2017회계연도 대법원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17<br>회계연도 | 2016<br>회계연도 | 전년도 대비 증감 |        |
|--------------|--------------|--------------|-----------|--------|
|              |              |              | 금 액       | 비 율    |
| 자 산          | 6,619,169    | 6,585,027    | 34,142    | 0.5    |
| Ⅰ. 유동자산      | 16,287       | 13,591       | 2,696     | 19.8   |
| Ⅱ. 투자자산      | 0            | 0            | 0         | 0      |
| Ⅲ. 일반유형자산    | 6,549,882    | 6,508,839    | 41,043    | 0.6    |
| Ⅳ. 사회기반시설    | 0            | 0            | 0         | 0      |
| Ⅴ. 무형자산      | 47,210       | 54,298       | △7,088    | △13.1  |
| Ⅵ. 기타비유동자산   | 5,791        | 8,299        | △2,508    | △30.2  |
| 부 채          | 90,392       | 82,962       | 7,430     | 9.0    |
| Ⅰ. 유동부채      | 36,675       | 37,933       | △1,258    | △3.3   |
| Ⅱ. 장기차입부채    | 53,717       | 45,008       | 8,709     | 19.3   |
| Ⅲ. 장기충당부채    | 0            | 20           | △20       | △100.0 |
| Ⅳ. 기타비유동부채   | 0            | 0            | 0         | 0      |
| 순 자 산        | 6,528,777    | 6,502,066    | 26,711    | 0.4    |
| Ⅰ. 기본순자산     | 3,931,501    | 3,931,501    | 0         | 0      |
| Ⅱ. 적립금 및 양여금 | 655,731      | 562,191      | 93,540    | 16.7   |
| Ⅲ. 순자산 조정    | 1,941,544    | 2,008,374    | △66,830   | △3.3   |

자료: 대법원

대법원은 2017년도 재정운영결과 재정지출(비용)이 재정수입(수익)을 초과하여 순비용이 1조 2,425억 1,300만원 발생하였다. 비용은 프로그램총원가 736억 1,400만원, 관리운영비 1조 8,292억 2,300만원, 비배분비용 51억 9,000만원으로 구성되며, 수익은 비배분수익 6,164억 4,600만원, 비교환수익 490억 6,800만원으로 구성된다.

재정운영결과(프로그램순원가 + 관리운영비 + 비배분비용 - 비배분수익 + 비교환수익)는 전년도 대비 130억 8,800만원(1.1%) 증가한 1조 2,425억 1,300만원이며, 이는 인건비 등의 증가에 따라 관리운영비가 전년도 대비 811억 8,500만원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

대법원은 총 1개의 프로그램이 있으며 법원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 프로그램(736억 1,4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밖에 관리운영비는 인건비 1조 1,612억 6,500만원과 기타경비 6,679억 5,8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배분비용은 기타비용 47억 4,600만원과 대손상 각비 2억 5,8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배분수익은 재화및용역제공수익 5,228억 3,000만원과 자산처분이익 906억 7,6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교환수익은 기타채원조달및이전 484억 4,000만원과 제재금수익 4억 9,9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7회계연도 대법원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17<br>회계연도 | 2016<br>회계연도 | 전년도 대비 증감 |       |
|--------------------------------|--------------|--------------|-----------|-------|
|                                |              |              | 금액        | 비율    |
| I. 프로그램순원가(가-나)                | 73,614       | 73,742       | 142       | 0.2   |
| 가. 프로그램 총원가                    | 73,614       | 73,742       | 142       | 0.2   |
| 나. 프로그램 수익                     | 0            | 0            | 0         | 0     |
| II. 관리운영비                      | 1,829,223    | 1,748,038    | 81,185    | 4.6   |
| III. 비배분비용                     | 5,190        | 10,335       | △5,145    | △49.8 |
| IV. 비배분수익                      | 616,446      | 548,249      | 68,197    | 12.4  |
| V. 재정운영순원가( I + II + III - IV) | 1,291,581    | 1,283,595    | 7,986     | 0.6   |
| VI. 비교환수익 등                    | 49,068       | 54,170       | △5,102    | △9.4  |
| VII. 재정운영결과(V - VI)            | 1,242,513    | 1,229,425    | 13,088    | 1.1   |

자료: 대법원

대법원의 2017년도 기초순자산은 6조 5,020억 6,600만원이고, 기말순자산은 6조 5,287억 7,700만원으로 기초 대비 267억 1,100만원(0.4%) 증가하였는데, 이는 순자산 차감항목인 재정운영결과는 전기 대비 130억 8,800만원 증가한 반면, 순자산 가산항목인 채원의 조달 및 이전은 전기 대비 13억 9,900만원 증가, 조정항목은 전기 대비 1,859억 6,600만원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2017회계연도 채원의 조달 및 이전은 국고수입 등 채원의 조달 2조 888억 7,300만원과 국고이전지출 등 채원의 이전 △7,528억 1,900만원으로 구성되며, 조정항목은 자산재평가이익 △668억 3,000만원 등으로 구성된다.

[2017회계연도 대법원 순자산변동표 요약]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17<br>회계연도 | 2016<br>회계연도 | 전년도 대비 증감 |        |
|------------------------------|--------------|--------------|-----------|--------|
|                              |              |              | 금액        | 비율     |
| I. 기초순자산                     | 6,502,066    | 6,277,701    | 224,365   | 3.6    |
| II. 재정운영결과                   | 1,242,513    | 1,229,425    | 13,088    | 1.1    |
| III. 재원의 조달 및 이전             | 1,336,053    | 1,334,654    | 1,399     | 0.1    |
| IV. 조정항목                     | △66,830      | 119,136      | △185,966  | △156.1 |
| V. 기말순자산( I - II + III + IV) | 6,528,777    | 6,502,066    | 26,711    | 0.4    |

자료: 대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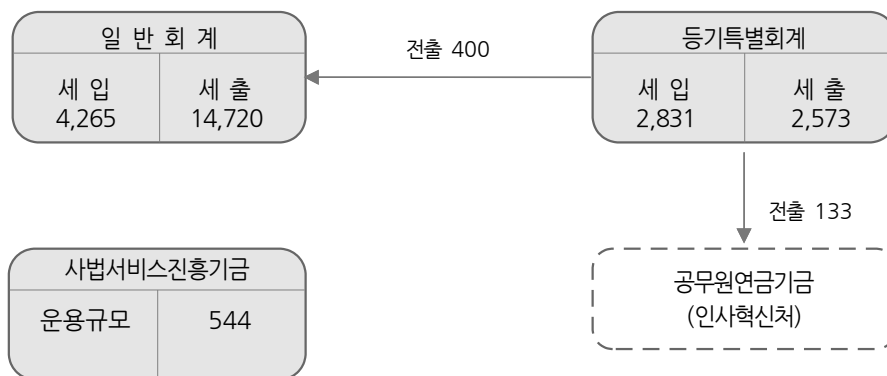
## 마. 재정 구조

2017회계연도 대법원의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은 다음과 같다.

회계·기금 간 거래는 없으며, 회계 간 거래를 살펴보면 등기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400억원, 공무원연금기금으로 132억 7,300만원이 전출되었다.

[2017회계연도 대법원 소관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

(단위: 억원)



자료: 대법원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된 사업**으로 ① 연수원 인건비 사업, ② 도서관 운영지원 사업, ③ 사실심충실화 사업이 있다.

연수원 인건비사업은 사법연수생 가족수당 인원 재조정에 따라 5,000만원이 감액(173억 8,300만원→17억 3,300만원)되었고,

도서관운영지원 사업은 도서관 이전에 따른 도서구입비가 도서관 확장·이전이 완료되는 2018년 예산안에 편성하는 것을 고려하여 5,000만원이 감액(79억 6,400만원→79억 1,400만원)되었으며,

사실심충실화 사업은 상임전문심리위원 1인이 월평균 15건의 재판에 참여할 것을 가정하여 수당을 편성하는 근거가 미약 보이므로 1억원이 감액(7억 9,200만원→6억 9,200만원)되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된 사업**으로 과태료재판 역량강화 사업이 있다.

과태료재판 역량강화 사업은 청탁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적용기준 마련을 지원할 필요가 있어 3억원이 순증(0원→3억원)되었다.

대법원은 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일체의 법률상 쟁송을 심판하고, 등기·가족관계등록·공탁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 감독하는 기관이다. 법의 지배 확립을 통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보장이라는 사법이념 확립을 위해 2017년에는 ① 사실심충실화를 통한 사법자원의 효율적 배분 도모, ② 여성·아동·장애인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법지원 확대, ③ 대국민 소통강화를 통한 국민의 사법접근성 향상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집행하였다.

그러나 2017회계연도 대법원 결산에 대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첫째, 대법원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연례적으로 과다편성되고 있으므로 결산액을 기준으로 세입예산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법원의 주요 세입과목의 산출근거는 매년 변동되고 있으므로, 향후 수납액을 기준으로 일관적인 산출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재 온라인 출생신고 시스템을 도입한 분만병원은 18개소에 불과하므로, 제도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온라인 출생신고는 기존에 부모가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만 가능했던 출생신고를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해서 전자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나, 현재 분만병원의 참여가 저조하므로, 분만병원 참여 확대를 통한 제도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셋째, 2017년 등기소 신증축 사업의 이월액은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으므로, 사업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은 연례적으로 이월되고 있는데, 특히 2017년 이월액은 108억 7,700만원으로 최근 발생한 연도별 이월액 중 가장 큰 규모로 발생하였다. 따라서 대법원은 사업계획 검토 및 공정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 1

## 일반회계 적정 세입예산 편성 필요

## 가. 현 황

2017년 대법원의 일반회계 세입 총결산액은 4,265억 3,200만원으로 당초 세입 예산 5,750억 3,000만원의 74.2%가 수납되었다.

[2017회계연도 대법원 일반회계 세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 회계명  | 2016회계연도<br>결산 | 2017회계연도<br>예산 | 2017회계연도<br>결산 | 수납률  |
|------|----------------|----------------|----------------|------|
| 일반회계 | 418,538        | 575,030        | 426,532        | 74.2 |

자료: 대법원

## 나. 분석의견

대법원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연례적으로 과다편성되고 있으므로 결산액을 기준으로 세입예산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면허료 및 수수료(65-651), 기타경상이전수입(59-596), 기타특별회계 전입금(91-912) 등 3개 세입과목의 결산액은 4,227억 6,200만원으로 대법원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의 약 99.1%를 차지한다.

[2017회계연도 대법원 주요 세입과목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 세입과목       | 예산액(A)  | 징수결정액   | 결산액(B)  | 수납률(B/A) |
|------------|---------|---------|---------|----------|
| 면허료 및 수수료  | 338,900 | 278,193 | 278,193 | 82.1     |
| 기타경상이전수입   | 138,144 | 105,078 | 104,898 | 75.9     |
| 기타특별회계 전입금 | 94,303  | 39,671  | 39,671  | 42.1     |
| 계          | 571,347 | 422,942 | 422,762 | 74.0     |

자료: 대법원

우선 면허료 및 수수료의 경우, 최근 5년간 세입예산 대비 수납률은 약 70~80%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데, 연도별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결산액은 큰 편차가 없는 데에 반해 세입예산액은 상대적으로 변동폭이 큰 편이다. 따라서 세입예산을 결산액을 기준으로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연도별 면허료 및 수수료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 연도   | 세입예산(A) | 징수결정액   | 결산액(B)  | 수납률(B/A) |
|------|---------|---------|---------|----------|
| 2013 | 394,930 | 290,190 | 290,190 | 73.5     |
| 2014 | 420,655 | 296,903 | 296,903 | 70.6     |
| 2015 | 420,660 | 291,095 | 291,095 | 69.2     |
| 2016 | 350,000 | 274,302 | 274,302 | 78.4     |
| 2017 | 338,900 | 278,193 | 278,193 | 82.1     |
| 2018 | 384,140 | -       | -       | -        |

자료: 대법원

이와 같은 세입예산 과다편성은 기타경상이전수입의 경우에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2015년 이후 기타경상이전수입의 수납액은 약 1,000억원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는데, 2016~2017년 수납률이 저조한 것은 세입예산의 과다편성에 기인한다.

[연도별 기타경상이전수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 연도   | 세입예산(A) | 징수결정액   | 결산액(B)  | 수납률(B/A) |
|------|---------|---------|---------|----------|
| 2013 | 54,703  | 69,616  | 69,570  | 127.2    |
| 2014 | 84,483  | 87,338  | 87,338  | 103.4    |
| 2015 | 98,510  | 100,962 | 100,916 | 102.4    |
| 2016 | 118,705 | 101,365 | 101,168 | 85.2     |
| 2017 | 138,114 | 105,078 | 104,898 | 75.9     |
| 2018 | 138,114 | -       | -       | -        |

자료: 대법원

마지막으로 기타특별회계 전입금은 대법원 소관인 등기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세입으로 계상한 것으로, 2015년을 제외한 전반적인 수납률이 저조하다.

[연도별 기타특별회계 전입금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 연도   | 세입예산(A) | 징수결정액  | 결산액(B) | 수납률(B/A) |
|------|---------|--------|--------|----------|
| 2013 | 57,371  | 0      | 0      | 0.0      |
| 2014 | 67,932  | 35,000 | 35,000 | 51.5     |
| 2015 | 78,510  | 78,510 | 78,510 | 100.0    |
| 2016 | 102,518 | 40,000 | 40,000 | 39.1     |
| 2017 | 94,303  | 39,671 | 39,671 | 42.1     |
| 2018 | 123,640 | -      | -      | -        |

자료: 대법원

이와 같이 대법원의 주요 세입과목은 연례적으로 수납액보다 과다하게 편성되고 있으므로, 향후 수납액을 기준으로 일관적인 산출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세입규모가 가장 큰 면허료 및 수수료의 연도별 산출근거는 매년 달라지고 있는데, 특히 2017~2018년도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을 기준으로 편성하고 있다. 그러나 전년도 예산액이 이미 과다편성된 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예산액을 기준으로 편성하는 것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



[연도별 면허료 및 수수료 산출근거]

(단위: 백만원)

| 연도   | 세입예산    | 산출근거                                                                                                                                                                      |
|------|---------|---------------------------------------------------------------------------------------------------------------------------------------------------------------------------|
| 2016 | 350,000 | $\blacksquare (2014\text{결산액} + \text{인지료 인상액}) \times (2011\sim 15\text{년 결산 연평균 증가율})$<br>$= (296,903\text{백만원} + 19,500\text{백만원}) \times (1.052) = 350,000\text{백만원}$ |
| 2017 | 338,900 | $\blacksquare (2016\text{예산액}) \times (2012\sim 15\text{년 결산 연평균 증가율})$<br>$= (350,000\text{백만원}) \times (\triangle 1.02) \approx 338,900\text{백만원}$                      |
| 2018 | 384,140 | $\blacksquare (2017\text{예산액}) \times (\text{인지수수료 인상효과 기대치})$<br>$= (338,900\text{백만원}) \times (1.13) \approx 384,140\text{백만원}$                                         |

자료: 대법원

향후 대법원은 산출근거의 기준을 수납(결산)액으로 변경하고, 일관적인 기준 적용으로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 III

## 개별 사업 분석

### 1

## 온라인 출생신고 제도 활성화 노력 필요

### 가. 현 황

온라인 출생신고 시스템 구축 사업은 출생신고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가족등록업무전산화 사업<sup>1)</sup>의 내역사업이다. 2017년 예산액 7억 6,200만원 중 3억 1,500만원을 집행하고, 4억 4,700만원을 이월하였다.

[2017회계연도 온라인 출생신고 시스템 구축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예산액    |        | 전년도<br>이월액 | 이·전용<br>등 | 예산현액   | 집행액    | 다음연도<br>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     |            |           |        |        |             |     |
| 가족등록업무전산화         | 18,536 | 18,536 | 765        | 0         | 19,301 | 18,222 | 447         | 632 |
| 온라인출생신고<br>시스템 구축 | 762    | 762    | 0          | 0         | 762    | 315    | 447         | 0   |

자료: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는 기존에 부모가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만 가능했던 출생신고를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해서 전자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으로서, 2018년 5월 8일부터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동 사업의 이월액 4억 4,700만원은 사업 발주 지연에 기인하며, 구축사업이 완료된 2018년 5월에 전액 집행되었다.

오덕근 예산분석관(whale@assembly.go.kr, 788-46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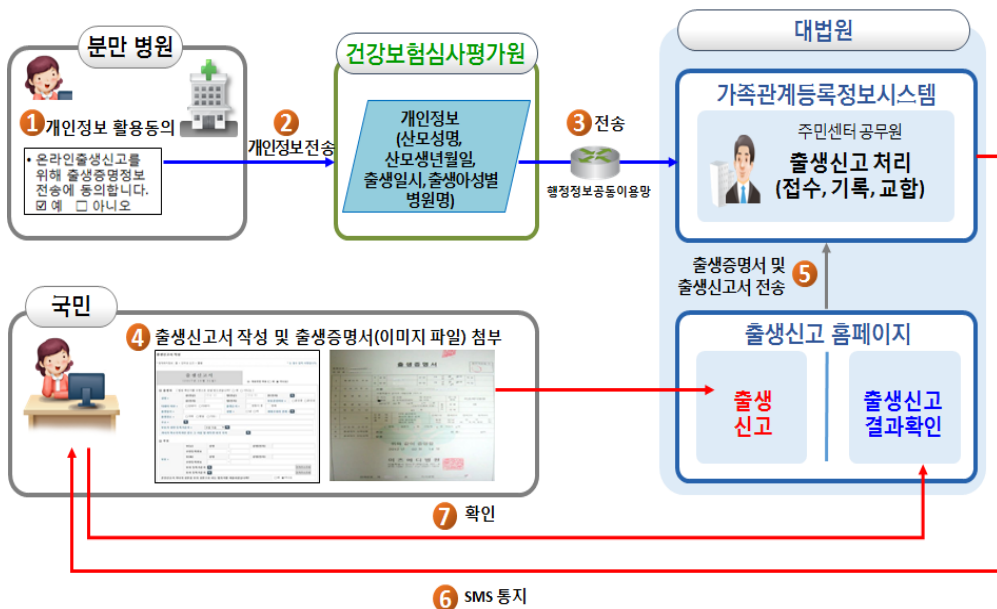
1) 코드명: 일반회계 1138-512

## 나. 분석의견

현재 온라인 출생신고 시스템을 도입한 분만병원은 18개소에 불과하므로, 제도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온라인 출생신고는 ① 부모로부터 출생신고서 및 출생증명서를, ② 분만병원으로부터 출생증명정보를 확인·대조하여 처리된다.<sup>2)</sup> 따라서 온라인 출생신고를 위해서는 분만병원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

[온라인 출생신고 업무 흐름]



자료: 대법원

그러나 2018년 5월 현재 온라인 출생신고 시스템을 도입한 병원은 18개소에 불과하여, 온라인 출생신고의 활용도가 낮은 상황이다. 이는 분만병원에 출생증명정보 송부를 강제하는 법적 근거가 없음에 따라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한 상황이나, 시스템 구축을 위한 비용이 추가적으로 소요됨에 따라 각 병원에서 기피하는 것에 기인한다.

2) 기존의 우편·방문을 통한 출생신고는 부모로부터의 출생신고서 및 출생증명서 제출을 통해 처리되었다. 그러나 온라인 출생신고는 출생증명서 스캔본의 위·변조 가능성 때문에 분만병원으로부터의 출생증명정보를 추가적으로 받아 확인·대조과정을 거치도록 하였다.

따라서 대법원은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유관부처와의 관련 법률 개정에 관한 협의를 통해 온라인 출생신고 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각 분만병원의 시스템 조성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새로 도입된 제도인 만큼, 홍보를 통해 가급적 많은 분만병원의 참여를 유도하고,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여 제도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온라인 출생신고 시스템 구축 병원 및 출생증명정보 송부 현황]

(단위: 건)

| 연번 | 병원              | 5월        | 6월    | 합계    |
|----|-----------------|-----------|-------|-------|
| 1  | 서울성모병원(서초구)     | 126       | 39    | 165   |
| 2  | 강남차병원(강남구)      | 46        | 75    | 121   |
| 3  | 미즈메디병원(강서구)     | 241       | 236   | 477   |
| 4  | 인정병원(은평구)       | 27        | 24    | 51    |
| 5  | 의정부성모병원(의정부시)   | 0         | 0     | 0     |
| 6  | 분당차병원(성남시 분당구)  | 89        | 62    | 151   |
| 7  | 봄빛병원(안양시 동안구)   | 91        | 63    | 154   |
| 8  | 서울여성병원(부천시 상동)  | 116       | 110   | 226   |
| 9  | 서울여성병원(인천시 남구)  | 193       | 178   | 371   |
| 10 | 샘여성병원(안양시 만안구)  | 22        | 4     | 26    |
| 11 | 미즈여성병원(대전 서구)   | 17        | 28    | 45    |
| 12 | 신세계여성병원(대구 북구)  | 31        | 8     | 39    |
| 13 | 파티마여성병원(대구 수성구) | 4         | 16    | 20    |
| 14 | 미즈베베산부인과병원(익산시) | 14        | 21    | 35    |
| 15 | 에덴병원(광주 북구)     | 252       | 109   | 361   |
| 16 | 현대여성아동병원(순천시)   | 20        | 29    | 49    |
| 17 | 분당제일여성병원(성남시)   | 7월 서비스 예정 |       |       |
| 18 | 일신기독병원(부산 동구)   |           |       |       |
| 계  |                 | 1,289     | 1,002 | 2,291 |

자료: 대법원

### 가. 현 황

법원도서관 이전<sup>1)</sup> 사업은 현재 대법원 청사(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법원도서관을 사법연수원(경기 고양시) 청사로 이전하는 사업으로 도서관 운영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이다. 대법원은 2017년 예산현액 53억 5,500만원 중 1,700만원을 집행하고 53억 3,800만원을 이월하였다.

[2017회계연도 법원도서관 이전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예산액   |       | 전년도<br>이월액 | 이·전용<br>등 | 예산현<br>액 | 집행액   | 다음연도<br>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    |            |           |          |       |             |     |
| 도서관 운영지원 | 7,914 | 7,914 | 0          | 0         | 7,914    | 2,576 | 5,338       | 0   |
| 법원도서관 이전 | 5,355 | 5,355 | 0          | ±30       | 5,355    | 17    | 5,338       | 0   |

자료: 대법원

법원도서관 이전은 대법원 청사의 공간 부족에 따라 추진되었는데, 건물신축 사업이 아니라 기존 사법연수원 건물(본관, 강의동 등)의 공간을 재배치(리모델링)하는 방식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2018년 11월에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다.

### 나. 분석의견

법원도서관 이전 사업은 순연되어 사업비 이월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사업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공사기간이 단축된 만큼 공정관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은 법원도서관 이전 사업을 추진하면서 2016년 3억 8,900만원(설계비), 2017년 53억 5,500만원(공사비), 2018년 61억 5,700만원(공사비 및 자산취득비 등) 등 총 119억 100만원의 사업비를 연차별로 편성하였다.

오덕근 예산분석관(whale@assembly.go.kr, 788-4641)

1) 코드명: 일반회계 1131-307의 내역사업

[법원도서관 이전 사업 연도별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 설계비      | 공사비 등        | 자산취득비 | 기타<br>(도서이전 등) | 계      |
|------|----------|--------------|-------|----------------|--------|
| 2016 | 389(261) | 0            | 0     | 0              | 389    |
| 2017 | 0        | 5,355(5,338) | 0     | 0              | 5,355  |
| 2018 | 0        | 3,888        | 2,069 | 200            | 6,157  |
| 계    | 389      | 9,243        | 2,069 | 200            | 11,901 |

주: 괄호 내 수치는 각 연도 이월액

자료: 대법원

그러나 대법원은 사업 첫해인 2016년에는 설계용역계약을 11월에 체결함에 따라 설계비 2억 6,100만원을 이월하였고, 이듬해인 2017년에는 착공 시기를 7월로 계획하였으나 공사계약 체결이 지연되면서 12월에 착공됨에 따라 공사비 전액을 이월하였다.

이와 같이 사업이 지연되는 이유에 관해 대법원은 ① 사법연수원 학사일정과 중복, ②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공사비 축소(97억원 → 90억원)에 따른 설계변경이 있었다고 하나, 실시설계가 2017년 4월에 이미 완료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착공시기 지연에는 큰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동 사업 지연의 주된 원인은 사법연수원 학사일정과 중복으로 볼 수 있는데, 사법연수원 학사일정은 법원도서관 이전 계획 시에 사전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법원행정처를 비롯한 대법원 소속기관 간 법원도서관 이전에 관한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향후 대법원은 법원도서관 이전 사업의 추가적인 사업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리모델링 공사기간이 당초 14개월(2017. 7. ~ 2018. 8.)에서 현재 8개월(2017. 12. ~ 2018. 7.)로 단축된 만큼, 시공이 부실해지지 않도록 공정관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 가. 현 황

소송구조 지원<sup>1)</sup> 사업은 민사소송 시 자금능력이 부족한 당사자의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법원은 2017년 계획액 45억 6,000만원 중 44억 3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5,7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7회계연도 소송구조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계획액   |       | 전년도<br>이월액 | 계획현액  | 집행액   | 다음연도<br>이월액 | 불용액 |
|---------|-------|-------|------------|-------|-------|-------------|-----|
|         | 당초    | 수정    |            |       |       |             |     |
| 소송구조 지원 | 4,560 | 4,560 | 0          | 4,560 | 4,403 | 0           | 157 |

자료: 대법원

### 나. 분석의견

첫째, 소송구조 지원대상자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지원기준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민사소송법」 제128조는 “법원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소송구조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민사사건에서 발생하는 제반비용에 대한 유예·면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자금능력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재판장의 판단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되고 있다.

현재 대법원이 소송구조 지원대상 기준과 관련하여 마련한 규정은 「민사소송 규칙」과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인데 이들 규정을 살펴 보면, 자금능력 부족을 간주하는 지원대상만 간략하게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자금능력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오덕근 예산분석관(whale@assembly.go.kr, 788-4641)

1) 코드명: 사법서비스진흥기금 1161-302

[소송구조 지원대상 관련 법령]

| 법령                            | 규정사항                                                                                                                                                                                                                                                              |
|-------------------------------|-------------------------------------------------------------------------------------------------------------------------------------------------------------------------------------------------------------------------------------------------------------------|
| 「민사소송법」<br>제128조              | 제128조(구조의 요건) ① 법원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소송구조(訴訟救助)를 할 수 있다. 다만,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br>② 제1항의 신청인은 구조의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br>③ 소송구조에 대한 재판은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한다.<br>④ 제1항에서 정한 소송구조요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소송구조절차에 관하여 상세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 「민사소송규칙」<br>제24조              | 제24조(구조신청의 방식) ① 법 제1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송구조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br>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신청인 및 그와 같이 사는 가족의 자금능력을 적은 서면을 붙여야 한다.                                                                                                                                                  |
| 「소송구조 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br>제128조 | 제3조의2 (구조요건의 심사) 소송구조 신청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 제128조에 따른 자금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고 다른 요건의 심사만으로 소송구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br>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br>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br>3.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br>4.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br>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자료: 대법원

이는 소송구조 신청 시 지원여부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제도 운용에 관한 신뢰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참고로, 형사소송 시 피고인에게 지원되는 국선변호인의 지원 기준<sup>2)</sup>은 월평균수입을 비롯한 지원요건이 보다

- 2)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6조 (제1회 공판기일 전 또는 심문기일 전 국선변호인의 선정) ① 피고인으로부터 형사소송법 제33조제2항에 의한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가 있는 경우 1심 법원은 피고인이 제출한 청구서의 기재 내용과 공소장의 기재 사항 기타 소명자료 등을 검토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한다.
1. 월평균수입이 270만원 미만인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경우
  4.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5.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경우
  7. 피고인의 가정 형편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선변호인을 선임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세하게 마련되어 있다. 따라서 향후 대법원은 소송구조 지원기준에 관한 검토를 통해 소송구조 여부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업 취지, 집행률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 확대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최근 소송구조 사업비와 집행률을 살펴보면, 2012년 이후 2017년까지 사업비(계획액)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반면, 2014년 이후 2017년까지의 집행률은 95%를 상회하는 것을 볼 때, 감액되는 사업비로 인해 소송구조가 축소되는 것으로 보인다.<sup>3)</sup>

[연도별 소송구조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 연도   | 계획액   | 집행액   | 불용액   | 집행률  |
|------|-------|-------|-------|------|
| 2012 | 7,519 | 4,193 | 3,326 | 55.8 |
| 2013 | 7,124 | 5,201 | 1,923 | 73.0 |
| 2014 | 6,617 | 6,307 | 310   | 95.3 |
| 2015 | 6,488 | 6,394 | 94    | 98.3 |
| 2016 | 5,067 | 4,945 | 122   | 97.6 |
| 2017 | 4,560 | 4,403 | 157   | 96.6 |
| 2018 | 6,022 |       |       |      |

자료: 대법원

그러나 소송구조 사업은 사회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당사자에게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충분한 규모의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의 법적근거와 취지를 감안하여 일반회계로의 이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재 법령상 소송구조 지원기준이 명확하지 않음에 따라 소송구조 지원 여부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는 예산사정이 지원여부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8.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되어 수형 중인 경우. 다만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절차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후략)

3) 대법원은 2017년 관련 사업비 부족에 따라 변호사 기본보수액을 100만원에서 80만원으로 감액한 바 있으며, 2018년 다시 100만원으로 증액하였다.

## 가. 현 황

등기소 신증축<sup>1)</sup> 사업은 등기소 신축 및 리모델링 등을 위한 건설사업이다. 대법원은 2017년 예산현액 292억 3,300만원 중 182억 5,100만원을 집행하고 108억 7,7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1억 500만원이다.

[2017회계연도 등기소 신증축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예산액    |        | 전년도<br>이월액 | 이·전용<br>등 | 예산<br>현액 | 집행액    | 다음연도<br>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     |            |           |          |        |             |     |
| 등기소 신증축 | 25,449 | 25,449 | 3,784      | 0         | 29,233   | 18,251 | 10,877      | 105 |

자료: 대법원

## 나. 분석의견

2017년 등기소 신증축 사업의 이월액은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으므로, 사업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등기소 신증축 사업은 연례적으로 이월되고 있는데, 특히 2017년 이월액은 108억 7,700만원으로 최근 발생한 연도별 이월액 중 가장 큰 규모이다.

오덕근 예산분석관(whale@assembly.go.kr, 788-4641)

1) 코드명: 등기특별회계 1252-411

[등기소 신증축 사업 연도별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 예산액<br>(추경) | 전년도<br>이월액 | 이·전용<br>등 | 예산현액<br>(A) | 집행액<br>(B) | 집행률<br>(B/A) | 이월액           | 불용액   |
|------|-------------|------------|-----------|-------------|------------|--------------|---------------|-------|
| 2013 | 14,608      | 7,335      | 0         | 21,943      | 16,861     | 76.8         | <b>3,091</b>  | 1,991 |
| 2014 | 21,475      | 3,091      | 0         | 24,566      | 15,044     | 61.2         | <b>9,473</b>  | 49    |
| 2015 | 24,280      | 9,473      | 0         | 33,753      | 28,716     | 85.1         | <b>2,169</b>  | 2,868 |
| 2016 | 18,010      | 2,169      | 0         | 20,179      | 14,810     | 73.4         | <b>3,784</b>  | 1,584 |
| 2017 | 25,449      | 3,784      | 543       | 29,233      | 18,251     | 62.4         | <b>10,877</b> | 105   |

자료: 대법원

등기소 별로 살펴보면, 동 사업에서 추진되는 모든 시설물의 사업비가 이월되고 있는데, 설계단계인 부산광역시등기소, 등기전산센터는 설계비가, 시공단계인 나머지 시설물은 공사비가 이월되고 있다. 한편, 이월 사유를 살펴보면 사전절차 이행, 부지문제, 추정사업비 부족 등 사전검토가 가능한 사항인 것으로 보아, 신증축 사업에 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017년 등기소별 이월현황]

(단위: 백만원)

| 등기소       | 예산<br>현액 | 차년도<br>이월액 | 이월 사유                                 |
|-----------|----------|------------|---------------------------------------|
| 등기소신증축    | 24,805   | 10,877     |                                       |
| 서부광역등기소   | 4,175    | 3,810      | 주민반대로 신축부지 변경, 총사업비 변경                |
| 북부광역등기소   | 3,470    | 547        | 사전절차(에너지 효율인증등급 등) 수행, 부지내 기존시설 이전 지연 |
| 부산광역등기국   | 470      | 329        | 설계 유찰, 부지교환계약 토지 근저당권 설정 등 해소         |
| 파주등기소     | 2,092    | 1,139      | 사전절차(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 등) 수행, 총공사비 증액     |
| 등기전산센터    | 2,512    | 553        | 설계진행 중 공사비 부족에 따른 설계 변경               |
| 사법역사문화교육관 | 12,086   | 4,499      | 총사업비 협의 지연 및 설계 변경, 공사도로 확보 지연        |

주: 등기소 리모델링 및 기타 운영경비 제외

자료: 대법원

이와 같이 등기소 신증축 사업비 이월은 ①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② 그 규모가 증가하고 있고, ③ 사전검토가 가능한 사항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법원은 등기소 신증축 사업에 관한 사업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집행가능한 적정예산을 편성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헌법재판소



## 1

## 현 황

## 가. 세입·세출 결산

2017회계연도 헌법재판소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1,600만원이며, 5,171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를 모두 수납하였다. 헌법재판소 소관 세입 총계는 총수입과 동일하다.

[2017회계연도 헌법재판소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 구분   | 예산  |    | 예산현액 | 징수<br>결정액(A) | 수납액<br>(B) | 미수납액 | 불납<br>결손액 | 수납률<br>(B/A) |
|------|-----|----|------|--------------|------------|------|-----------|--------------|
|      | 본예산 | 추경 |      |              |            |      |           |              |
| 일반회계 | 16  | 16 | 16   | 52           | 52         | -    | -         | 325.0        |

자료: 헌법재판소

2017회계연도 헌법재판소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427억 3,583만원이며, 이 중 95.4%인 407억 5,457만원을 지출하고 19억 8,126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헌법재판소 소관 세출 총계는 총지출과 동일하다.

[2017회계연도 헌법재판소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 구분   | 예산     |        | 예산<br>현액(A) | 지출액<br>(B) | 다음연도<br>이월액 | 불용액   | 집행률<br>(B/A) |
|------|--------|--------|-------------|------------|-------------|-------|--------------|
|      | 본예산    | 추경     |             |            |             |       |              |
| 일반회계 | 42,736 | 42,736 | 42,736      | 40,755     | -           | 1,981 | 95.4         |

자료: 헌법재판소

## 나. 재무 결산

2017회계연도 말 현재 헌법재판소의 자산은 1,502억 9,513만원, 부채는 40억 3,500만원으로 순자산은 1,462억 6,013만원이다.

자산은 전기 대비 9억 832만원(0.6%) 증가한 것으로 유동자산 1,092만원, 일반 유형자산 1,444억 9,054만원, 무형자산 43억 9,349만원 등으로 구성된다. 이는 헌법 재판소 증축 공사에 따른 일반유형자산 3억 4,275만원 증가, 데이터센터 장비 확충 사업 등에 따른 무형자산 5억 7,015만원 증가 등에 기인한다.

부채는 전기 대비 3억 5,001만원(9.5%) 증가한 것으로 유동부채 12억 6,461만원, 장기차입부채 27억 7,039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데이터센터 장비 확충사업 관련 신규리스 등에 따른 유동부채 7,257만원 증가 및 장기차입부채 2억 7,745만원 증가 등에 기인한다.

[2017회계연도 헌법재판소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17<br>회계연도 | 2016<br>회계연도 | 전년도 대비 증감 |       |
|--------------|--------------|--------------|-----------|-------|
|              |              |              | 금 액       | 비 율   |
| 자 산          | 150,295      | 149,387      | 908       | 0.6   |
| Ⅰ. 유동자산      | 11           | 20           | △9        | △45.0 |
| Ⅱ. 투자자산      | 0            | 0            | 0         | 0.0   |
| Ⅲ. 일반유형자산    | 144,491      | 144,148      | 343       | 0.2   |
| Ⅳ. 사회기반시설    | 0            | 0            | 0         | 0.0   |
| Ⅴ. 무형자산      | 4,393        | 3,823        | 570       | 14.9  |
| Ⅵ. 기타비유동자산   | 1,400        | 1,396        | 4         | 0.3   |
| 부 채          | 4,035        | 3,685        | 350       | 9.5   |
| Ⅰ. 유동부채      | 1,265        | 1,192        | 73        | 6.1   |
| Ⅱ. 장기차입부채    | 2,770        | 2,493        | 277       | 11.1  |
| Ⅲ. 장기충당부채    | 0            | 0            | 0         | 0.0   |
| Ⅳ. 기타비유동부채   | 0            | 0            | 0         | 0.0   |
| 순 자 산        | 146,260      | 145,702      | 558       | 0.4   |
| Ⅰ. 기본순자산     | 93,090       | 93,090       | 0         | 0.0   |
| Ⅱ. 적립금 및 양여금 | △2,588       | △3,177       | 589       | 18.5  |
| Ⅲ. 순자산 조정    | 55,758       | 55,788       | △30       | △0.1  |

자료: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는 2017년도 재정운영결과(재정운영순원가 - 비교환수익 등)는 446억 5,866만원이다. 비용은 프로그램순원가 447억 268만원, 비배분비용 769만원으로 구성되며, 수익은 비배분수익 5,171만원으로 구성된다.

재정운영순원가(프로그램순원가 + 관리운영비 + 비배분비용 - 비배분수익)는 전년도 대비 18억 319만원(4.2%) 증가한 446억 5,866만원이며, 이는 인건비 상승 등에 따라 프로그램순원가가 전년도 대비 17억 7,786만원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

[2017회계연도 헌법재판소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17<br>회계연도 | 2016<br>회계연도 | 전년도 대비 증감 |       |
|--------------------------------|--------------|--------------|-----------|-------|
|                                |              |              | 금액        | 비율    |
| I. 프로그램순원가                     | 44,703       | 42,925       | 1,778     | 4.1   |
| II. 관리운영비                      | 0            | 0            | 0         | 0.0   |
| III. 비배분비용                     | 8            | 0            | 8         | 0.0   |
| IV. 비배분수익                      | 52           | 69           | △17       | △24.6 |
| V. 재정운영순원가( I + II + III - IV) | 44,659       | 42,855       | 1,804     | 4.2   |
| VI. 비교환수익 등                    | 0            | 0            | 0         | 0.0   |
| VII. 재정운영결과(V - VI)            | 44,659       | 42,855       | 1,804     | 4.2   |

자료: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의 2017년도 기초순자산은 1,457억 182만원이고, 기말순자산은 1,462억 6,013만원으로 기초 대비 5억 5,831만원(0.4%) 증가하였는데, 이는 회계연도 중에 기초순자산이 전기 대비 45억 4,716만원 증가하고,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이 전기 대비 22억 1,116만원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2017회계연도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국고수입 등 재원의 조달 431억 486만원과 국고이전지출 등 재원의 이전 6,898만원으로 구성되며, 조정항목은 자산 재평가이익 43억 6,675만원으로 구성된다.

[2017회계연도 헌법재판소 순자산변동표 요약]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17<br>회계연도 | 2016<br>회계연도 | 전년도 대비 증감 |        |
|------------------------------|--------------|--------------|-----------|--------|
|                              |              |              | 금액        | 비율     |
| I. 기초순자산                     | 145,702      | 141,155      | 4,547     | 3.2    |
| II. 재정운영결과                   | 44,659       | 42,855       | 1,804     | 4.2    |
| III. 재원의 조달 및 이전             | 45,247       | 43,036       | 2,211     | 5.1    |
| IV. 조정항목                     | △30          | 4,367        | △4,397    | △100.7 |
| V. 기말순자산( I - II + III + IV) | 146,260      | 145,702      | 558       | 0.4    |

자료: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의 2017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된 사업으로 재판활동운영지원 사업이 있다.

재판활동운영지원 사업은 청사보안장비 등 확충사업 및 헌법연구관 인성평가시스템 개발 사업의 조정에 따라 7,800만원이 감액(27억 3,900만원→26억 6,100만원)되었다.

헌법재판소는 ① 국민의 기본권 보호 강화, ② 재판활동 지원의 강화 및 연구활동의 효율적 지원, ③ 국제교류·협력 강화를 통한 국제적 위상 제고, ④ 헌법재판정보화의 체계적 추진을 통한 재판업무의 원활한 지원 및 향상된 대국민서비스 제공, ⑤ 헌법재판 연구 및 교육 기능 강화를 통한 중·장기 발전을 위한 토대 마련을 2017년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예산을 집행하였다.

그러나 2017회계연도 헌법재판소 소관 결산에 대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첫째, 대국민 헌법교육책자인 “알기 쉬운 헌법”의 개정판 보급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보급 확대를 통해 헌법재판의 접근기회 확대 및 헌법재판에 관한 이해·관심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개발도상국 헌법재판기관의 실무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초청연수 사업은 최근 집행 실적이 저조하므로 실제 소요에 맞게 예산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 II

## 개별 사업 분석

### 1

### 헌법재판연구원 운영지원 사업 개선 필요

#### 가. 현 황

헌법재판연구원 운영지원<sup>1)</sup> 사업은 헌법재판소 산하 연구·교육기관인 헌법재판연구원 운영을 위해 편성된 사업이다. 헌법재판소는 2017년 예산현액 20억 4,000만원 중 19억 8,600만원을 집행하고, 5,4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7회계연도 헌법재판연구원 운영지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예산액   |       | 전년도<br>이월액 | 이·전용<br>등 | 예산<br>현액 | 집행액   | 다음연도<br>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    |            |           |          |       |             |     |
| 헌법재판연구원<br>운영지원         | 2,040 | 2,040 | 0          | ±66       | 2,040    | 1,986 | 0           | 54  |
| 알기 쉬운 헌법 발간             | 50    | 50    | 0          | △30       | 20       | 10    | 0           | 10  |
| 개발도상국 등 헌법<br>재판기관 초청연수 | 39    | 39    | 0          | △13       | 26       | 17    | 0           | 9   |

자료: 헌법재판소

동 사업은 “알기 쉬운 헌법” 발간, 개발도상국 등 헌법재판기관 초청연수 등을 비롯한 다수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오덕근 예산분석관(whale@assembly.go.kr, 788-4641)

1) 코드명: 일반회계 1036-307

## 나. 분석의견

첫째, “알기 쉬운 헌법” 개정판 보급 확대를 통해 헌법재판의 접근기회 확대 및 헌법재판에 관한 이해·관심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알기 쉬운 헌법”은 헌법의 주요 내용을 쉽게 풀이하여 작성된 대국민 헌법교육책자로서, 헌법재판소는 2012~14년 “알기 쉬운 헌법”(초판) 32,000부, “청소년을 위한 알기 쉬운 헌법” 2만 3,000부를 전국 초·중·고교, 공공도서관, 지역상담실 등에 배포하였으며, 이후 “알기 쉬운 헌법” 개정판 발간 및 보급을 위해 2016년부터 관련 예산을 편성하였다. 그런데 2016년 말 발간된 “알기 쉬운 헌법” 개정판<sup>2)</sup>은 2016~2017년 7,500부만 인쇄됨에 따라 전국 공공도서관과 서울지역 초·중·고교에만 보급되어 서울 이외 지역의 학교에는 보급되지 않은 상황이며, 관련 예산 일부도 불용되었다.

["알기 쉬운 헌법" 발간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부)

| 연도    | 사업내용                    | 예산액 | 집행액 | 발간부수   |        | 배부처                               |
|-------|-------------------------|-----|-----|--------|--------|-----------------------------------|
|       |                         |     |     | 계획     | 실제발간   |                                   |
| 2012년 | 알기 쉬운 헌법(초판) 발간         | 80  | 50  | 23,000 | 27,000 | ·전국 초중고교<br>·전국 공공도서관<br>·연구원 교육용 |
| 2013년 | 청소년을 위한 알기 쉬운 헌법(초판) 발간 | 80  | 69  | 23,000 | 23,000 | ·전국 중고교<br>·전국 공공도서관<br>·연구원 교육용  |
| 2014년 | 알기 쉬운 헌법(초판) 보급         | 36  | 11  | 3,000  | 5,000  | ·지역상담실<br>·연구원 교육용                |
| 2015년 | 알기 쉬운 헌법(초판) 보급         | 18  | 0   | 3,000  | 0      | ·연구원 교육용                          |
| 2016년 | 알기 쉬운 헌법(개정판) 보급        | 36  | 21  | 5,000  | 4,500  | ·전국 공공도서관<br>·연구원 교육용             |
| 2017년 | 알기 쉬운 헌법(개정판) 보급        | 50  | 10  | 7,500  | 3,000  | ·서울시 초중고교<br>·연구원 교육용             |

자료: 헌법재판소

2) 개정판은 2016년도 기준으로 ‘통합진보당 해산, ‘헌법재판소법 제41조제1항 위헌소원’ 등 8건의 최신 판례를 반영하고, ‘주거의 자유’ 및 ‘혼인과 가족의 보호’ 항목을 신규로 편성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으며, 초판의 ‘헌법상 경제질서’ 부분을 별도의 장(章)으로 확대 편성하여 유형분류 및 구성요소에 대한 내용을 보충하였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의 접근기회 확대를 위해 추진했던 지역상담실 운영 사업<sup>3)</sup>이 실적부진으로 2017년 종료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서울 이외의 지역에 대한 교육·홍보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개발도상국 등에 대한 초청연수 사업은 집행 실적이 저조하므로 예산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헌법재판소는 매년 개발도상국 헌법재판기관의 실무직원을 대상으로 초청연수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동 사업의 2017년 예산액은 3,900만원이며 집행액은 1,700만원으로, 집행률은 43.6%인데, 2015년을 제외한 최근 집행률은 낮은 수준이다. 이는 당초 외부위탁으로 개발도상국 초청연수 사업을 추진하려던 계획과는 달리 헌법재판연구원이 직접 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예산 집행액이 절감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개발도상국 초청연수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 사업 내용                        | 교육기간              | 예산액 | 집행액 |
|-------|------------------------------|-------------------|-----|-----|
| 2014년 | 몽골 및 인도네시아 헌법연구관 등(8명)       | 11. 17. ~ 11. 22. | 51  | 28  |
| 2015년 | 키르기스스탄 대법원 헌법재판부 실무공무원(5명)   | 5. 12. ~ 5. 15.   | 51  | 50  |
|       | 네팔 대법원 실무공무원(5명)             | 12. 8. ~ 12. 11.  |     |     |
| 2016년 | 태국 헌법재판소 실무공무원(3명)           | 5. 3. ~ 5. 13.    | 39  | 18  |
|       | 니제르 헌법재판소 실무공무원(2명)          | 11. 15. ~ 11. 18. |     |     |
| 2017년 | 아프가니스탄 헌법이행감독독립위원회 연구관 등(3명) | 10. 17. ~ 10. 20. | 39  | 17  |

자료: 헌법재판소

동 사업은 초청규모가 2~5명에 불과하고, 연수 프로그램도 주로 한국 헌법재판소 소개와 재판 및 관련 시스템에 대한 교육으로 구성되어 향후에도 외부위탁의 필요성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헌법재판연구원은 사업 수행 방식 및 예산 집행률을 고려하여 적절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3)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의 접근기회 확대 및 방문교육을 통한 이해·관심도 제고를 위해 광주, 부산, 대구, 전주 등 지역상담실 4개소를 운영하고 인근 지역 학교를 대상으로 방문교육을 실시하였으나, 참가인원 저조 등으로 2018년부터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

[2017년 개발도상국 초청연수 사업 예산 편성내역]

(단위: 천원)

| 구분        | 예산 내역               | 예산액    |
|-----------|---------------------|--------|
| 초청연수 진행경비 | 위탁수행을 위한 준비팀 운영     | 4,000  |
|           | 통·번역비               | 11,500 |
|           | 차량, 통역장비 등 임차료      | 4,100  |
|           | 문화시찰프로그램 및 부대비용     | 1,400  |
|           | 소계                  | 21,000 |
| 국외업무여비    | 아시아 기준 항공료, 숙박비, 식비 | 9,972  |
| 기타 운영비    | 오찬 등                | 8,000  |
| 총계        |                     | 38,972 |

자료: 헌법재판소



## 집 필

**총괄** | 이승재 예산분석실장

**심의** | 서세욱 사업평가심의관  
정승환 예산분석총괄과장  
박혜진 산업예산분석과장  
이동훈 사회예산분석과장  
이종구 행정예산분석과장  
정연수 경제산업사업평가과장  
김수옥 사회행정사업평가과장  
박홍엽 공공기관평가과장

**작성** | 신봉진 예산분석관  
정주완 예산분석관  
이영미 예산분석관  
오덕근 예산분석관  
이은경 예산분석관  
이병철 예산분석관

**지원** | 이정아 행정실무원  
박미현 행정실무원

### 결산분석시리즈 II

#### 2017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

|     |                                                            |
|-----|------------------------------------------------------------|
| 발간일 | 2018년 8월                                                   |
| 발행인 | 김춘순 국회예산정책처장                                               |
| 편집  | 예산분석실 예산분석총괄과                                              |
| 발행처 | <b>국회예산정책처</b><br>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br>(tel 02·2070·3114) |
| 인쇄처 | 경일칼라콤(주)                                                   |

---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http://www.nabo.g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ISBN 978-89-6073-073-1 93350

© 국회예산정책처, 2018